

2005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총4권중 제1권

2004. 12. .

농 립 부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사업명 뒤에 *표시한 것)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4권까지에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2005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5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기금사업의 계획 변경과정에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농업(식량작물, 원예)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촌개발,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입 문 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총무과
 - 연 락 처 : 전화 031-299-8822~5, 팩스 031-299-8800

차 례

제1권 관계규정해설

I. 농림사업실시규정해설

1. 배경	1
2. 주요골자	2
3. 주요변경사항	5
4. 해설	8
제1장 총칙	8
제2장 농림사업심의위원회	10
제3장 전문가위원회	11
제4장 농림사업	12
제5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19
제6장 보칙	22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23

1. 배경	25
2. 주요골자	26
3. 주요변경사항	30
4. 해설	34

III. 농림사업실시규정 53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98

V.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126

VI. 기타주요사항 212

참고1.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제2권 농업(식량작물, 원예)구조개선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1. 영농규모화사업(자율)	222
2. 토양개량사업(자율)	276
3. 주요농작물 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	286
4. 수리시설개보수(공공)	296
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97
② 저수지 준설사업	309
③ 저수지 비상대처 지원	327
5. 대·중규모 용수개발(공공)	336
6. 농업생산기반정비(공공)	
① 지하수 자원관리	359
② 농업용수관리자동화	365
③ 해외농업환경조사	385
④ 농업용수 수질조사·연구	389
7. 농지조성(공공)	
① 대단위농업종합개발	394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412

II. 농업기계화

8. 농기계구입지원(자율)	433
9. 농기계임대사업(자율)	483
10. 농기계생산지원(공공)	498
11. 농기계사후관리지원(자율)	
① 농기계보관창고설치	514
②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526

III. 생산 및 유통개선

12.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지원(자율)	543
------------------------------	-----

『농업(원예)구조개선』	558
I. 생산기반확충	560
13. 마늘경쟁력 제고지원(자율)	561
II. 원예생산 및 유통개선	615
14.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자율)	
①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	617
②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	629
15.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율)	
①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	682
② 일반조직산지유통활성화지원	694
③ 인삼계열화사업	718
16. 농산물가공원료 구매자금지원(자율)	725
17. 농산물유통시설운영활성화사업(공공)	
① 농산물출하촉진자금지원	737
18. 농산물직거래지원(공공)	746
19.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지원(공공)	
① 농산물자조금조성	751
② 축산물자조금조성	761
20. 채소수급안정사업(공공)	
① 계약재배사업(노지채소)	771
② 약정출하사업(시설채소)	778
21.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공공)	785
22. 농산물 해외시장개척(공공)	789
23. 우수농산물지원(공공)	
① 우수농산물지원사업	808
②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운영	815
24. 농산물유통전문교육(공공)	846

Ⅲ. FTA 기금 과수지원사업	871
25. 지방자율계획사업(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자율)	873
①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920
②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931
③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960
④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972
⑤ 과수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	1002
⑥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	1012
26. 과원영농규모화사업(자율)	1027
27.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공공)	1047
28. 과원폐원지원사업(자율)	1056

제3권 농업(축산)구조개선

I. 사육기반확충

29. 사료사업지원(자율)	1068
①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070
② 사료사업지원	1100
30.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자율)	1108
31. 축산계열화사업(공공)	
① 가축계열화	1136
② 경주마육성	1149
32. 한우사업지원(공공)	
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156
②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	1167
③ 품질고급화 장려금	1180
33. 가축개량사업(공공)	1194

II.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34. 축산물 유통개선사업(공공)	1247
① 축산물 도축·가공시설 설치지원	1249

② 축산물 도축·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	1262
③ 축산물판매시설 현대화	1281
④ 축산물등급판정	1289
⑤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	1296
⑥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1329
⑦ 축산물브랜드컨설팅지원사업	1335
35. 축산물 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공공)	
① 가축질병근절대책	1350
② 축산물검사	1356
③ 가축방역	1367
④ 가축공제	1389
36. 학교우유급식사업(공공)	1393
37. 축산업등록지원사업(공공)	1403

제4권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농촌개발』

I. 생산 및 유통개선

38. 친환경농업육성(자율)

- | | |
|-------------------------|------|
| ① 친환경농업지구조성 | 1415 |
| ②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 1434 |

39. 농업종합자금지원(자율)

II. 기술개발 및 정보화

40.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확충(자율)

- | | |
|-------------------------------|------|
| ①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 1476 |
| ② 농업인 정보화교육지원 | 1482 |
| ③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 운영 | 1493 |
| ④ 출하지원시스템 확충 | 1504 |
| ⑤ 디지털사랑방 설치지원사업 | 1513 |
| ⑥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 1527 |

41. 농림기술개발(공공)

42. 지역특화시범(공공)	1549
43. 기술보급(공공)	
① 새기술보급시범	1556
② 품목별 전문교육	1563
III. 인력육성	1569
44.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율)	
① 창업농지원사업(자율)	1571
45. 농업인자녀지원(공공)	
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608
②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1620
46.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1623
IV. 소득보전	1661
47. 농업직접지불제(공공)	
① 경영이양직접지불	1663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	1700
③ 논농업직접지불	1715
④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1752
⑤ 친환경축산직불	1786
⑥ 쌀생산조정제	1827
48. 농업인재해공제(공공)	1852
49.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지원(공공)	1859
V. 소득원개발	1877
50.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① 농촌관광휴양사업	1879
51. 한계농지정비사업(자율)	1910
52. 농가경영안정지원(자율)	
① 농·축산 경영자금지원	1923
② 농업인경영회생지원	1930
VI. 생활환경개선	1944

53. 페비닐 수거지원(자율)	1944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1951
I. 경영기반 확충	1953
54.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자율)	1955
55. 영림계획(자율)	1959
56. 사방사업(공공)	1964
II. 생산 및 유통개선	1970
57. 임산소득증대(자율)	
①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972
② 조경수·분재생산	1986
③ 산림복합경영	1992
④ 산림소득종합자금	1998
58. 목재이용·가공 지원(자율)	2017
59. 산림조합육성(공공)	2028
60. 임산물유통개선 지원(공공)	
①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2033
② 임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	2070
③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2077
III. 인 력 육 성	2085
61.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등 육성(자율)	2087
62. 임업전문인력 양성 및 임업기술지도(공공)	
① 임업전문인력 육성	2092
② 임업기술지도	2098
③ 사유림협업경영	2102
IV. 산림 복지기능 증진	2107
63. 식물자원 보전관리(공공)	2109
V. 산림자원조성	2115
64. 해외산림투자지원(자율)	2117
65.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공공)	2124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배경

- 1993년까지의 농정 추진 방식은 『중앙집권적 하향 방식』으로서 정부가 단독으로 시책을 결정하고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 농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 농업인을 비롯한 이해당사자가 배제되어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았음
-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 6. 14.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992년에 착수한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1998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한편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1994. 7.부터 10년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투입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1994. 12. 14.에 제정하였고 1996. 10. 28. 『농림사업실시규정』으로 개칭
- 그동안, 유사사업 통합, 경영장부 기록의무 및 경영교육 강화, 지원실적 공개근거 신설, 사업선택의 탄력성 제고, 사업포기자분의 추가사업대상자 신청기한 조정 등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업시행상의 투명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림사업실시규정을 보완하여 시행함

2. 주요골자

< 기 본 방 향 >

- 농림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119조 투융자심사평가시스템 혁신 방안 반영
- 농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농정수행
- 농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농업인들의 불편사항 해소

가. 농림사업의 종합안내

-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사업을 망라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시군구 및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등 안내기관에 비치하여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안내기관은 농업인들의 사업선택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상담·지도

나.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의 정형화·공개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사업의 신청과 예산의 계상,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정부가 지원한 시설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통일된 원칙 제시
- 사업신청요령을 공고하여 공정한 참여기회 부여
- 자금지원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함으로써 농정의 투명성 확보
 - 사업대상자 선정은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하므로
 - 누가, 어떤사업을, 어떤과정을 거쳐,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가 공개됨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전에 취득한 재산(시설)의 가액은 지원 대상이 아님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농업인들의 자조역량 향상

- 선택할 수 있는 사업내용, 신청자격, 지원규모·조건·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농업인들이 연중 사업을 구상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신청하면 시군 농정심의회에 공개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상향식 농정체제로 전환**함
- ※ 농업인들은 사업시행지침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정부정책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가 필요로 하는 세부사업내용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에 탄력성**을 부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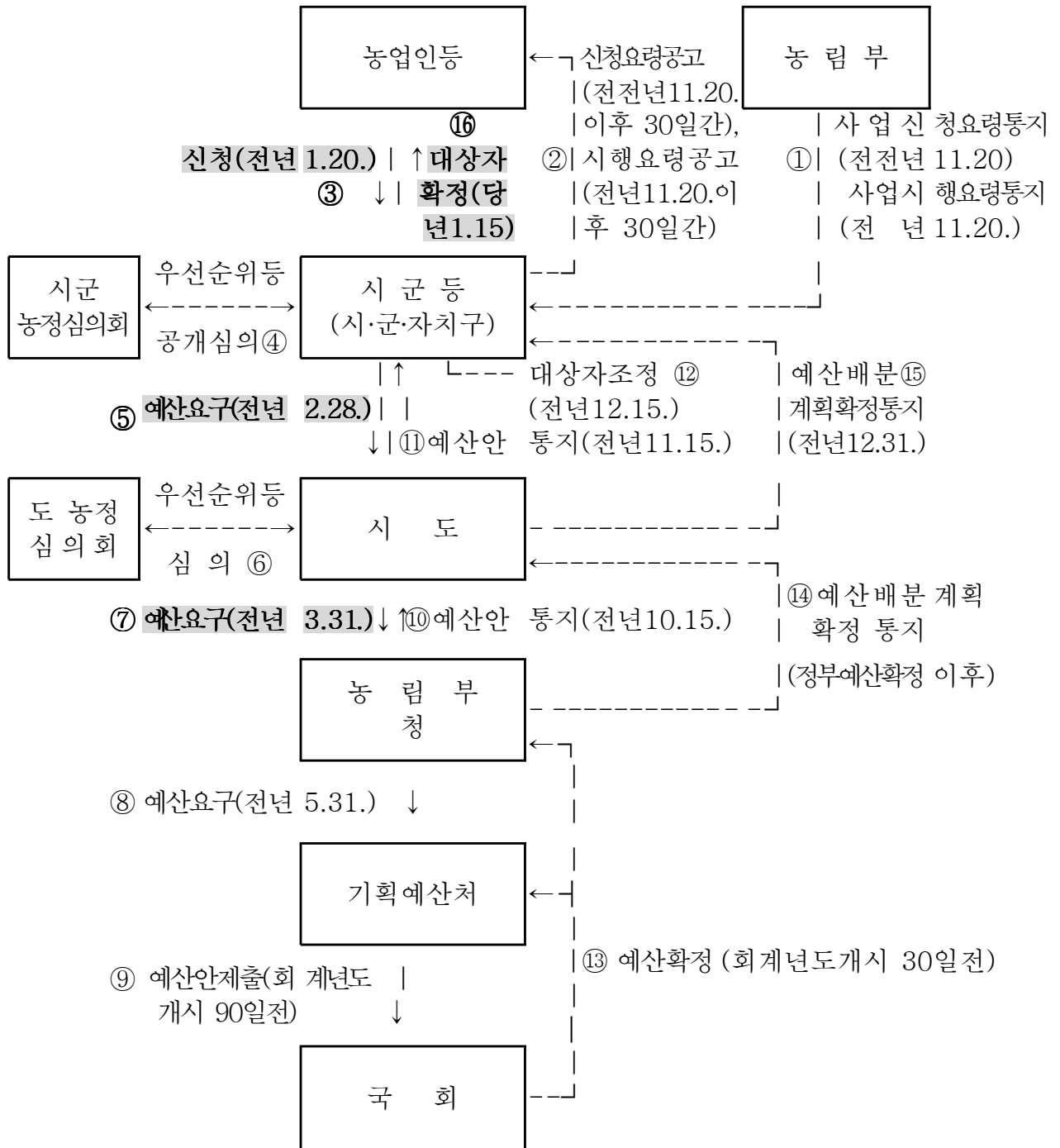
라. 경영장부(경영일지)기록 의무이행 및 경영교육 이수 강화

- 농업인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 『경영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사업의 경영상태를 스스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신청시 과거 **3년간 경영장부(경영일지) 기록실적**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 심사시 지원우선순위에 **차별성**을 부여함
- 또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영교육 이수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의 표본농가**로서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에게도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

마. 부실경영체의 무리한 사업참여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명단과 금액**을 시군구 및 농협·산림조합의 홍보지, 반상회보, 농업인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
-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관리대장 및 관리책임자 지정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농림부·청의 사업부서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사업추진상황 확인·점검
- 사업계획, 집행, 사후관리에 참여한 자는 관련자료에 실명 표기

바. 농림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도



3. 주요 변경사항

가. 총칙중 개정내용

□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의 구분폐지

-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이 사업신청조건 등 시행절차가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함
-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을 통합하여 농림사업으로 규정

□ 농촌진흥청 등 자체 심의근거마련(제4조제3항)

- 사업시행 전년도 말에 확정된 농림사업시행지침상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농림부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 농촌진흥청 등 자체심의로 같음하고 그 내용을 농림부 총괄부서에 통보하도록 개정

나. 농림사업심의위원회 중 개정내용

□ 농림사업심의위원회 구성(제6조)

- 농림사업심의위원회에 농업인 등 관련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 사업의 객관성 및 현장적용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농업인, 외부전문가 참여확대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신규사업선정을 위한 농림사업심의위원회 소집일시

- 현재 신규사업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 제한(현재 2, 4, 7, 9월의 마지막 주로 한정)을
- 4월과 5월에 집중심의회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전문가위원회 신설(제11조)

- 설치단위 : 농림부 사업 부서별
- 심의사항 :
 - ① 신규사업선정 및 그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②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농림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 ④ 사업대상자별 총 사업비 10억 이상인 공공사업, 3억 이상의 자율사업 중 농림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위원 : 국장 및 사업부서 과장, 전문가 등 10인 이내

라. 사업대상자 선정관련 개정내용

□ 사업성 검토기관 확대(제20조제2항)

- 현재는 사업에 따라 시·군의 사업부서, 농업기술센터 및 산림조합,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사업성검토를 수행
- 사업성검토기관을 농협, 축협, 인삼협동조합까지로 확대하여 사업성검토 내실화

□ 신용조사와 용자의 불일치 방지하기 위한 안내(제20조제3항)

- 현재 3천만원 미만의 지원신청금액에 대해 대출취급기관은 대출 부적격자, 또는 신용불량자만을 신용조사하기 때문에 사업승인 후 용자 신청시 원하는 금액의 용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3천만원 미만의 지원신청금액에 대해서도 읍·면·동의 직원으로 하여 대출신청자가 가능한 대출가능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확인하도록 안내조항 신설

□ 3천만원 이상의 지원신청시 합동실무검토반 구성폐지

- 현재 3천만원 이상의 지원신청금액에 대해 합동실무검토반을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황
- 농·축·인삼협을 사업성검토기관으로 포함하였으므로 동 조항을 폐지

마. 신규사업선정절차 강화(제35조)

□ 신규사업선정시 경제성검토 강화

- 현재 신규사업 선정시 경제성검토의 경우 비전문가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에 유리하게 기술할 가능성
- 전문가의 경제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경제성을 갖춘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 설문조사를 통한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

- 신규사업선정시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 평가

□ 전임 자문관제(제38조)

-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임자문관의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

□ 시범사업실시(제39조)

-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경우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문제점 조기 발굴

□ 실태조사실시(제40조)

- 모든 신규사업에 대해 6월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

4. 해설

제1장 총칙

가. 정의(제2조)

- (1) **농림사업** :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 (2) **자율사업** : 농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 자율적으로 농림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2호)
 - **농업인**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 **생산자단체등**
 - 생산자단체(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 : 농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 : 농림업 또는 농촌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3) **공공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사업을 말한다(제2조제3호)
- (4) **총괄부서** : 농림부, 농촌진흥청·산림청(청), 시도, 시군자치구(시군등)에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4호)

[설명] * 농림부 : 재정평가담당관실 * 청 : 기획예산담당관실
* 시도 : 대체로 농정과 * 시군등 : 대체로 산업과

- (5) **사업부서** :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에서 농림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5호)

[설명] 농림부 및 청의 경우 사업시행지침의 사업명 밑에 기재된 『해석기관』이 이에 해당

나. 적용범위 등(제3조)

-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에 의한 농림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함**(제3조제2항)
- 사업시행에 관한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사업은 적용제외

< 농림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제3조제2항)>

-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 및 수매·비축
-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추진하는 경우 제외)
-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법인에 한함)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설명] * 농업인과 직접 관계없는 특정업체 또는 단체 등에 특정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농림사업분류표에 포함하여야 하며,

* 농림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에 속하는 사업이라도 농업인등에 대한 정부시책의 홍보 등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는 포함할 수 있음

다. 사업시행지침 등(제4조)

(1) 농림사업분류표에 명시된 사업은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가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9. 30.까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제4조제1항)

- 사업시행지침의 내용(농림부 총괄부서가 정하는 서식)
 - 해석기관 및 지침작성자 명시(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
 - 목적, 추진방향(정부시책방향 명시), 근거법령, 연도별 지원계획
 -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요령**(세부사업내용 열거)
 - 사업예정년도 다음년도의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2)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포함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20.까지 다음의 기관에 통지함(제4조제2항)

- 농림사업지침서는 총4권으로 함(제1권은 관계규정 해설, 제2권 내지 제4권은 농림사업분류표상의 3개 대분류를 각권으로 함)
 - 제2권 : 농업(식량작물·원예)구조개선
 - 제3권 : 농업(축산)구조개선
 - 제4권 : 농촌개발·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 통지할 기관
 - 농림부의 사업부서와 그 산하기관·단체, 청, 시도,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

(3) 다음사항은 사업시행지침안을 확정하기 전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중 다음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의 사업부서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함**(제4조제3항 및 제4항)

- 농림사업실시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 신규사업선정 및 그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농림사업분류표에 정한 사업외의 사업은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함 (제4조제6항)

제2장 농림사업심의위원회

가.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농림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제5조제1항)

(2) 기능

- 농림사업실시규정개정에 관한 사항
- 농림사업시행지침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제6조)

- (1) 구성(20인이내) : 농림부 차관(위원장), 농림부 기획관리실장(부위원장), 농림부 차관보·각국장(공보관·감사관·투융자평가통계관 포함), 청의 기획관리관, 농림업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 회의소집 등(제8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함.

-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

- 농림부장관 및 청의 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라.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

- 구성(15인이내) :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실무위원장), 농림부 투융자평가통계관(실무부위원장), 농림부의 실·국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과 농림부 및 청의 기획예산담당관

제3장 전문가위원회

가. 전문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1조)

- (1) 농림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원회를 둔다

(2) 기능

- 신규사업선정 및 그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농림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공공사업, 3억 이상의 자율사업 중 농림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제12조)

- 전문가 위원회는 위원장(각 국장) 및 부위원장(각 과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국 소속의 과장 및 해당 사업 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4장 농림사업

가.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제1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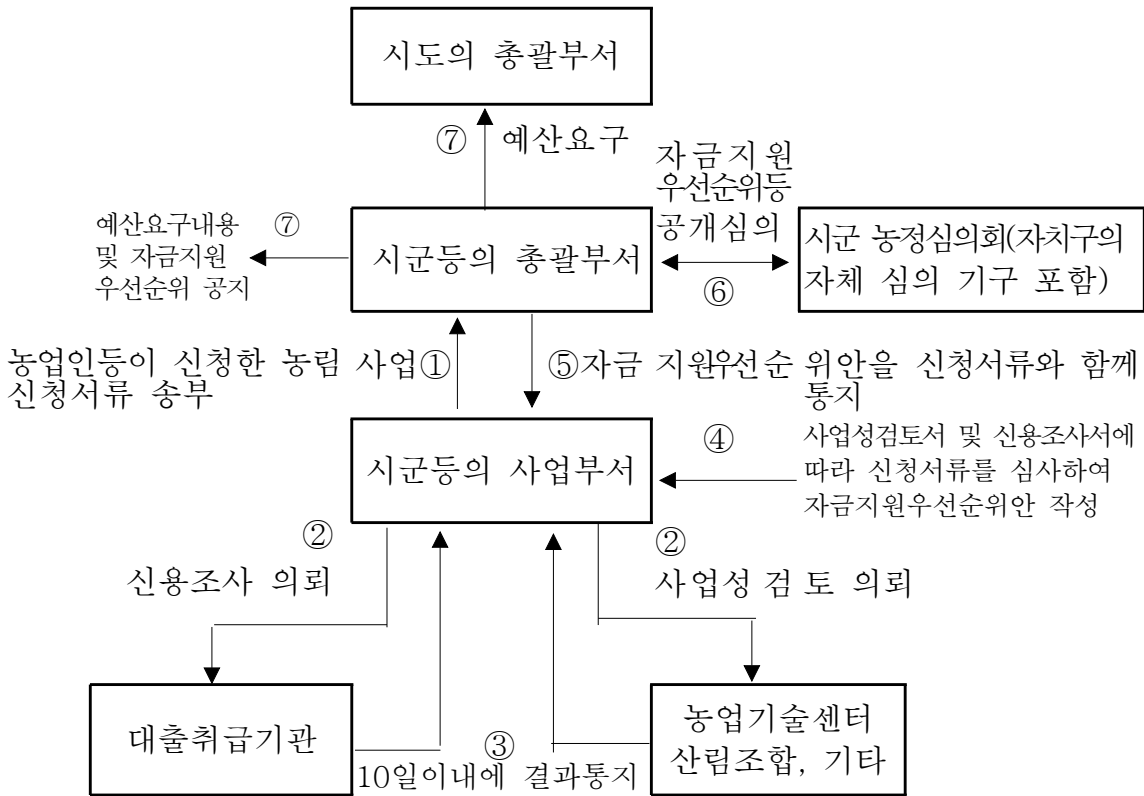
- (1)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함
 - 공고할 사항(제16조제1항)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 공고는 시군구,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농업협동조합등)에서 홈페이지나 자연마을의 게시판에 게시(제16조제2항)
 -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등의 장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

- (2) **안내기관** :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농업기반공사 시군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제17조)
- 안내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등 농림사업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나. 농림사업의 신청절차(제18조)

- (1) 신청서 제출기관 : 원칙적으로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음(제18조제1항)
-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이를 사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해야 함(제18조제2항)
 -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함(제18조제4항)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도록 함(제18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 (2)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제18조제5항 별지 제2호서식)
- (3) 신청기한(제19조)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 20.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 대상자의 신청은 수시 접수하여 선정
- [설명] 농림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 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을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 검토, 농정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다. 자율사업신청서에 대한 시군등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20조 내지 제26조)



< 업무단계별 설명 >

② 사업성검토 :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협·산림조합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조사 실시 가능

- 대규모사업(시설) 및 첨단시설의 경우 개별사업지침서에 명시된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선행

(사업성검토 기관)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농·축·인삼업 협동조합 :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사업
- 산림조합 : 임업과 관련한 사업
- 기타 : 위 소관외의 사업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관

② 신용조사(제20조제3항) : 대출신청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 (3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 신용조사로 대체)

-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제20조제4항)

④ 농림사업신청서의 심사(제23조) :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사업신청서를 심사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시 검토할 사항)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등, 농협·산림조합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여부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위 사항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 등을 추가로 검토함**
 -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자보다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하고(제24조제2항)
 - 농림부장관 및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의 표본농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에게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제24조제2항)
- 신청자가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하지 못함(제24조제3항)

⑥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제25조)

- 시군 농정심의회 의결로 정하는 사업은 **분과위원회 또는 품목별 소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로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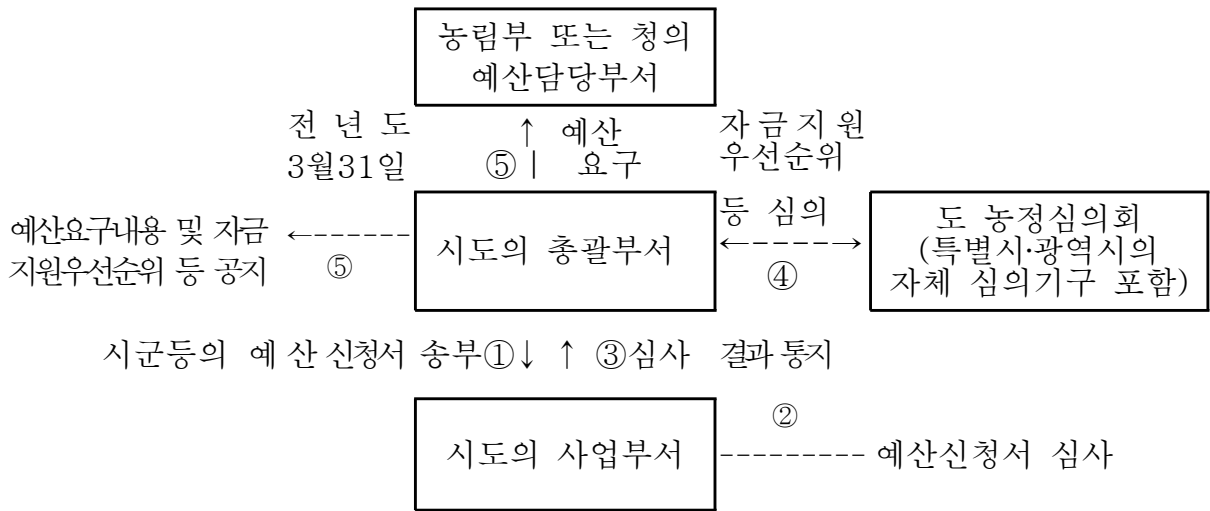
- 시군등의 농정심의회가 심의를 하고자 할 경우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제25조제2항) 다만,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 시군 농정심의회에 법정 최대인원의 생산자단체장 및 농림어업인 대표 (생산자단체장 5인, 농림어업인 대표 8인)가 참여하도록 유도(미달시는 별도 심의기구 심의를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로 갈음)
-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시장군수등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 포함)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한 후 나중에 시군등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와 함께 도 농정심의회에서 직접심의하게 함(제25조제4항)
- 시군 농정심의회 등은 회의를 소집하여 공개적으로 심의하여야 함 (서면심의 불가)

[설명] 일부 시군에서 회의소집을 안하고 관계직원이 개별적으로 위원을 방문하여 서면의결하는 등 사업신청서 심의를 비공개로 허술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위원을 소집하여 각 위원이 공개적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⑦ 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제26조)

-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 28.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예산신청
- 이때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지원예정금액, 자금지원 우선순위 또는 지원예정금액의 변경가능성, 위 사항의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등이 발행하는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에 게재

라. 시도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27조)



< 시도의 사업부서가 예산신청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도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 농림부 및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 시도 자체 자금지원계획
- 위 검토사항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의 표본농가로서 경영정보의 성실한 제공여부를 시군 등의 검토예와 같이 추가 검토**

마. 농림부 또는 청의 심사(제28조)

- (1)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제28조제1항)
- (2)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시도,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제18조제2항)

<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예산요구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 및 시군 농지이용계획에 반영여부
-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 점검·평가 결과
-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바. 정부예산안의 통지(제29조)

- (1)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 15.까지 시도, 시군등별 정부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제29조제1항)
- (2) 시도지사는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15.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29조제2항)
- (3) 시장군수등은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15.까지 사업별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제29조제3항)
 - 사업포기, 업종변경, 영농 또는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시 자금 지원대상자우선순위 변경가능

사.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제30조 내지 제33조)

- (1)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 포함)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정부예산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도에 통지(제30조)

- (2) 시도지사는 시군등에 대한 시도예산의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 예정년도의 전년도 12. 31.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31조)
- (3) 시군등의 총괄부서(그외 사업주관기관 포함)는 사업예정년도의 1. 15. 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부득이한 경우 우선순위 변경 가능)하여 이를 자금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구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함(제32조, 제33조)

<자금지원대상자우선순위 변경 사유>

-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이미 결정된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 사업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신청받아 그중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

<공지시 추가할 사항>

-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농업기반공사 지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

아. 경영장부의 기록 및 비치(제34조)

- (1) 시장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적을 분석·평가하게하여야 함(제34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 (2) 위 금액미만으로서 3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자는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함(제34조제2항 별지 제6호서식)

제5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가. 신규사업의 제안(제35조제1항 및 제2항)

-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과의 유사성

- 전문가 등의 경제성분석 및 지역여론
 - 농업인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또는 공청회 결과
 -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 여부
 -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2)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제35조제3항)
- (3)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은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음(제35조제4항)

나. 신규사업의 선정요구(제36조)

- (1)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안이 있을 때에는 타당성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당성 분석자료에 농림사업 시행지침안을 붙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제36조제1항)
- (2)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함(제36조제2항)
- (3)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 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신규사업 선정요구
- (4)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월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36조제4항)

다. 신규사업의 채택(제37조)

- (1)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다만 농림사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업무평가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업무심사평가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음**(제37조제1항)
- (2)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부의 총괄부서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제37조제3항)
- (3) 신규사업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전임자문관제**)(제38조)
- (4) 신규사업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 ~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제39조)
- (5) 모든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개시 후 6월 이내에 실태조사 실시
- (6)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수정보완지침에 **따라도 및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제41조)

[설명] 이때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

라.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특례(제42조)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의 제안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후 당해 제안자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을 채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사업신청서 제출(제18조)
- 사업성 검토 및 신용조사(제20조 내지 제22조)
- 시군등의 사업신청서 심사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제23조 내지 24조)
- 시군 농정심의회 의 공개심의(제25조)

제5장 보칙

- 농림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음. (제44조제1항)
-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시설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주요사업장(기지원사업 포함)에 대하여 농림부 사업국 등 사업부서에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사업담당자는 사업추진상황을 확인 또는 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할 수 있음** (제44조제2항)
 - 지원금액이 3천만원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음(제44조제3항)
- 시설등에는 농림사업안내표지를 잘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함(제44조제4항 별표2)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함 (제44조제5항)
- 사업부서는 사업의 정책입안, 사업집행(자금집행)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참여한 공무원과 농협 등(중앙회포함)임직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함(제44조제6항)
- **농림부장관은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등으로 하여금 시군등 및 농협·산림조합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음(제45조)**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Ⅱ.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해설

1. 배 경

-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필요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제정하여 1996. 8. 1.부터 시행
 - < '97. 10. 29. 주요개정사항 >
 - 지원대상자의 동의에 의해 지원실적을 공개하도록 개선
 - 회계연도말까지 용자금 배정신청이 없을 경우 이월사용하거나 불용처리
 - 자금신청에 의한 용자한도액 배정 및 배정일자별 대출관리토록 명시
 - < '98. 7. 23. 주요개정사항 >
 -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실적에 의한 입증서류의 범위 명시
 -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의한 검정실시
 - 부당 대출금 회수시 위약금 징수조건 강화, 정책자금 지원제한 보장
 - <'98. 12. 19. 주요개정사항>
 -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추진상황 등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대출마감일을 연장승인할 수 있도록 명시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여신관리계좌마감일을 경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
 - < '99. 11. 8. 주요개정사항 >
 - 농림사업시설설치에 따라 환급받게 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정책자금지원사업비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 농림사업비의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근거규정 명시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기간 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신관리계좌 운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
 - < '02.11.20. 주요개정사항 >
 - 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않는 자금에 대해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을 다음 연도 6월말까지로 명시
 - 대출마감일 연장기관을 사업자금과에서 사업지원과로 변경
 -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지원과가 정한금액 범위내에서 공급자의 자필서명 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
 - 대여금 반납기한 연장(회계년도 1. 10. → 1. 20.)
 - < '03.11.10. 주요개정사항 >
 -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의 범위내에서 자가노무비 인정
 - 자가노무비(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는 1인에 한해 인정

2. 주요골자

<기 본 방 향>

- 사업자금의 신속한 지원 도모
- 예산회계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응하는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제도 정립
- 사업자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유도

가. 자부담금 우선 집행후 지원비율에 의한 사업자금 지원

-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사업주관기관이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다만,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여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에서 제외
- 자부담금 우선 집행 및 사업자금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동 세금계산서 또는 동 금융기관거래자료를 사업실적의 증거서류로 인정

나. 사업자금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 부당사용금액 회수
 -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받은 날부터 연체금리 적용
- 부당사용금액의 크기 또는 사업비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에 따라 다음 기간중 사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등, 대출취급기관, 보조금집행자, 농림부장관(투자심사담당관)에게 통지
 - 금액 10억이상, 비율 50%이상 : 5년간 지원제외함(50%이상 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는 3년)

- 금액 5-10억원 미만, 비율 30-50%미만 : 3년
- 금액 1-5억원 미만, 비율 20-30%미만 : 2년
- 금액 1억원 미만, 비율 20%미만 : 1년
-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기간이 긴 것을 적용

다. 사업의 검정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 종료시 또는 사업완료시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를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동 세금계산서 또는 동금융기관거래자료중 하나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지원과가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에 의하여 사업검정실시

라. 융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 절차

-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월마다『시·도→시·군(사업주관기관)→ 지원대상자→시·군(지원대상자가 다음달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신청)→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융자 및 보조 한도액 배정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직접 사업지원과에 배정요구)

마. 대출원장 관리

- 융자한도액 배정일자별로 구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 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촉구

바. 예산의 이월 사용

-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 대여된 금액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한 후 예산이월할 수 있음
- 용자한도액이 배정되어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반납하여야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추진상황, 연장사유등을 사업지원과가 검토하여 연장결정한 후 대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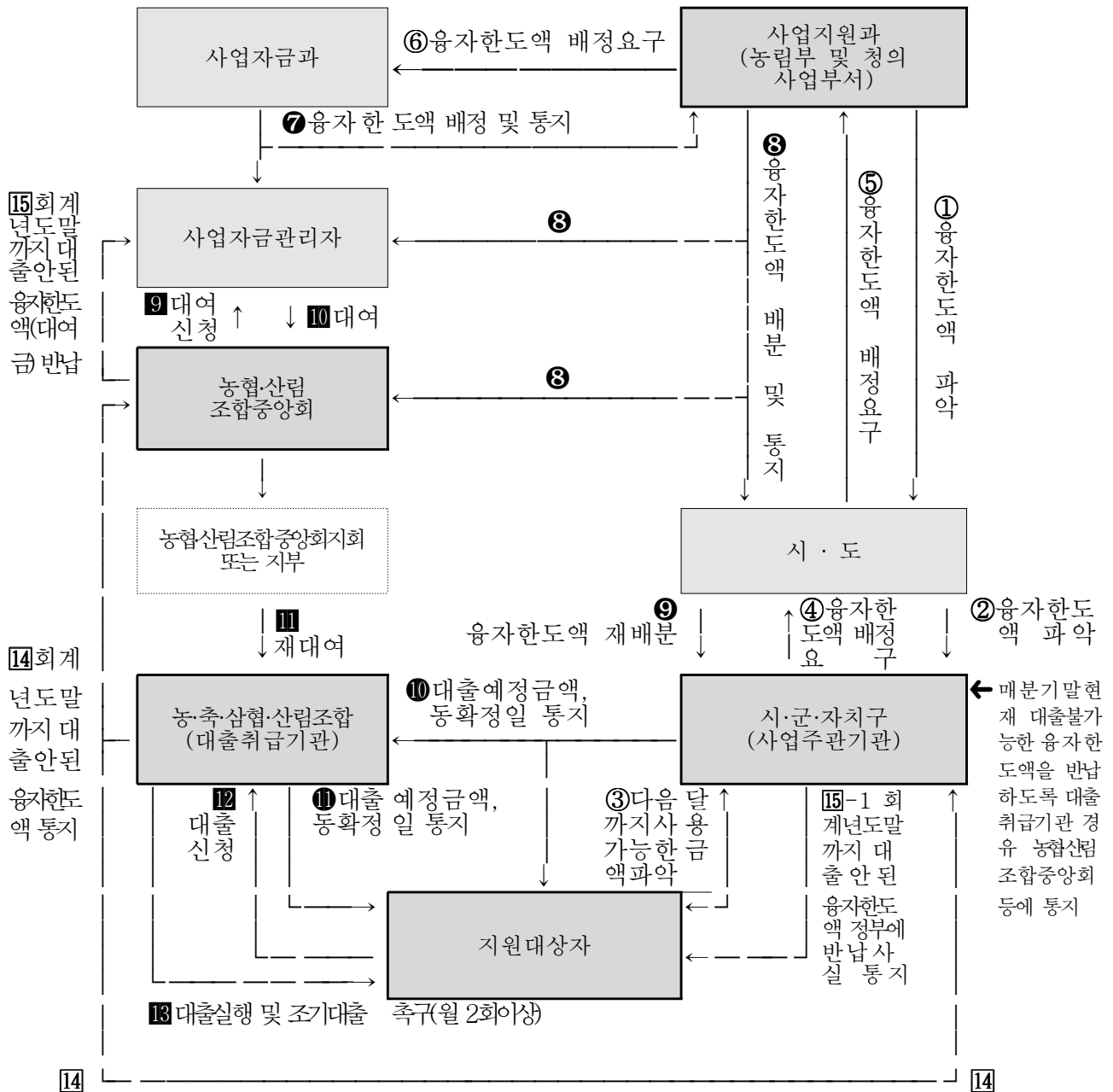
사. 대출기한내에 대출이 불가능한 용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기한(당해 회계연도 말 : 제10조제2항)내에서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 등에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명시)
 - 납기내 반납시 :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납기한까지는 납기내 금리, 그 후는 연체금리 적용

아. 대출기한이 경과한 용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취급기관이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삼림조합 중앙회에 통지하면
 -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금액의 대출불가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
 - 대여일부터 다음회계년도 1. 20까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다음회계년도 1. 2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금리 적용

자. 용자 절차도



(주) 위 그림은 시·군·자치구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농·축·삼협·산림조합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의 용자절차를 개략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사업주관기관이 시·군·자치구가 아니거나 농협·산림조합중앙회가 직접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는 위 그림에 정한 절차중 일부가 달라짐

- ⑧은 훈령의 제1호서식, ⑨는 제2호서식, ⑩은 제3호서식, ⑭는 제5호서식, ⑮-1은 제6호서식에 의함
- ⑧의 통지가 없으면 ⑨의 대여신청과 ⑩의 대여를 할 수 없음

3. 주요 변경사항

사 항	'99.11.7.이전	'99. 11.8. ~ '02.11.19.	'02.11.20. ~ '03.11.10.	'03.11.11.이후
①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사업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금집행 증거자료를 거래당사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에 한함)의 자필서명에 의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의 입출금 거래장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제4조제3항 및 제5항)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외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범위내에서 인정(제4조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원칙에서 제외(제4조제2항) 	(좌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범위내에서 자가노무비 인정(제4조제6항) - 자가노무비(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는 1인에 한해 인정
②원료사업의 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집행증거자료에 따라 검정 실시(제4조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정시에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제4조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 범위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인정(제4조제5항) 	(좌와 같음)
③리스방식으로 도입한 시설에 대한 사업비지원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지급 제외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③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지방비 및 자부담금 포함)으로 지원제한기간 적용(제16조제2항 및 제3항) 이미 지원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제16조제2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 11.8. ~ '02.11.19.	'02.11.20. ~ '03.11.10.	'03.11.11.이후
④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 월마다 『시도→시군등(사업주관기관)→지원대상자→시군등(지원대상자가 다음 달까지 사용 가능한 금액을 신청)→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용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 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지원에 직접배정 요구)(제7조의2, 제13조제5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⑤대여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한도액이 배정되면 사업지원과가 시도 또는 사업주관기관에 배분하고(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시도는 시군등에 재배분(제7조의3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이를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한 때 대여(제8조제1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⑥대출원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구분 관리(제8조제10항)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 촉구(제7조의3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구분 관리(제8조제7항)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 촉구(제7조의3제6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⑦용자금예산의이월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조제1항) ○당해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 -다만, 현저한 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년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대출마감일 연장신청을 하여 연장 연장승인을 받아 대출(제10조제1항)('98.12.19개정) 	(좌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 연도 익년 6월말까지 대출기한 연장가능(제10조제1항) ○사업지원과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대출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 일정한 경우 8월말까지 재연장가능(제10조제2항) ○다음년도 7.1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을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 조치를 할 수 있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 11.8. ~ '02.11.19.	'02.11.20. ~ '03.11.10.	'03.11.11.이후
⑧ 대출 기한 래 전에 대출 불 가능 한 자금 의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 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10일 이내의 납기 명시)(제8조제6항 별지 제4호서식 및 제8항) - 납기내 반납시 :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연체금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 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10일 이내의 납기 명시)(제8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대출취급기관이 매분기 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면 사업주관기관은 사실을 확인후 대출취급기관을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제8조5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이자(제8조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기내 반납시 :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연체금리 적용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⑨ 대출 기한	◦당해 회계년도 말(제10조제2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⑩ 대출 기한 이 경 과 한 자 금 의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반납하여야 하나, 현저한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서 연장승인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대출(제10조제1항)(’98.12.19개정) ◦대출취급기관이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 안된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하면(제10조제2항 별지 제5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제10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제10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일부터 다음 회계연도 1. 10.까지는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적용(제10조제4항제1호) - 다음 회계연도 1. 1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 금리 적용(제10조제4항제2호) 	(좌와 같음)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20.일까지 반납(대출마감일 연장승인 금액은 제외)(제10조제3항)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 11.8. ~ '02.11.19.	'02.11.20. ~ '03.11.10.	'03.11.11.이후
⑪ 여 신 관 리 계 좌 운 용	◦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대상부지의 확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의 취득등을 확인 받아야함(제12조제1항)	◦여 신 관 리 계 좌 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⑫ 여 신 관 리 계 좌 입 금 액 중 미 지 급 액 등 의 반 납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여신관리계좌 입금시 제출한 월별 공정 계획상의 매월 소요 금액을 당해 월의 말일까지 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 사업주관기관의 명에 따라 입금액 반납(제12조제3항)	◦여 신 관 리 계 좌 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여 신 관 리 계 좌 마 김 일 (예산계상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반납하여야하나 현저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서 연장승인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대출('98.12.19개정)	◦여 신 관 리 계 좌 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 '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⑬ 부 당 사 유 대 출 금 의 회 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일(고의성이 있는 경우 부당사용 개시일)부터 연체 금리를 소급 적용하여 회수. 다만,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날부터 적용(제14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⑭ 지 원 실 적 의 공 개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시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원대상자로부터 차후에 지원 실적을 시·군·구 및 농·축·임·삼협의 홍보지, 농업인 교육 자료, 반상회보 등에 공개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음(제18조제3항) - 공개 근거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에 명시됨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4. 해 설

— < 일 러 두 기 > —

- 이 훈령은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
- 이 훈령의 위임을 받은 사항 또는 이 훈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에 상세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 실무에 있어서는 사업자금별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다만 개별규정의 내용이 이 훈령에 어긋나는 경우는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음

가. 정의(제2조)

- (1) 사업자금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제2조제1호)

[예] 국고(일반회계, 농특회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축산경영자금

- (2) 지원대상자 :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거나 농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중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제2조제2호)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농업인, 임업및산촌진흥 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등(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 : 농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

(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농림업”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업을 말함

◦ **농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농촌”은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5조의 4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을 말함

(3) **지원** : 용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 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제2조제3호)

(4) **집행관리** :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용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 제외)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제2조제4호)

(5) **사업자금관리자**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청)외의 기관(제2조제5호)

[예] 농특회계(용자 : 농협중앙회 농특사무국), 농지관리기금(농업기반공사 기금관리처), 축산발전기금(농협중앙회 기금사무국)

[설명] 농림부 또는 청이 직접 집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사업 자금과”에 해당됨

(6) **사업자금과** :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제2조제6호)

[예] 농특회계(용자업무 : 협동조합과, 자금한도액 배정 및 보조업무 : 총무과), 농안기금(유통정책과), 농지관리기금(농지과), 축산발전기금(축산정책과), 농축산경영자금(협동조합과)

(7) 사업지원과 :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제2조제7호)

(8) 사업주관기관 :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융자한도액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금액을 확정하는 행위 포함)하는 행정기관 또는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제2조제8호)

- 행정기관 : 농림부, 청, 농림부 및 청의 산하관서, 시도, 시군등, 농업기술센터 등

[설명] 읍면동은 시군등의 업무중 일부를 보조하는 기관이므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없음

- 농협중앙회등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용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설명] 농업기반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의 용자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자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있음

(9) 개별규정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외에 개별적으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제2조제9호)

[설명]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과 개별규정의 범위내에서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금집행의 상세한 요령을 정한 것으로써 개별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의 원칙과 절차를 포괄적으로 정한 개별규정과 구별됨

나.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조)

- (1)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안에서만 효력을 가짐(제3조제1항)

[설명] 이 훈령에 위배되는 개별규정의 효력이 없더라도 혼동을 막기 위하여 개별규정중 이 훈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이 훈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함

- (2)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이 훈령중 다음 사항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정할 수 있음(제3조제2항)

- 자부담금 우선집행(제4조제2항)
- 매 분기말 기준으로 용자보조 등 비율을 일치시켜 집행(제4조제3항)
-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용자한도액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절차(제7조의2)
-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한 용자한도액의 반납(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안된 용자한도액의 반납(제10조)
- 부당사용사유 발생시의 지원제한(제16조)

[설명]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은 수매비축 등 단기 회전성 자금이고 농축산경영자금은 농협 자체자금으로 구성된 사업자금에 정부가 그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어 이 훈령에 정한 일반적인 집행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

다. 집행의 원칙(제4조)

- (1)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 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제4조제1항)

(2)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2항)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 억원이상일 경우는 사업착수시 및 공정을 50% 진척시부터 각각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의 반액씩 집행하고
- 그외의 경우는 착수시부터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 전액을 집행

※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원칙에서 제외(제4조제2항)

[설명] 자부담을 안하고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한편 종전에 일부사업에서 적용하던 자부담금 예치제도는 폐지함

(3)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3항)

(4) 용자한도액중 매 분기말현재 대출불가능한 금액 및 회계년도내에 대출안된 금액이 있어 이를 반납한 경우는 지원비율 적용시 반납한 금액에 해당하는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제4조제4항)

(5)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동인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함. 다만, 농산물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범위 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도 증거자료로 인정.(제4조제5항)

- 사업실적에는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 확인

[설명]

정책자금의 유용이나 불법·부당한 자금지원을 방지하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집행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만약 사업자가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직접 시공하더라도 사업집행의 검정 및 정산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가능함

(6)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범위내에서 증빙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음(제4조제6항)

[설명]

노무비의 경우도 용역업체 등에서 증빙자료 확보가 가능하나 특히 3천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수급인(노무자)이 자필서명한 영수증 등으로 가능하도록 인정하였음. 그러나,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 노무내용을 확인하여 1인에 한해 인정함으로써 실제 농업인이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비용을 인정. 다만, 이미 착수하여 시행한 사업일 경우 이러한 증빙자료의 사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노무비 지급이 정당하고 확인가능한 증빙이 첨부된다면(금융기관 입출금 전표 등)시장·군수가 사업별로 판단하여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7)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시와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여야 함(제4조제7항)

[설명]

사업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시설의 외형만 형식으로 확인하는 사례가 있고 사업비의 집계표를 검정서류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농림사업자금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책자금지원대상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사례방지

- (8)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제4조제9항)

[설명]

농림사업에서 자부담비율을 설정한 것은 일정한 자금능력이 있는자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리스방식은 원리금상환부담, 담보확보에 지장등 농림사업의 건전한 경영체 육성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총지원사업비중 리스로 도입한 시설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사업비지원에서 제외

라. 이월(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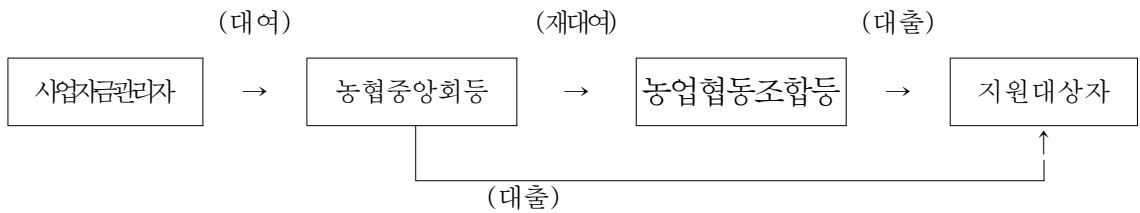
- 당해 회계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부득이 지출하지 못한 사업자금은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조)
 -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한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이월할 수 있음(제10조 제1항 제3호)
 - 이월은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함
 - 이월한 사업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음

마. 용자의 절차(제6조 내지 제8조제5항)

(1) 지원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및 변경함(제6조제1항)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 요구에 따른 용자조건의 변경은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제6조제2항)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처리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요구에 따라 용자조건을 변경할 경우는 사업자금과가 세입담당과와 사전 협의해야 함(제6조제3항)

(2) 용자의 방법(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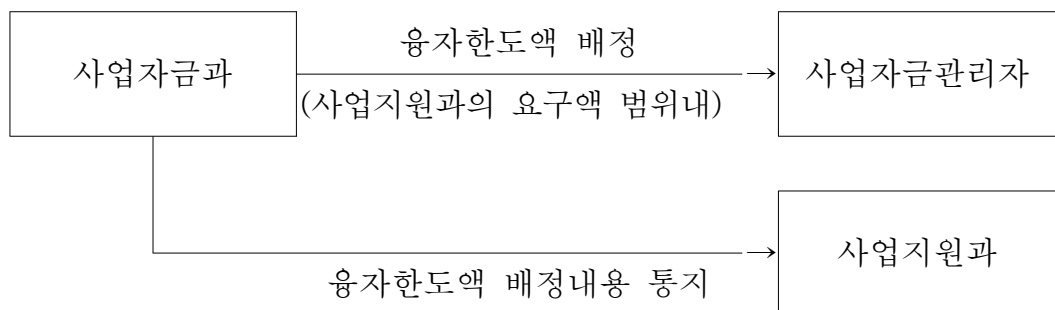
(3) 용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제7조의2)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용자한도액 배정 요구(제7조의2제1항)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함(제7조의2제2항)
- 사업주관기관(시군등 포함)은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주] 사업추진상황과 관계없이 자금을 앞당겨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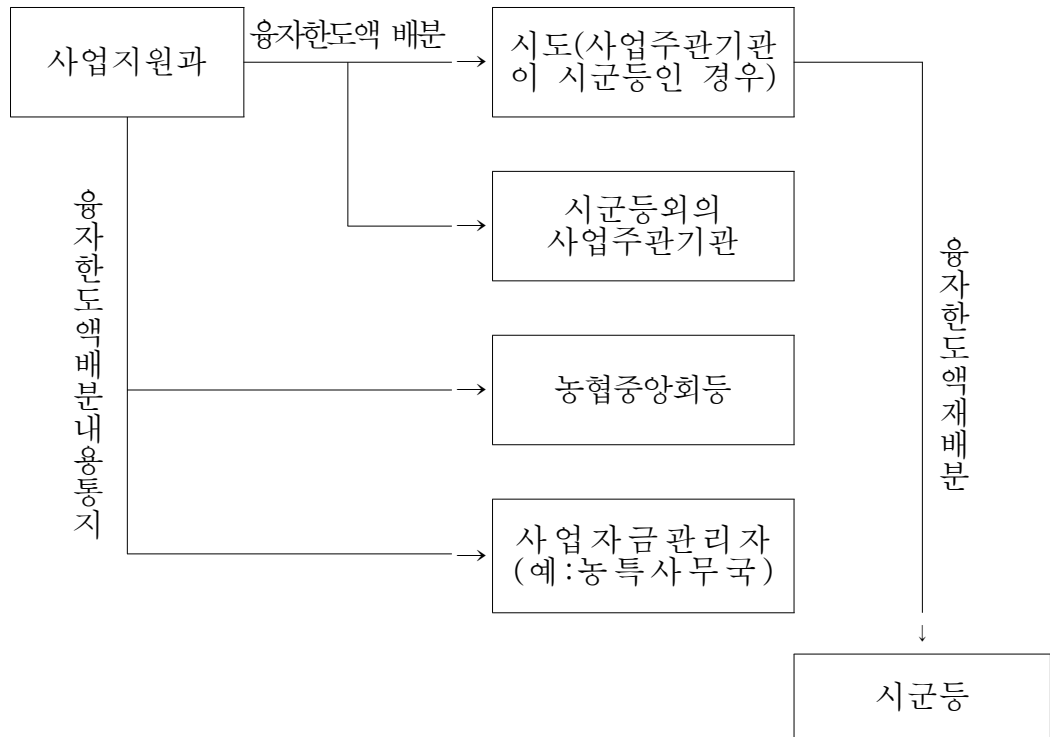
(4) 용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제7조의3)

- 용자한도액 배정절차(제7조의3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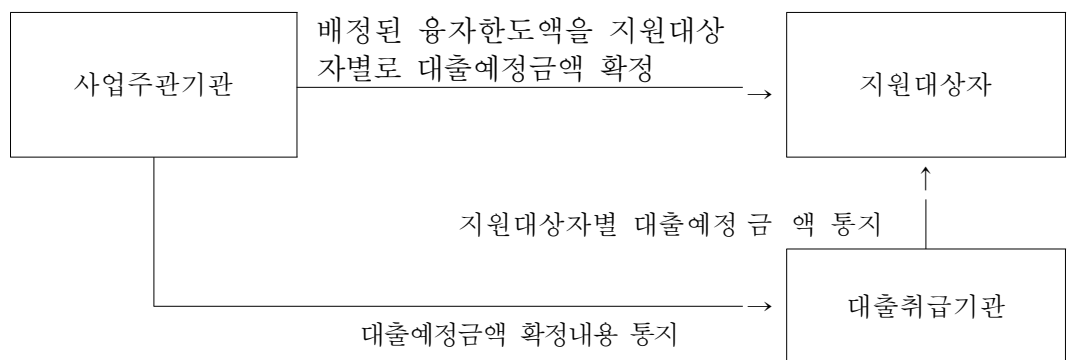
[설명]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 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용자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항 별지 제2호서식)



- 시도는 시군등에 용자한도액을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시도단위)에 통지

-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제7조의3제5항 내지 제7항)



-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촉구(제7조의3제6항)
- 대출촉구시는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7항)

(5) 대여 및 대출의 실행(제8조)

-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가 용자한도액을 배분하였다는 내용을 통지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에 자금을 대여하여야 하며, 용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하여서는 안됨(제8조제1항)
-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대여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금관리자는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함(제8조제2항)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성격상 사업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관 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확인받아 대출을 실행함**(제8조제3항)

바.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반납(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 (1)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이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한 대출을 촉구한 내용과 **매분기말** 현재의 사업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용자한도액(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도 알려야 함(제8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내 반납시는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 (2)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반납기한을 정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함(제8조 제5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날후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사. 대출취급기관은 용자한도액의 배정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함(제8조제7항)

[설 명]

- 종전에는 용자한도액 잔액기준으로 대출원장을 관리함에 따라 배정된 용자한도액의 지원대상자를 알지 못하여 대출촉구 등 신속대출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대출지연요인으로 작용

아. 회계년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제10조)

- (1)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현저한 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년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별로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사업지원과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요청한후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아 대출(제10조제1항)

- (2) 대출취급기관은 당해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용자한도액(대여금)을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함(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않는다는 뜻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체없이 개별 통지함(제10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 (3) 농협중앙회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회계년도를 경과한 용자한도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지체없이 반납해야 함(제10조제3항)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10조제4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 1. 20.(1.10.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 또는 대출마감일 경과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다음 회계년도 1. 21.부터 또는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

[설 명]

- '96. 7. 31.까지는 『용자종결기한』제도를 두어 용자한도액(대여금)을 다음 회계년도내에서 매분기 단위로 연장했고, '98. 8. 1.부터는 『용자종결기한』을 폐지하는 대신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매분기말 반납제도를 채택하였으나 實效性이 적어 '98. 1. 1.부터는 배정된 용자한도액(대여금)이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되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하였으나, 확일적으로 회계년도 종료후 미대출된 용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99. 12. 19부터는 현저한 사정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마감일 연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대출마감일 연장기한(최소한의 범위내에서)이 불명확하여 연장 가능기한을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명시
- 또한, '02. 11. 20일부터 대출마감일 연장부서를 사업자금과에서 사업지원과로 변경

자. 대여금 또는 대출금의 이자는 대여일 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함(제11조)

(1) **대여금**의 이자는 개별규정에 납부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음(제11조제1항)

(2) 다음의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 납부주기를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제11조제2항)

- 금융기관외의 기관이 대출취급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차. 보조금의 집행(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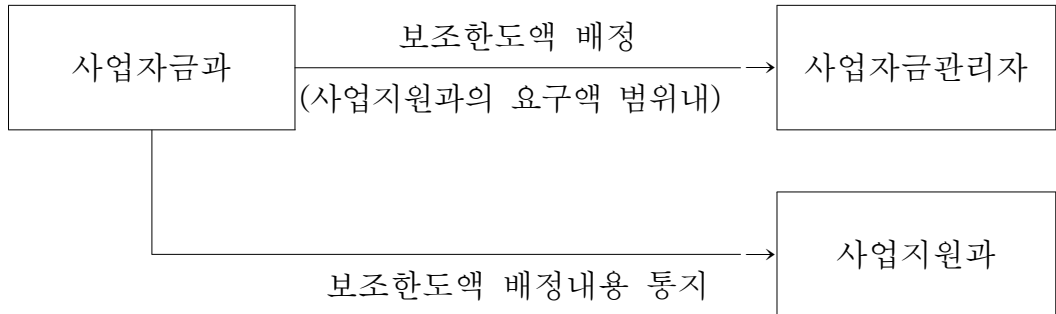
(1) 보조금 교부결정시 붙여야 할 조건(제13조제1항)

-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사업을 다른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 부당사용으로 제재대상이 될 경우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 집행자에게 반환하게 한다는 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자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이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 (2) 보조금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함(정산지급 원칙)(제13조제2항)
- 사업의 성격상 실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는 개산지급후 정산할 수 있음
- (3)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제13조제3항)
- (4) 보조금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 검정실시내용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함(제13조제4항)
- (5) 보조한도액의 배정절차 등 (제13조제5항)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제7조의제1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2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2항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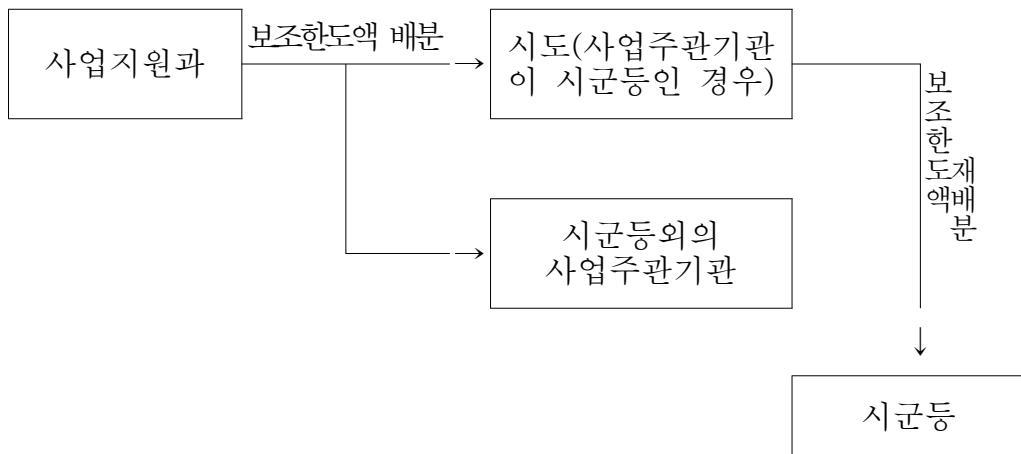
◦ 보조한도액 배정, 배분, 재배분

- 배정(제7조의3제1항)



[설명] 국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등은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보조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타. 제재(제14조 내지 제18조)

(1)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제14조)

-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함(제14조제1항)

<부당사용사유>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농림업 관련분야 사용목적 지원시는 지원목적외 용도. 이하 같음.)로 변경한 때
 -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때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지원후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 위의 사유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개별규정에 회수하지 않는 범위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 이자를 징수하여야 함(제14조제2항)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때에는 대출일부터 적용
 -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부당사용의 개시일부터 적용
 -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적용
- (주) 부당사용의 개시일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부당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함

(2) 부당사용한 대여금 및 보조금의 반납(제15조)

- 농협중앙회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 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다음의 시기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 상당의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제15조제1항)
 -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15조제2항제1호)
 -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15조제2항제1호)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해야 함(제15조제3항)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는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를 준용함

(3) 지원의 제한(제16조)

- 사업주관기관은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가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제한사항을 통지받은 때에도 같음(제16조제1항 및 제2항)

사 유	지원제한기간
① 부당사용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50% 이상인 때	5년 (비율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② 부당사용 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미만 인 때	3년
③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 30%미만 인 때	2년
④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 인 때	1년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기간이 긴 것을 적용**(제16조제1항)
- 2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될 경우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하여 제한기간 산출(제16조제2항)
 -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비율에 따라 부당사용금액 산출(제16조제3항)
- 지원제한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기여도나 정황 등을 참작하여 **50%이내 기간 단축 가능**(제16조제4항)
- 생산자단체등(법인제외)의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봄 (제16조제1항)

[설명] 생산자단체등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당해 생산자단체등에 영향이 없음

- 지원제한 기간의 기산일(제16조제5항)
 - 대출금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
 -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제16조제6항)
 -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날
-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제재내용, 제재 개시 및 종료 년월일, 제재사유 등을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등, 대출취급기관, 보조금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16조제7항)

파. 보칙(제18조)

- (1) 지방자치단체, 농협·산림조합(법인연합회 포함) 및 그 중앙회, 정부투자기관 등은 지원액을 회수하거나 지원제한기간중에도 **정부사업 대행 가능**(제18조제1항)
 - 정부사업 : 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가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분야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
- (2) 사업자금과는 다음의 전산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직접 또는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음(제18조제2항)
 - 대출과 동시 대여 방안
 -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집행실적 및 사용실태를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 (3)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실행시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원대상로부터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실적을 차후에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의 서류를 받아야 함(제18조제3항)

Ⅲ. 농림사업 실시규정 (훈령 제 호)

농림사업실시규정

〔1995. 11. 14.〕
〔훈령 제834호 전문개정〕

개정 1996. 6. 13. 훈령 제 862호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개정 1996. 10. 28. 훈령 제 877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 913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 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 931호
개정 1998. 11. 12. 훈령 제 965호
개정 1999. 11. 16. 훈령 제1003호
개정 2000. 11. 27. 훈령 제1050호
개정 2001. 12. 21. 훈령 제1083호
개정 2002. 11. 29. 훈령 제1122호
개정 2003. 11. 17. 훈령 제1145호
개정 2004. 12. 17. 훈령 제118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사업의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업무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농림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사업”이라 함은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 나.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다. 농림업 또는 농촌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라 한다.

3. “공공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농림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라 함은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로서 농림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모든 농림사업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별표1의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국제협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매비축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등(법인에 한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집행하는 사업비
5.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제4조(농림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사업에 대하여 농림부 총괄부서가 정하는 서식에 의거 농림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이하 “사업예정년도”라 한다.)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농림사업시행지침안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농림사업시행지침서로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20일까지 농림부의 사업부서와 그 산하기관·단체, 청, 시도,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는 제4조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갈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의 사업부서가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제5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농림사업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은 이 훈령에 의하여 확정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사업중 제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농림사업심의위원회

제5조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림사업실시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농림사업시행지침중 신청 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농림부 차관보, 농림부 각 국장(공보관, 감사관, 투·융자평가통계관을 포함한다.) 및 청의 기획관리관
2. 농림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부장관 및 청의 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림부의 사업부서의 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전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전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기획관리관과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부의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부의 투·융자평가통계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농림부의 실·국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과 농림부 및 청의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⑥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제 3 장 전문가위원회

제11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공공사업, 3억 이상의 자율사업중 농림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 소속의 과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3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은 전문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4장 농림사업

제16조 (농림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홈페이지에 게시
2. 게시판 게시 및 반상회보 등재

③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등의 장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농림사업의 안내 등) ① 시군등,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부, 농업기반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등 농림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 (농림사업의 신청 등) ① 농림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림사업신청서를 시군등의 총괄부서,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사업예정지 관할외의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농림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사업신청서의 내용과 농림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서 및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농업인 등이 농림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농림사업신청서의 제출기한) 농림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예정 년도내 사업추진가능 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수시로 신청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농림사업신청서의 검토) ① 농림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2.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것은 농·축·인삼업협동조합
3. 임업과 관련된 것은 산림조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 서류로써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④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 대출취급 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① 제2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군등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단서규정 삭제)

제22조(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농림사업신청서의 심사)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사업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3.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4. 시도, 시군등 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5.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6.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7.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4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①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 할 수 있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부장관과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의 표본농가로서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사업부서가 작성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사업신청서 등을 붙여서 시군등의 농정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시군등의 농정심의회 심의 등) ① 시군등의 농정심의회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 등이 상정한 신청자에 대한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농림사업신청서를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등의 농정심의회 의결로 정하는 농림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군등의 농정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당해 소분과위원회를 말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사업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군 등의 농정심의회 구성원중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0조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30인이내로 시장·군수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심의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와 시군등의 농정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농림사업신청서 등을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광역시·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등 및 도의 농정심의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6조 (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의 농정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월 28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등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등의 홈페이지,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 (시군등의 예산신청에 대한 시도의 심사 등) ①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2. 농림부 또는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또는 시도의 자체 자금지원계획

③ 시도의 총괄부서는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의 조정안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을 도 농정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도 농정심의회는 제23조 및 제2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총괄부서는 도 농정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총괄부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 또는 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와 자금지원우선순위 확정내용을 시군등에 통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시도의 홍보지 등에 실을 수 있다.

제28조 (시도의 예산신청에 대한 농림부 또는 청의 심사) ①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 예산을 조정한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발전계획 및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제29조 (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안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작성되면 지체없이 농림부 및 청의 사업부서로부터 시도 및 시군등의 예산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사업예정 년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 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별 자금 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우선 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 또는 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지원우선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 (정부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농림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확정 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시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시도지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과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확정권한이 시군등외의 기관에 있는 경우는 당해 기관이 확정 한 내용을 말한다.)하고 그 결과를 농림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개정 1997. 10. 29.>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선순위자

제33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지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 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당해 시군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농업기반공사 지사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자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3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경영 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제35조 (신규사업의 제안)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로 농림업과 관련된 사업(이하“신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업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신규사업의 선정요구) ①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타당성 분석자료에 농림사업시행지침안을 붙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결과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신규사업의 채택 등) ① 농림부의 총괄부서는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사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업무평가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업무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신규사업을 심의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부의 총괄부서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의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전임자문관제)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임자문관제”라 한다)

제39조(시범사업 실시) 농림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실태조사 실시) 모든 신규사업은 사업개시 후 6월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농업·농촌발전대책에 반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수정정보완지침에 따라 도 및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례) 신규사업의 자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제안한 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의 채택을 확정된 날부터 2월이내에 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5조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 (준용규정) 청의 장은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개정 1996. 10. 28.>

제44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농림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 (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고 사업담당자는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은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2의 농림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자금지원실적의 공개) 농림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등으로 하여금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 또는 농업인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3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업이 이 훈령에 의한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요령에 의한 세부사업지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28.>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림사업분류표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 ③ (경과조치) 농림수산사업지침심의위원회운영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1998.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8. 3. 9.>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1.12.>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9.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 2의 규정을 1999.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9. 11.16.>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과 제41조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00. 1. 1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0. 11. 2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2. 21.>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2.1.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2. 11.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3.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3. 11. 1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4.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3. 11. 1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의 규정은 2005.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별표1 : 제3조제2항 관련]

농림사업분류표

*표는 농촌진흥청 소관사업임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합 계(65)		(29)	(36)
제2권 농업(식량작물, 원예) 구조개선(28) 【식량작물】	가. 생산기반확충(11)	(13)	(15)
		(6)	(6)
		영농규모화사업 토양개량사업	주요농작물원원종및원종생산 수리시설개보수 대·중규모 용수개발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지조성
		나. 농업기계화(2)	농기계구입지원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생산지원
	다. 생산및유통개선(1)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원예구조개선】	가. 생산기반확충(1)	(7)	(9)
	나. 원예생산 및 유통개선	마늘경쟁력제고지원 농산물물류표준화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지원 지방자율계획(과실생산, 유통지원) 과원영농규모화 과원폐원지원	농산물유통시설운영 활성화 농산물직거래지원 농축산물자조금조성지원 채소수급안정 농축산물판매촉진 농산물해외시장개척 우수농산물지원 농산물유통전문교육 과수산업소득보전직불
제3권. 농업(축산)구조개선 (9)	가. 사육기반확충	(2)	(7)
		사료사업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축산계열화 한우사업지원 가축개량사업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제4권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28) 【농촌개발】	나. 축산물생 및 유통 개선		축산물유통개선 축산물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 학교우유급식 축산업등록지원
		(14)	(14)
		(8)	(8)
	가. 생산 및 유통개선	친환경농업육성 농업종합자금지원 농업농촌정보화기반확충	
	나. 기술개발 및 정보화		농림기술개발 지역특화시범 기술보급
	다.인력육성	후계농업경영인육성	농업인자녀지원 농업경영컨설팅

대분류	중분류	단위사업명	
		자 율	공 공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라. 소득보전		농업직접지불 농업인재해공제 농업인의 건강보험료경감 지원
	마. 소득원개발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한계농지정비 농가경영안정	
	바. 생활환경개선	폐비닐수거지원	
		(6)	(6)
	가. 경영기반확충	임업기계센터지원 영림계획	사방사업
	나. 생산 및 유통개선	임산소득증대 목재이용·가공지원	산림조합육성 임산물유통개선지원
	다. 인력육성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등 육성	임업전문인력 양성 및 임업기술지도
	라. 산림 복지기능증진		식물자원보전관리
	마. 산림자원조성	해외산림투자지원	조림·숲가꾸기·묘목 생산

[별표2 : 제44조제4항 관련]

농림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 110cm —————→

↑
80
cm
↓

주) 공공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란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명 및 관리책임자를 기재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업명 :
2. 사업자 :
3. 시설규모 :
4. 재원 :
5. 사업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30cm

21cm

다. 스티카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산)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년에 정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2. 대 상

-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투입되는 사업(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의 시설 등

< 예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 제외사업 ><신설 2002. 11. 29>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카도 가능함

4. 기 타

-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표시문안을 『이 사업은 ○○○○년도 농(산)촌구조개선대책사업중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명시함

[별표3 : 제46조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4. 11. >

가.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인 법인

나. <삭제 2004. 11. >

다. <삭제 2004. 11. >

라.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마.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 <개정 2004. 11. >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창업농후계자가 대표자인 법인과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은 법인설립 후) <개정 2004. 11. >

아. 농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2. 사업별 지원요건 <개정 2002. 11. 29>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 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삭제 2002. 11. 29>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 라.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 마.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농업법인에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 바.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 사.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 자. 사업규모가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재무제표 징구
- 차. 사업규모가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진단평가와 신용평가를 실시

[별지 제1호서식 : 제18조제1항 관련]

자 율 사 업 신 청 서

신 청 자	생산자단체등 의 명 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 번호	() -)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등 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 청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내 용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용	사업내용별 규모(량)						
<p>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p> <p style="padding-left: 40px;">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p> <p style="padding-left: 40px;">3.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p>							

-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m ²	m ²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m ²	개소 (톤)	식	대 (톤)	m ²		
<p>(주) : 1. 선과기의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p>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 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 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								
	○ ○ ○ ○								
	○ ○ ○ ○								
생산 자단 체등, 회사, 기타	공 동 시 설								
	○ ○ ○ ○								
	○ ○ ○ ○								
	기 타 시 설								
	○ ○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 ”로 표시

< 작성요령 >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 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275-0052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제18조제5항 관련]

대출신청자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 현황			융자금 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계	예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275-006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제21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명칭	생산자단체등의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업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역	지구	구역	지구

3. 사업검토

구분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경력 또는 조직력 ◦후계인력 또는 경영능력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규모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275-007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제22조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 -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 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천원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협동조합장 (인)

()시군지부장 (인)

275-008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성명 또는 명 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m ²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 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부 작성

4. 경영성과(-)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275-0093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농업인후계자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관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부에 의함(가계비는 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팽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의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개정 2002. 11. 29>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3. 11. .>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5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물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3. 11. .>

적 용 대 상 자 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6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12년
농업중 과수	20년	15년-25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6호서식 : 제34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275-010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림부 훈령 제1143호)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 1996. 6. 13. ┐

└ 훈령 제862호 제정 ┘

개정 1996. 8. 8. 훈령 제 864호

개정 1996. 10. 19. 훈령 제 875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 912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 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 932호

개정 1998. 7. 23. 훈령 제 948호

개정 1998. 12. 19. 훈령 제 967호

개정 1999. 11. 8. 훈령 제1002호

개정 2000. 11. 13. 훈령 제1049호

개정 2002. 11. 20. 훈령 제1120호

개정 2003. 9. 5. 훈령 제1141호

개정 2003. 11. 10. 훈령 제1143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농림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8. 8.>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8. 8.>

1. “농림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6. 8. 8, 1996. 10. 19, 1997. 10. 29.>
2.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및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동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과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96. 8. 8, 1997. 10. 29, 2000. 11. 13, 2002.11.20>

3. “지원”이라 함은 용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용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 (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무 사무 처리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9.>
5.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6. “사업자금과”라 함은 농림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 기관(직제상 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1998. 3. 9.>
7.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개정 1996. 10. 19.>
8.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9.>
9.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6. 8. 8.>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다만, 농업경영종합자금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6. 8. 8, 1997. 10. 29, 1999. 11. 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의2, 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8>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1997. 10. 29.>

②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 10. 29, 1998. 7. 23, 1999. 11. 8>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자부담 금액은 사업 실적이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의한 용자집행시마다 자부담비율만큼 분할 집행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2003. 9. 5.>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개정 1996. 8. 8, 1997. 10. 29.>

③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98. 7. 23.>

④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8>

⑤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 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신설 1998. 7. 23.>

다만,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을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신설 2002.11.20.>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당해 증빙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신설 1998. 7. 23, 개정 2003. 11. 10.>

다만,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 11. 10.>

⑦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 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 7. 23, 1999. 11. 8>

⑧ 제7항의 검정에 관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행지침에 정한다.<신설 1998. 7. 23.>

⑨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 11. 8>

제5조 (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자금중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은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다른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정한 경우는 당해 특례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이하 “예산과”라 한다.)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② 예산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조 (용자 조건의 결정) ① 용자 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용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는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 및 예산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가 용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제7조 (용자의 방법) ① 용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용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개정 1996. 8. 8, 1996, 10. 19, 1997. 10. 29, 2000. 11. 13>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재대여한다.<개정 1997. 10. 29, 1999. 11. 8, 2000. 11. 13>

③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신설 1997. 10. 29.>

제7조의2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는 매 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당해 시군등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관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년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9. 11. 8>

제7조의3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가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 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군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8>

④ 시군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8>

⑤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중 “시군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개정 1999. 11. 8>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후에도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매 월 2회 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촉구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7. 10. 29.>

제8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로부터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당해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지를 확인 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 7. 23.>

④ 사업주관기관은 제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 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전에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당해회계연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 9, 1998. 7. 23, 1999. 11. 8>

⑥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8>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 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7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용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 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 10. 29.>

제9조 <삭제 1997. 10. 29.>

제10조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 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8.12.19., 2002. 11. 20>

1.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 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6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 11. 20>
2. 사업지원과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8월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 11. 20>
3. 사업지원과는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당해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2. 11. 20>
4.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에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2. 11. 20>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중 당해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2002. 11. 20>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2002. 11. 20>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8. 12. 19>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한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19., 2002. 11. 20>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 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19., 2002. 11. 20>

⑤ 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원 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1997. 10. 29.>

제11조 (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0. 29.>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19, 1997. 10. 29.>

제12조 (여신관리계좌의 운용) <삭제 1999. 11. 8>

제13조 (보조금의 집행) ①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 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 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전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1998. 7. 23.>

③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98. 7. 23.>

⑤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중 “융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7조의2제3항중 “대출”은 “지급”으로 하며, 제7조의3제2항중 “농협중앙회등”을 삭제한다. <신설 1997. 10. 29.>

제14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1호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통지를 제외한다.)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개별규정에 회수하지 아니하는 범위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 10. 29, 1997. 12. 30, 1998. 7. 23.>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 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개정 1996. 8. 8, 1997. 10. 29.>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부도, 폐업, 사업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1997. 10. 29, 1998. 3. 9.>
5.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개정 1998. 7. 23.>

② 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 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 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98. 7. 23.>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신설 1998. 7. 23.>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 또는 의도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 사용의 개시일(다만, 부당 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신설 1998. 7. 2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신설 1998. 7. 23.>

③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수시(사업이 완료되지 전까지는 매 분기를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8. 7. 23.>

제15조 (부당 사용에 따른 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시기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당 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9, 1998. 7. 23, 1999. 11. 8>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 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이 당해 대출금을 회수한 날(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의 상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대여금의 상환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 7. 23, 1999. 11. 8>

1.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 실태를 매 분기 말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제14조제1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 10. 29, 1997. 12. 30, 1998. 7. 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사용의 경우 제14조제1항 단서·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중 “대출금”은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중 “대출”은 “보조”로 하며, 준용 규정(제14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중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7. 12. 30, 1998. 7. 23, 1999. 11. 8>

제16조 (지원의 제한)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당해 인(생산자단체등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본다.)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10. 29, 1997. 12. 30, 1998. 7. 23.>

1.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사용금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당해 사업비 지원액에 대한 부당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부당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때 : 5년(다만,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98. 7. 23.>
2.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때 : 3년<개정 1998. 7. 23.>
3.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인 때 : 2년<개정 1998. 7. 23.>
4.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때 : 1년<개정 1998. 7. 23.>

② 2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년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당해 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8. 7. 23.>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부당사용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 및 보조금의 금액은 대출금 및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1998. 7. 23.>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7. 12. 30.>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날을 말한다.)<개정 1998. 7. 23.>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확인한 날

⑥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원제한기간을 기산한다.<신설 1998. 7. 23.>

⑦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 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해 인·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 및 농림부장관(투자심사담당관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0, 1998. 7. 23.>

제17조 <삭제 1997. 10. 29.>

제18조 (보칙) ①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등(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회사, 기타 정부 사업(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 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1997. 10. 29, 2000. 11. 13.>

② 사업자금과는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 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9.>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신설 1997. 10. 29.>

2.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신설 1997. 10. 29.>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할 때와 보조금집행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 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설 1997. 10. 29.>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 8. 1.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과 부칙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6. 8. 1. 이후에 확인한 것부터, 제4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개별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도 사업자금 예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정 1996. 8. 8.>

②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34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 8. 8.>

제27조 및 제40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③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평가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25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 8. 8.>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경과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45160-5, 1995. 1. 1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1-나”중 “융자종결기한까지”를 삭제한다.

“Ⅱ-2-바”를 삭제한다.

⑤ (경과조치) 1996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주관기관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지원과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개정 1996. 8.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은 1997년도 사업자금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 8.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Ⅲ-4-(2)” 단서중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수·축·임·삼협중앙회(회원조합 포함)인 경우 및 사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하는”을 삭제한다.

“Ⅲ-4-(7)”중 “이자 회수 시기를 대출 기한 내에서”를 “이자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제3조 (경과 조치) 산림개발기금융자업무지침(산림청 일정 51060-302, '96. 8. 19.)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훈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100분의 20 이하”를 “100분의 20 미만”으로, “2억원 이하”를 “2억원 미만”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과의 의견을 받아 처리한다”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요구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훈령의 개정)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 8.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4-(4)”중 “- 이월된 사업의 융자 예산의 경우 계상 년도는 당초 계상 년도가 아니고 이월된 연도로 본다.”를 삭제한다.

부 칙 <개정 1997. 12. 30.>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1998. 3. 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7. 23.>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2. 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998회계연도의 대여된 융자금은 제1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3월 31일까지 대출할 수 있다.

부 칙<개정 1999. 11 . 8 >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훈령 제12조에 의한 신규사업에 대한 여신관리계좌 운영은 1999. 12. 31일까지 운영하고, 2000년.1.1부터 폐지한다. 다만, 19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운영은 농림부 훈령967호('98.12.19)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운영하며, 1999년 12월 31일까지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이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때에는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00. 11 . 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1. 20.>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대출마감일 연장기한 및 재연장 기한은 2002년 이후 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3. 9. 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11. 10.>

이 훈령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제7조의3제3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재배분 통지서 (시도 용)

수신 : ○○시·군·자치구

발신 : ○○시도

접수 확인 일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19 . . .	확인자	○○○○	○○○
	피확 인자	○○사·군·자치구 ○○과	.
		.	.
		.	.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4. 事業資金課 의 배정액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19 . . .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 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19 . . .		
6. 시 도 의 재 배 분 일	19 . . .		미 배 정 : ④ 천원
7. 시·군·자치구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㉑

합계 : ㉑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시·군·자치구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시도**는 시·군·자치구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2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제8조제6항 관련]

(사업자금명)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경유 : 대출취급기관

수신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발신 : 사업주관기관

접수 확인 일 19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사·군·자치구○○과	○○○
19 . . .	○○조합 ○○부서	.	.
.	.	.	.
.	.	.	.

사업명	주 소	성 명	연 간 예산액 (천원)	사업자 금과의 융자한 도액 배정일	사업자 금과의 융자한 도액 배분 일	시·도 의 융자 한도 액 재 배 분 일	대출예정금액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확정일	확정금액 (천원)	금 액 (천원)	반납 기한	사 유
○○ 사업		김 샷 갓	10,000,000	'98. 5.20.	'98. 5.21.	'98. 5.22.	'98. 5.23.	5,000,000	5,000,000	'98. 7. 3.	사업포기
○○ 사업		김 개 동	500,000	'98. 7.21.	'98. 7.22.	'98. 7.23.	'98. 7.24.	100,000	80,000	'98. 10. 5.	폐업
합 계											

(주) ○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산림조합중앙회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융자한도액 재배분일” 난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4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용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주소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번지	통	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p style="text-align: center;">19○○. ○○. ○○.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된 바 있는 ○○○○ 사업의 용자한도액 ○○,○○○,○○○천원중 ○○,○○○,○○○천원 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19 . .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사 업 주 관 기 관 의 장) (직인)</p>						

275-016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V.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구분	현 행(2004)		변 경(2005)		변경사유
I . 생 산 기반확충 1. 영농규모 화 사업 (자율) <사업개요> 나. 지원 대상자	나. 지원대상자		나. 지원대상자		○ 지 원 대 상 자 변경 -기 선정된 자와 신규 선정 대 상자 구분 명시
	구분	지원 대상	구분	지원 대상	
	○농지 매매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논경영규모가 2.0ha이상 인 일반농업인 ○논 경영규모 2.0ha이상인 쌀 전업농 및 일반농업인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논경영규모 5.0ha 이상), 농업회사법인(논 경영규모 10.0ha이상)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 된 자 (제주도에 한함)	○농지 매매	○----- 로서 만60세 이하의 논 경영 규모가 1.5ha이상인 자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만55세이하의 벼재배경력 3년 이상인 농업 인으로서 논 경영규모가 2.0ha이상인 자. 다만, 다음 의 경우는 지원가능 * 농과계학교 졸업자, 경종 분야 후계 농업인, 만40세 이하 농업인은 경영규모 1.5ha이상인 경우 *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 는 만60세 이하인 농업인 ○ <좌 동> ○ <좌 동>	
	p	구분	지원 대상	구분	
○농지 장기 임대차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논경영규모가 2.0ha 이상인 일반농업인 ○논경영규모 2.0ha이상인 쌀전 업농 및 일반농업인	○농지 장기 임대차	○----- 로서 만62세 이하의 논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자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 능성이 있는 만 55세이하의 벼 재배경력 3년이상인 농업인 으로서 논 경영규모가 2.0ha이 상인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가능 *농과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인, 만40세이하 농업인 은 경영규모 1.5ha이상인 경우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 는 만60세 이하인 농업인		

구분	현 행(2004)				변 경(2005)				변경사유			
	농지 장기 임대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논경영규모 5.0ha 이상), 농업회사법인(논 경영규모 10.0ha 이상)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제주도에 한함) 			농지 장기 임대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좌 동> 						
마. 지원 규모 및 지원조건	마.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마.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야지 등에서 대규모 경작 농가 창출을 위하여 지원 규모 상향조정 지원 연령을 60세이하로 조정에 따른 상환기간 변경 			
	구분	지원 규모	지원 조건		구분	지원 규모	지원 조건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농지 매매	10ha (우수경영체 등은 15ha)	연리 3.0%	연령에 따라 10-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체증식상환	농지 매매	20ha (우수경영체 등은 25ha)	연리 3.0%	----- 15-30년----- ----- -----				
	농지 임대차	20ha	무이자	5~10년 원금 균분상환	농지 임대차	30ha	무이자	----- -----				
농지 교환 분합	교환·분합하는 농지가격차액 및 청산금 납부 해당액	연리 3.0%	10년이내 원금 균분상환	농지 교환 분합	----- ----- ----- -----	연리 3.0%	----- -----					
바.사업비 내용	바. 2004년도 사업비 내용				바. 2005년도 사업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년도 사업비 확정내용 반영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지관리기금)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지관리기금)		
				계	보조	융자				계	보조	융자
	계	7,688	309,212	309,212	-	309,212	계	11,505		476,941	476,941	-
농지 매매	2,770	183,992	183,992	-	183,992	농지 매매	4,010	290,325	290,325	-	290,325	
농지 임대차	4,868	121,505	121,505	-	121,505	농지 임대차	7,445	183,891	183,891	-	183,891	
농지 교환 분합	50	3,715	3,715	-	3,715	농지 교환 분합	50	2,725	2,725	-	2,725	
		<신 설>						※ 농지매매·임대차사업비는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가능				
<사업시행요령> 가.농지매매사업	(나) 매입 우선순위 ②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필지규모가 큰 농지를 우선 매입하되 --(중략)----- 가급적 1회지원으로 3ha이상 농가가 출현이 가능하도록 매입대상농지를 선정				(나) 매입 우선순위 ②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소유답과 연결되어 집단화가 가능한 농지, 필지규모가 큰 농지 순위로 우선매입하되---(중략) 가급적 1회지원으로 6ha이상 농가가 출현이 가능하도록 매입대상농지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화 기여 대상농지 문구 삽입 정책목표 조기 달성을 위하여 상향 조정 			

구분	현 행(2004)	변 경(2005)	변경사유
	<p>(2)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한도 결정</p> <p>(가) 지원대상자(이하 생략)</p> <p>① <u>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u></p> <p>② <u>논 경영규모가 2.0ha이상인 자로서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이하생략)</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2)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한도 결정</p> <p>(가) 지원대상자(이하 현행과 같음)</p> <p>① <u>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60세이하로서 논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자</u></p> <p>② <u>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신규선정 대상자)</u></p> <p>※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공사 지사장이 영농경력, 경영규모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점 600점 이상인 자를 선정(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별표 1)</p> <p>㉠ <u>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55세이하인 농업인. 다만, 만56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가능</u></p> <p style="text-align: center;"><u><농업후계인력의 요건></u></p> <p>◦18세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 시까지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p> <p>◦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과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과계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 경우 연령과 영농경력의 제한은 없음)</p> <p>④ <u>논 경영규모가 2.0ha이상이고 벼 재배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쌀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할 농업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영규모가 2.0ha미만이라도 선정가능</u></p> <p>◦<u>농과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인,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40세이하인 농가는 경영규모 1.5ha 이상인 자(영농승계가 가능한 자는 승계 확인면적 포함)</u></p> <p>※일반농가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며, 공사는 선정 즉시 관할 시·군에 그 명단과 사업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함</p>	<p>◦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기준 설정</p> <p>◦ 쌀전업농신규 선정 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 명시</p> <p>◦쌀전업농 신규 선정 대상자 선정기준 명시</p>

구분	현 행(2004)	변 경(2005)	변경사유
	<p>③ 경영이양농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 ◦ <u>농 경영규모 2.0ha이상인 55세이하 농업인.다만, 후계농업인이 있는 농업인은 후계농업인을 쌀전업농으로 선정한 경우와 1회 지원으로 경영규모가 2.0ha이상 확대되는 60세이하 농업인은 지원</u></p> <p>④ 제주도의 기타전업농육성---(이하생략)</p> <p>⑤ <u>벼(제주도의 경우 ③의 ㉠품목)를 ----- --(이하 생략) ㉡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구성원 2/3이상이며(제주도의 경우 ③의 ㉠품목) 재배경력 3년이상인 법인</u></p> <p>(나) 지원제외자</p> <p>③ <u>기존 경작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영농권외의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영농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작지를 다른 영농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원가능</u></p> <p>④ <u>경영이양농지----(중략)---일반농지 지원시에는 만 61세 이상인 농업인.다만,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최초로 지원신청을 하거나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 후계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이 경우에는 영농승계 확인서를 징구하여 후계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관리)</u></p> <p><농업후계인력의 요건></p> <p>㉠ 18세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 시까지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p> <p>㉡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과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과계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이 경우 연령과 영농경력의 제한은 없음)</p>	<p>③ 경영이양농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 ◦ <u>농 경영규모가 2.0ha이상인 55세 이하 농업인. 다만, 경영규모가 1.5ha 이상으로서 1회 지원으로 경영규모가 2.0ha이상으로 확대되는 농업인은 60세까지 지원</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벼(제주도의 경우 ④의 ㉠품목)를----- (이하 현행과 같음) ㉡----- (제주도의 경우 ④의 ㉠품목)-----</u></p> <p>(나) 지원제외자</p> <p>③-----<u>시·군·구지역외</u>----- -----<u>시·군·구지역</u>-----</p> <p>④----- -----<u>다만, 영농기반을 승계할 있는 경우에는 후계 인력 명의로 지원 가능(이 경우에는 영농승계 확인서를 징구하고 후계인력을 관리)</u></p> <p><농업후계인력의 요건> : <삭제></p>	<p>◦ 쌀전업농육성 종합 대책 추진계획과 일치</p> <p>◦ 오자 수정</p> <p>◦ 지구 개념인 “영농권”을 “시·군·구”로 하여 개념 명확화</p> <p>◦ 지원제외자 기준 정리</p>

구분	현 행(2004)	변 경(2005)	변경사유
	<p>(라) 지원대상자 선정</p> <p>① 공사는 접수된 매입신청서와 -- (이하 생략) -----</p> <p>㉠ 경영이양농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p> <p>㉡ <u>경영규모 2ha미만인 자로서 1회 지원으로 소유농지를 포함한 전체 경영규모가 2.0ha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자</u></p> <p>㉢-㉣ (이하 생략) <신 설></p> <p>㉤-㉥ (이하 생략)</p> <p>③ <u>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농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u>(이하생략)</p> <p> ㉦-㉧ (생략)</p> <p> *<u>경영진단결과 공사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평가생략</u></p> <p>④ <u>공사 지사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u> (이하생략)</p> <p>⑤ <u>일반농가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며----</u> (이하생략)</p> <p>(마) 적정지원한도 결정</p> <p>① 대상자별 지원한도는 다음한도 내에서 지원</p> <p> ㉠ <u>쌀전업농육성대상자 : 10ha</u>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5ha ㉡-㉢ (생략)</p> <p> ㉣ <u>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20ha</u></p> <p> ㉤ <u>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품목별)</u></p> <p> ◦ <u>밭작물 10ha, 채소 5ha, 약용작물·인삼 : 3ha</u></p> <p> ㉥ (생략)</p>	<p>(라)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p> <p>① <좌 동></p> <p>㉠ <좌 동></p> <p>㉡ <u>논 경영규모 2ha이상 6ha미만인 자로서 1회 지원으로 소유농지를 포함한 전체 경영규모가 6ha이상으로 확대 될 수 있는 자</u></p> <p>㉢-㉣ (이하 현행과 같음)</p> <p>㉤ <u>공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쌀전업농 교육을 이수한 자</u></p> <p>㉥-㉦ (이하 현행과 같음)</p> <p>③ <삭 제></p> <p> <삭 제></p> <p>③ (현행과 같음)</p> <p> <삭 제></p> <p>(마) 적정지원한도 결정</p> <p>① -----</p> <p> ㉠ <u>쌀전업농육성대상자 : 20ha</u>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25ha ㉡-㉢ (현행과 같음)</p> <p> ㉣ <u>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30ha</u></p> <p> ㉤ <u>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 : 10ha</u></p> <p> ㉥ (현행과 같음)</p>	<p>◦ 2ha이상 6ha 미만 쌀전업농 집중 지원으로 목표 달성도모</p> <p>◦ 평야지역 등에는 대규모 경작농가도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도 상향조정</p>
	<p>(3)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p> <p>(다) 매매대금의 납부</p> <p>② 분할납부</p> <p> ㉠ <u>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0년까지 분할납부</u></p> <p> ◦ <u>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만40세이하 : 30년, 41 ~ 55세이하 : 20년, 56 ~ 60세이하 : 15년, 61세이상 : 10년</u></p>	<p>(3)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p> <p>(다) 매매대금의 납부</p> <p>② 분할납부</p> <p> ㉠ <u>납부기간 : -----</u></p> <p> -- <u>15년까지 분할납부</u></p> <p> ◦ -----</p> <p> -----</p> <p> ----- 56 ~ 60세이하 : 15년</p>	<p>◦ 61세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납부기간 삭제</p>

구분	현 행(2004)	변 경(2005)	변경사유
다. 농지 임대차 사업	<p>다. 농지 임대차사업</p> <p>(1) 대상농지 확보</p> <p>(나) 대상농지 및 우선순위 : --(이하 생략)</p> <p>① 공사에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p> <p>②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답</p> <p>(2) 지원대상자 및 지원한도</p> <p>(가) 지원대상자 : 농지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와 같음</p> <p>(나) 지원제외자</p> <p>①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u>만 65세</u> 이상인 농업인. 다만, <u>65세</u> 이상인 경우에도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 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u>지원가능</u> (경영주체의 청장년화를 위해서 2005년부터 연령을 점차 인하)</p> <p>(다) 지원한도</p> <p>① 쌀전업농육성대상자 : <u>20ha</u></p> <p>②-④ (생략)</p>	<p>다. 농지 임대차사업</p> <p>(1) 대상농지 확보</p> <p>(나) <좌 동></p> <p>①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답</p> <p>② 공사에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p> <p>(2) 지원대상자 및 지원한도</p> <p>(가) 지원대상자</p> <p>①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u>만 62세</u> 이하로서 <u>농 경영규모가 1.5ha 이상인 자</u></p> <p>※ 이외의 지원대상자 요건은 농지 매매사업과 같음</p> <p>(나) 지원제외자</p> <p>① -----<u>만 63세</u>----- -----<u>다만, 만 63세</u>----- ----- -----<u>후계인력명의로</u> <u>지원가능(이 경우에는 영농승계</u> <u>확인서를 징구하고 후계인력을</u> <u>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관리)</u></p> <p>(다) 지원한도</p> <p>① 쌀전업농육성대상자 : <u>30ha</u></p> <p>②-④ (현행과 같음)</p>	<p>◦ 경영이양직불 대상 농지 우선지원에 따른 순위 조정</p> <p>◦ 임대차사업 기간 사업물량 확보, 경영이양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자에 대하여는 만 62세까지 지원</p> <p>◦ 직불대상 연령 고려, 만 63세 이상은 제외하되 후계인력에게는 지원토록하여 후계인력육성도모</p> <p>◦ 지원한도 상향조정</p>
<p><행정사항></p> <p>가. 추진 목표 설정 및 관리</p>	<p><행정사항></p> <p>(1) 기본방침</p> <p>◦ 2ha 이상 <u>5ha 이하</u> 규모농가에 자금을 집중지원하여 지역별, 개인별 목표 규모 확대달성</p> <p>◦ 2004년도 지원사업비의 70% 이상을 <u>2-5ha</u> 규모 농가에 집중지원</p> <p>- <u>2ha 미만</u> 농가도 1회 지원으로 3ha 이상 규모 농가로 출현되는 농가 포함</p>	<p><행정사항></p> <p>(1) 기본방침</p> <p>◦ -----<u>6ha 미만</u>----- ----- -----</p> <p>◦ 2005년도----- <u>2-6ha</u> 규모-----</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쌀전업농육성 목표에 일치 시킴</p>

구분	현 행(2004)	변 경(2005)	변경사유
나.사업 시행 계획 공고 및 사업비 정산	(3) 사업비 배정 (가) 사업비 신청 및 배정시 시·군별 영농규모화사업계획과 3ha이상 농가출현 목표를 고려하고 우량 영농권에 사업비 우선 배정 (나) 추진실적 점검결과 3ha이상 농가출현--(이하생략)	(3) 사업비 배정 (가) ----- ----- 6ha이상----- ----- ----- (나)----- 6ha이상----- -----	○쌀전업농 육성목표 조기달성 유도
다.사후 관리	(2) 전업농 관리(시·군, 농업기술센터, 공사) (나)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② 공사 지사장은 매년 12월까지 지원 받은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사업계획이행 여부를 점검 - 전체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익년도 2월말까지 통보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취소사유> ① 공통사항 ㉠ 농업이외의 타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겸업을 하는 경우로써 시장·군수가 영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전업농 관리(시·군, 농업기술센터, 공사) (나)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② 공사 사장(지사장)은----- ----- - 전체 --- (중략)----- -----농림부장관 (시장·군수)-----보고(통보) : 별지 제9호서식 <사업취소사유> ① 공통사항 ㉠----- ----- -----공사 지사장 또는 시장·군수가 영농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공사사장(지사장)이 사업추진상황을 농림부장관(시장·군수)에게 보고(통보)토록 함 ○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공사 지사장이 영농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하는 경우에도 사업취소사유에서 제외
라.지원 농지 관리	라. 지원농지 관리(농업기반공사) (1) 사후관리 상황조사 ② 지원농지의 전매·증여·임대·전대·대리경작 또는 무단전용 여부	라. 지원농지 관리(농업기반공사) (1) 사후관리 상황조사 ② ----- -----휴경여부	○지 원 농 지 에 대 한 휴 경 여 부 조 사 추 가(쌀생산 조정제 약 정 여 부 등)
6.2005년 도사업 신청안 내	6. 2005년도 사업신청안내 나. 신청자격 ※ 상세한 내용은 2003년도 지원대상자 참조 다. 신청절차 ○ 2004년도에 농지를 매입, 임차 또는 교환·분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관할 농업기반공사--(이하생략)	6. 2006년도 사업신청안내 나. 신청자격 <삭 제> 다. 신청절차 ○ 2006년도에 농지를 매입, 임차 또는 교환·분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를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농업기반공사--(이하 현행과 같음)	

구분	현 행(2004)	변 경(2005)	변경사유
	<p><별표 1>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p> <p>◦ 영농경력 - 1년 미만은 100점(최저)으로 하되 1년 이상은 1년단위로 20점씩 가산 ·5년이상 : 200점 ·4년이상 5년 미만 : 180점 ·3년이상 4년 미만 : 160점 ·2년이상 3년미만 : 140점 ·1년이상 2년미만 : 120점 ·1년미만 : 100점</p> <p>◦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 배점분포 비율 - 상 : 신청자의 15% - 중 : 신청자의 70% - 하 : 신청자의 15%</p> <p>◦ 사업계획 및 영농규모확대 의욕 * 배점분포 비율 - 상 : 신청자의 15% - 중 : 신청자의 70% - 하 : 신청자의 15%</p> <p>◦ 가산점 ② 경영장부 및 ----- (중략) ----- 국가기술자격증</p> <p>◦ 경영계획에 관한 자세한 설명 (작성 요령) 정부는---(중략)---5년간---바랍니다 1) 먼저,----(중략)----향후 5년내에 ---, 2) - 3) (생략)</p> <p><별지 제9호 서식></p> <p>◦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사업추진현황보고 ----- ----- 농림부장관 귀하</p>	<p><별표 1>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p> <p>◦ 영농경력 - 3년 이상은 160점(최저)으로 하되 1년단위로 20점씩 가산 ·5년이상 : 200점 ·4년이상 5년 미만 : 180점 ·3년이상 4년 미만 : 160점 <이하 삭제></p> <p>◦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 배점분포 비율 : <삭 제></p> <p>◦ 사업계획 및 영농규모확대 의욕 * 배점분포 비율 : <삭 제></p> <p>◦ 가산점 ② 경영장부 및 ----- (중략)----- -----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p> <p>◦ 경영계획에 관한 자세한 설명 (작성 요령) 정부는---(중략)---3년간---바랍니다 1) 먼저,----(중략)----향후 3년내에 ---, 2) - 3) (현행과 같음)</p> <p><별지 제9호 서식></p> <p>◦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사업추진현황보고 ----- ----- 농림부장관(시장·군수) 귀하</p>	<p>◦ 신규 쌀전업농 선정대상 요건 변경에 따름 - 3년 이상 벼 재배 경력이 필요 함에 따라 3년 미만 경력 삭제</p> <p>◦ 단위 농가 별 강제배분의 불합리 - 개인 능력에 따라 점수 부여</p> <p>◦ 통 보 대 상 기관에 시장·군수도 포함</p>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p>2. 토양개량제지원 사업</p> <p><추진체계> 라. 토양개량제 공급 기본계획 수립 바.(4) 토양개량제의 살포</p> <p>별지 제1호 서식 토양 개량제 공급살포현황</p>	<p>토양개량사업</p> <p>- 리, 지번, 면적, 경작자 주소, 성명 및 공급예상 물량 명시</p> <p><신설></p> <p>공급지역(리, 지번, 면적), 경작자(주소, 성명)</p>	<p>토양개량제지원사업</p> <p>- 경작자 성명, 주소, 공급 대상면적, 공급예상(계 획)물량 명시</p> <p>- 특히, 마을이장 등 경작 자 대표는 지역농협장이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살 포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p> <p>공급계획(경작자 성명, 주소, 대상면적, 물량), 공급계획 물량확인</p>	<p>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화 행정 간소화로 일선 기관의 편의도모</p> <p>공동살포시 수혜농 업인의 동원 등 경작자대표의 역할 명시</p> <p>행정 간소화 및 공 급물량의 정확한 물 량 도모</p>
<p>3. 주요농작물원원종 및 원종생산</p> <p>2. 시책 및 추진방향</p> <p>5. 2005년도 사업시행 요령</p>	<p>◦감자는 '98년부터 무병 건전한 씨감자 생산을 위해 전면적 망실재배 추진</p> <p>- 부족한 씨감자 수요량을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 감자원종장 망실면적 의 확대지원 및 농가 에 기설치된 망실시설 의 백망사 구입비 지원 등으로 위탁농가 씨감자 재배 면적 최대한 확보</p> <p>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감자위탁농가 백망사 구입비 지원]</p> <p>가. <생략> 나. 신청자격 : 강원도 감 자종자보급소 채종포 장 대상지역(강원도에 한함) 희망농가 다. ~ 라. <생략></p>	<p>◦감자 원종장 이전에 따라 감자 원종은 원종장 포장 에서 전량 생산 추진</p> <p>- 이전하는 감자 원종장 포장에 망실을 충분히 확보하여 원종을 모두 자체생산하고 위탁농가 의 백망사 구입비 지원 은 감자원종장 이전 후 축소</p> <p>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지원대상자 선정> [감자위탁농가 백망사 구입비 지원]</p> <p>가. <생략> 나. 신청자격 : 망실을 확 보할 수 있는 원종생 산 희망농가(강원도에 한함) 다. ~ 라. <생략></p>	<p>감자 원종장 이전 사업 추진으로 자체 망실확보가 가능해 짐에 따라 감자 원 종을 전량 자체 생산 하여 안정적 원종 생산 및 종자 품위 향상 도모</p> <p>◦체계 변경</p> <p>◦필요할 경우에는 익년도 보급종 채 종농가가 아닌 경 우에도 원종생산 농가로 선정, 백망 사 구입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p>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기존 망실설치 농가 중 익년도 보급종 채종 대상 농가로 채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가 ◦ 우선순위 - 익년도 보급종 채종 농가로 망실시설 확보농가 - 감자 원종 위탁생산 희망농가 - 포장관리 등 채종능력이 있는 농가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망실확보 농가 - 원종 혹은 보급종 생산 경험, 참여도 ◦ 우선순위 - 망실시설이 확보된 원종 및 보급종 생산 경험이 많은 농가 - 망실시설이 확보된 보급종 생산경험이 있는 농가 - 망실을 확보할 수 있는 원종 생산희망농가	
4-1 수리시설개보수 1. 목 적 2. 시책 및 추진방향 ①수리시설개보수사업 <사업추진> (13)기타사항 ②저수지준설 <사업추진> (14)기타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양·배수장을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시설로 리모델링 ◦양·배수장 기전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보강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효율에 의하여 산정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효율에 의하여 산정	◦“환경친화적인 생산기반정비 추진방안”(03. 12.24) 반영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개정(03. .4.9) 사항 반영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개정(03. .4.9) 사항 반영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③방조제개보수 <사업시행> (7)기타사항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효율에 의하여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개정(03. .4.9) 사항 반영
4-3 저수지비상대책 5. 2005년도 사업 시행요령 <사업계획수립> 마. 업무협약 및 기술력 향상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수지비상대책계획수립시 관계행정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절차 강화 피해예측모형개발, 피해잠재성평가기법 등 중요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전문용역업체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율적인 비상대책계획 수립이 되도록 관련 규정 신설
5대·중규모용수개발사업 <사업계획수립·시행> 라.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1) ~ (4) <추가>	<p>(1) ~ (4) 현행</p> <p>(5) 세부설계업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수로 노선선정시 주민의견 수렴토록하고 경제성이나 유지관리 차원에서 큰문제가 없는 지구는 관수로화하는 방안을 검토 용지매수보상비 산정시 인근지역의 공공사업 추진시 실제 감정평가 및 매입단가를 비교하여 현실성 있는 단가를 반영토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설계업무 강화로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비 증액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효율성 제고도모
타. 기타사항	(1) ~ (2) <추가>	<p>(1) ~ (2) 현행</p> <p>(3)공사중인 사업구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시행자 조치사항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중지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p>7.농지조성 ①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체계> 다. 사업시행 (4)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p>	<p>(나)세부설계시에는 『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96.1.27,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6-7』을 적용, 최신기술 도입과 충분한 비교설계를 통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구조물(방조제, 배수갑문, 저수지, 대형 수로구조물, 관수로, 양배수장, 터널 등)을 설치할 곳에 대하여는 기초지반의 지질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공사시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p>	<p>(나)세부설계자는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세부설계를 실시 ○설계팀은 설계전문가로 구성 ○현지조사 및 세부설계 실시 - 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96.1.27,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6-7)을 준수하여 세부설계 추진 - 지역에서 추진되는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 등으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제고 방안 검토 - 주요구조물(방조제, 배수갑문, 저수지, 대형 수로구조물, 관수로, 양배수장, 터널 등)을 설치할 곳에 대하여는 기초지반의 지질조사를 철저히 실시 - 간척농지 조성을 위한 세부설계시 영구간(갯골)에 대한 과도한 매립계획 지양 -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 용지매수보상 및 어업보상비 산정시 현지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상물건의 누락이 없도록 하고, 현실성 있는 적정비용 산정</p>	<p>○세부설계업무 강화를 위해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p>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8) 시행계획변경	<p>(가)물가변동에 의한 사업비 변경은 사유 발생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p> <p>(11)검사 (다) 준공검사 1) 공사준공 ①사업시행자는 공사준공 계획을 수립하고, <u>준공 검사 10일전까지</u>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p> <p>(12) 유지관리 (가)사업시행자는 기완공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1월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p> <p>(나) 유지관리사업비는 실비정산함</p>	<p>(가)사업시행자는 물가변동에 의한 사업비 변경은 사유 발생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한 후 <u>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 조달청 선심절차를 거쳐</u>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p> <p>(11)검사 (다) 준공검사 1) 공사준공 ①사업시행자는 공사준공 계획을 수립하여 <u>준공 검사 이전까지</u>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p> <p>(12) 유지관리 (가)사업시행자는 기완공된 시설물(부분준공 포함)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함</p> <p>(나)사업시행중인 지구 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잡수입 또는 사업비로 실비 지원할 수 있음. 다만, 공사준공된 시설은 시설물 관리자에게 이관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금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함</p>	<p>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준수</p> <p>시공업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면, 준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준공검사계획 보고일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p> <p>유지관리업무는 사업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의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유지관리계획에 대한 장관 승인사항은 폐지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하여 추진토록 개선</p> <p>공사준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사업비는 별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p>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13) 자금관리	<p>(다)유지관리비 예산이 별도로 확보된 지구는 책정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책정된 예산을 유지관리비 이외 타사업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예산 미확보지구와 사업시행중인 지구는 잡수입으로 충당하되 잡수입이 부족할시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p> <p>(라)유지관리사업 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p> <p>(리)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비 국고의 예치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은 당해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p>	<p>(다) <삭제></p> <p>(라) <삭제></p> <p>(리)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지연 등이 있을 경우 보조금을 원본으로 하여 발생한 이자 등 과실은 당해 사업에 사용하거나,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p> <p>(마)보조금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반환하게 될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p>	<p>‘수입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의 규정대로 자금관리</p>
(14) 기타사항	<p><신설></p> <p>[별지 제3호 서식] ◦진도보고 서식</p>	<p>(리)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취장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환매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p> <p>[별지 제3호 서식] ◦진도보고 서식 개정</p>	<p>토취장 관련 민원 예방</p> <p>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사전에 발굴하여 대처하기 위해 보고서식 일부 변경</p>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II. 농업기계화 8. 농기계구입지원 ◦지원대상 농기계	100만원이상 농기계	70만원이상 농기계	제3차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 결과반영 ('04. 6.8 국무조정실)
◦농기계 공급자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농기계 (신규)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농기계 형식검사 또는 안전검정대상 농기계 임에도 형식검사 또는 안전검정을 받지않은 농기계를 공급한 시·군·구 단위 사후봉사업자 또는 공급농협은 농기계 공급자에서 1년간 제외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임대 및 폐지한 지역농협은 공급자에서 제외	고품질 신선농산물 생산을 위해 BT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농기계 개발보급 촉진 성능·안전성이 미흡한 농기계 공급에 따른 농업인 피해 예방 A/S강화
◦대형 농기계 용자상한제 도입	(신규)	트랙터 70마력, 콤바인 산물4조 승용이앙기 6조 기준	필요이상의 고가 농기계 구입억제로 영농규모에 맞는 농기계 구입유도
◦안전검정제 도입	(신규)	안전평가가 필요한 농기계는 안전검정을 받아야함(61개기종)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중고농기계 용자조건 완화	미상환잔액이 당초 용자액의 25%미만	미상환잔액이 당초 용자액의 50%미만	중고농기계거래활성화로 농기계이용율 제고
◦용자금 사후관리	농기계구입자금지원일로 부터 1년간 사후관리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일로부터 2년간 사후관리	지원대상 농기계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용자금 사후관리 강화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9. 농기계임대사업 ◦지원조건 ◦임대농기계구입, 임대료징수, 사후관리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국고 30%, 지방비 70% (신규) (신규)	국고 50%, 지방비 50% 「지역별 농기계임대사업 모델」을 준용하여 결정토록 함 우리부 「주요 농기계 내용연수」를 준용하여 관리	지자체 재정부담완화로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임대사업 목적 달성 임대농기계 관리 강화
10. 농기계사후 관리지원 ② 수리용부품·장비지원	(신규)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을 설치한 사후봉사업소에 대한 카고크레인 구입비 지원	중고농기계 상하차작업 편리성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
11. 농기계생산 지원	◦농기계생산지원자금의 배정기준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운영 - 지침미운영	◦농기계생산지원자금의 지원 규모, 지원기준은 「농기계생산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지침운영	◦효율적인 지원체계 확립(지원조건, 지원기준 등)
12.미곡종합처리장 운영 1. 사업명 2. '05년도운영자금 지원요령 <사업개요> (4)지원단가 및 조건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운영(자율)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지원(자율) -RPC 증설사업관련 내용은 삭제 ◦지원기준 :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또는 '04 벼매입실적에 따라 지원 ◦자금용도 : 농가벼 매입자금(단, 기존에 벼매입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대출금의 대환은 가능함)	◦RPC 증설사업은 균특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추후 별도 지침 마련 ◦지원기준 및 자금용도를 명문화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p><추진체계> 다.사업시행</p> <p>라.사업비정산</p>	<p>○통합RPC의 농가벼 의무매입량1.0배 적용</p> <p>○1.5배 미만 매입시 지원총액과 1.5배적용 산출액의 차액을 회수조치하고,</p> <p>○1.0배 미만매입시 지원총액과 1.0배 적용산출액의 차액회수 및 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이자를 징구함</p>	<p>○통합RPC의 농가벼 의무매입량1.5배 적용</p> <p>○1.5배미만 농가벼 매입시 지원총액의 1.5배 산출액과 농가벼 매입금액의 차액을 차감조치</p> <p>○1.0배 미만 농가벼 매입시 지원총액과 농가벼매입금액의 차액 회수 및 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이자를 징수하고, 차기 지원시 1.5배적용 차액을 차감조치</p> <p>○자연재해등으로 불가피하게 농가벼 매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차감 및 연체이자 징수는 하지 않음</p>	<p>○의무매입량을 일반RPC와 형평성 고려</p> <p>○농가벼 매입 미달시 회수 및 차감 산출금액을 구체화</p> <p>○재해발생시 제재조치 제외</p>
<p><행정사항> 가.사후관리 ○부도RPC 지원여부</p>		<p>○부도RPC(DSC포함) 인수사업자가 RPC 재인정을 희망치 않거나 민간 자체조성 RPC정책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DSC로 인정</p>	<p>○DSC인정 규정 신설</p>
<p>7. '05년 RPC경영평가 및 통합사업 추진 계획</p>		<p>○'05년 RPC평가계획 전면 개정 - '05 RPC경영평가 실시계획 - RPC통합사업 추진계획 - 통합RPC 우대지원, - RPC 경영컨설팅 지원 계획</p>	<p>○'05년 경영평가 계획 반영</p>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3.농협중앙회 자금운 용수익 사용용도	①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행정비 ②사업조합의 손실보전 ③농림부장관이 별도 지 정하는 사업	① 교육·홍보, 조사연구, 판매사업 촉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비용 ②~③ “현행과 동일”	◦중앙회 적립금 사용용도를 구체 화하여 사업 활 성화 도모
13.마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 종구갱신사업 ◦ 생산기계화	◦종구갱신사업은 “종구생 산장려금지원”과 “종구 (주아)생산지원”으로 구 분하여 지원 ◦ -	◦“종구(주아)생산지원” 관 련 내용 삭제 ◦공동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 공동이용지원대상자는 공동이용 농기계의 관 리, 운용 및 유지 등 에 관한 사항을 정하 여 관리하여야 함”	◦지역특화사업에 의해 종구(주아) 생산지원”사업이 추진되었으나 ‘05년부터 예산 체제 변경에 따 라 지역특화사업 이 균특회계사업 으로 추진 ◦공동이용으로 보급 된 농기계의 이용 활성화와 관리강 화 도모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14.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1.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화우대품목 지원(무, 배추, 마늘, 양배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화우대품목 지원(무, 배추, 양배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늘의 상차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공동선별비는 지원하는 것이 표준규격화에 효율적임 - '03년도 지원실적 : 4,332천원 (전체 상차비의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재비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로 지원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 친환경인증/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조직 및 개별농가 - 농산물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기타 생산자 조직(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재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년도 지원대상에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공동마케팅 조직을 추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적 경영·광역화를 위하여 공동마케팅조직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로부터 지정 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 지원대상에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공동마케팅 조직을 추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적 경영·광역화를 위하여 공동마케팅조직 추가 지원
2.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규격포장 출하율이 80%이상인 기존품목에 주키니호박, 방울토마토, 조롱수박을 추가하여 지원비율을 20%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규격포장 출하율이 30% 이하인 수박, 마늘, 대파, 쪽파, 미나리, 고구마 등은 지원비율 40% 상향 조정 ◦표준규격 포장화율이 80% 이상인 사과, 배, 방울토마토, 조롱수박, 들깨잎, 장미 등 기존품목 지원비율은 20%로 하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신규품목인 단감, 감귤, 포도, 오이, 파리고추, 토마토에 한해서는 25%로 축소 '06년도에도 5%p 추가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규격 포장화율향상을 위하여 30% 이하 품목은 지원을 상향 조정 ◦포장화가 정착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20%로 하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05년도부터 적용되는 신규품목은 '05~'06까지 5%p씩 축소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2.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렛타이징하여 출하한 표준규격농산물은 5%p 가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소득 향상과 물류비용 축소를 위하여 파렛타이징화하여 출하한 표준규격농산물 인센티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선별비지원 보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탁공동선별비 : 공동선별비의 40% -매취공동선별비 : 공동선별비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선별비 지원 보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04년도 지원비율은 유지하고 공동마케팅 조직에는 10%p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적 경영·광역화를 위하여 공동마켓조직에 인센티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품질인증 생산자조직 등급 구분 없이 신청하여 제작 출하한 수량의 100%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품질인증 농산물 중 곡류, 두류는 지원비율 하향 조정(30% → 20) - ’05년도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품질인증 생산자조직 등급구분 없이 표준규격 포장재를 제작 신청한 수량의 100% 지원하되 저농약 인증농산물은 조직평가후 지원비율 적용 - ’06년부터 친환경, 품질인증농산물에 대해서도 신청조직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품질인증 농산물은 인증을 받음으로써 당해 농산물에 상응하는 가격을 받고, 특히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육성법에 따라 지원되므로 ’05년도에는 저농약인증농산물은 조직평가후 지원비율 적용 - ’06년도부터는 친환경 품질인증농산물에 대해서도 신청조직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05년도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고로 삭제 - 곡류, 두류는 포장화율이 100% - 곡류, 두류는 양곡관리법 지원대상 농산물임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3. 지원 기준 및 조건	◦소비자 품질평가후 부적합품 출하 농산물의 구성원수에 따라 확정 사업량의 20~40% 차감 적용	◦구성원별 적발횟수를 조 직별 적발횟수로 변경 하여 실질적 차감 강화 (5~40%)	◦품위, 중량 등 소비자에게 민원발 생 우려가 있는 부적합 농산물 출하 제재를 구성 원에 따라 제재하 였으나 구성원에 관계없이 적발횟 수로 변경하여 실 질적 차감을 강화 하여 소비자 보호 - 부적격품 : ('02)5,410건→('03)4,883→('04.6) 1,985
4. 행정사항	◦타 지원의 시·도간 전 배가 필요한 경우 본원 에 7.25, 9.25일까지 전 배요청	◦타 지원의 시·도간 전 배 요구시 본원에 9.30, 10.30일까지 전배요청	◦4/4분기에 보조 금 집행됨에 따 라 전배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 여 불용액 사전 방지
5. 사후관리	◦산지표준규격출하 지 도·감독시 보조금 지급 신청시 포장재 1매 제시토 록하여 포장재 제작·확 인	◦보조금 지급신청시 포장 재 1매 제시토록하여 포 장재 제작·확인하고 사업년도 말까지 보관	◦출장소 인력만으 로는 다수의 포장 재비 지원농가에 대한 포장재 제 작수량을 파악하 는데 어려움이 있어 포장재 1매 를 사업년도말까 지 보관하여 각 종 증빙자료로 활용
6. '06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포장재비지원을 친환경인증, '품질인증농산물은 생산자 조직 등급분류와 관계없 이 신청하여 제작 출하 하는 수량의 100%을 지원	◦'06년도부터 친환경인 증, 품질인증농산물에 대해서는 신청조직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	◦친환경인증, 품질인 증농산물은 인증 을 받음으로써 당 해 농산물에 상응 하는 가격을 받고, 특히 친환경농산 물은 친환경육성 법에 따라 지원되 므로 평가하여 지원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p>15.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사업</p> <p>1.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사업</p>			
<p>○산지유통전문조직유형</p> <p>○지원대상조직의 신청자격</p>	<p>○선도농협형, 연합판매형, 마켓팅법인형</p> <p>○최근 1년간 매출실적이 30억원 이상인협동조합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신청자격 부여</p> <p>※신청자격제한 : 축협조합, 축산류 또는 양곡류를 주로 취급하는 생산자단체 등</p>	<p><삭 제></p> <p>○최근 1년간 매출실적이 30억원 이상인 생산자단체</p> <p>-사업연합, 광역조직,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 사업연합 또는 생산자단체가 설립한 공동법인등</p> <p>※신청자격제한 : 축협조합, 축산류 또는 양곡류를 주로 취급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협중앙회의 상법상 자회사등</p>	<p>○공동마케팅조직에 포함되는 유형으로 전문조직에서 구분할 필요성 없음</p> <p>○신청대상조직을 명확히 설정</p> <p>○종합유통센터는 출하촉진자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농협중앙회의 자회사로 소매업을 하는 경우 전문조직으로 부합하지 않음</p>
<p>○자금사용용도</p>	<p><신 설></p>	<p>-공동마케팅조직은 각종 자금지원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p>	<p>○'05년도 시범선정 조직에 우선 차등 지원 근거 마련</p>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p>○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p>	<p><지원한도액 기준 및 산출방법></p> <p>○지원한도액(총사업비)을 70억원으로 하되, 다음 조직은 예외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마케팅조직, 사업연합, 광역조직 <p>○다음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직이 신청하는 금액을 신청액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계산 출하선도금 및 시설자금은 3년간 유통효율화 목표 및 최근 1년 실적을 감안하여 2004년 계획 금액이하 -전년도 산지유통센터(또는 가공공장) 원료구입자금의 200%이하 -계약재배 계약금(수급안정 사업품목은 제외)은 최근 1년간 실적의 150%이하 -전년도 산지유통센터 및 가공공장 이외의 매취사업자금 100%이하 <p>기타 일반출하선도금 등은 최근 1년간 사업실적의 30%이하 또는 유통관련 운전자금은 최근 1년간 평균잔액의 100%이하</p>	<p><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p> <p>○지원한도액(총사업비)을 70억원으로 원칙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조직은 예외로 하며, 사업연합광역조직은 예산범위내에서 예외로 인정 <p>○신청 조직의 사업비 신청액은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로 사용하되, 해당 조직은 사업실적 평가기준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용용도 범위 내에서 용도별로 구분 작성 제출 <p>※다만, 전년도에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비를 조기에 반납한 경우 해당액만큼 신청액에 감액 조치</p>	<p>○'05년도 예산규모 및 공동마케팅조직선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및 한도액 조정</p> <p>○선도조직을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조직인 만큼 동 사업의 자금사용 용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되, 사업계획서 준수 및 사업부진으로 사업비 조기 반납한 경우 패널티 부과</p>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p>○ 사업시행</p> <p>○농협중앙회 심사</p> <p>○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회원농협)</p>	<p><신 설></p> <p><신 설></p> <p>○사업계획 변경시 세부사업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p> <p>○세부사업 금액의 ±30% 범위를 초과할 경우 농협중앙회의 승인후 변경</p>	<p>○공동마케팅조직은 추후 별도 별도계획에 의해 시행예정임</p> <p>○전년도 사업실적 평가결과 과다 계상등 사후 각종 실사등에서 현저한 귀책사유가 확인된 조직은 농협중앙회 최종 심사결과의 총 배점에서 5%를 감함</p> <p>○지원대상조직은 확정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부의 이사회 의결(이사회 의결서 비치) 후, 농협중앙회에 제출 -동 계획에는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범위내에서 용도 별로 구분·작성</p> <p>○농협중앙회의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후, 사업대상자가 수급상황 등 생산유통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조직의 이사회 의결을 얻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이사회 의결서 비치)</p>	<p>○일정상 '05년 공동마케팅조직 선정에 필요한세부자침은 별도 수립·시달 예정</p> <p>○사후 실사를 강화하여 사업실적 부풀리기등 방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 강화</p> <p>○사업대상자의 사업재량 확대하고 대신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한 책임 강화로 도덕적 해이 차단</p>
<p>○사업실적 평가요령</p>	<p>○추진개요, 평가실시절차등 농협중앙회 및 유통공사에서 평가</p>	<p>○주요 개편 사항은 추후 별도 지침(농림부 유통정책과)에 의함</p>	<p>○APC경선개선사업으로 산지전문조직 및 APC평가를 통합한 유통종합평가 실시(외부의뢰)</p>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평가결과 인센티브 지원 및 패널티 부과	<p>○다만, 하위 5% 초과 10% 이하 조합의 평점이 지원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는 회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p> <p>○인센티브 지원액 및 자금 일부회수시 지원 및 회수 한도액을 설정하여 지원 -한도액 결정은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위원회’에서 결정</p>	<p>○다만, 천재지변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농협중앙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회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p> <p>○인센티브 지원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해당연도 평가 결과 부진조직의 회수자금은 동조직과 동일연도에 선정된 우수조직에게 잔여기간내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음</p>	<p>○지원위원회의 업무중 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 및 패널티부과 조직에 대한 자금회수 예외 기준이 불명확하고 한도액 설정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신속한 행정적 검토지원과 우수조직에 대한 선택과 집중 필요</p>
○대여금 수입에 대한 사용용도	<p><사업의무량 산출방법></p> <p>○농협중앙회는 정부자금 취급수수료(0.5%)를 조합의 유통사업을 활성화에 사용</p> <p>-전문컨설팅 실시 : 용역, 컨설팅 결과보고 및 평가회</p> <p>-산지유통전문조직의 유통 시설 현대화규모화를 위한 시설설치비 지원</p> <p>-평가 : 평가 프로그램 개발, 사업 표준모델 개발·보급(우수사례집 발간, 우수사례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제작), 평가 연찬회 개최 등</p> <p>-교육 : 컨설팅 관련 위탁교육, 조합원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전자상거래 관련 위탁교육 등</p>	<p><대여금 수입에 대한 사용용도></p> <p>○농협중앙회는 정부자금 취급수수료 0.5%P 중 80%는 공동마케팅조직 또는 산지유통전문조직의 마케팅 사업 활성화에 사용</p> <p>-산지유통혁신 연구, 국내외 세미나 개최 또는 자료 수집, 공동마케팅 홍보 지원,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등 마케팅 강화</p> <p>※마켓팅자문단 운영, 유통업체 거래알선, 도매시장 파렛트 단위 출하촉진, 상품설명회 등</p> <p>-컨설팅 관련 전문지식 습득, 농산물마케팅관리사과정 등 전문과정, 전자상거래 등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등 교육 지원</p> <p>- 유통정보화 사업</p>	<p>○대여금을 이용한 공익사업에 대한 자구를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도 구체적으로 명시</p> <p>○‘05년부터 APC사업자에 대해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종전 동 사업에서의 지원을 감안하고 산지전문조직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p> <p>○APC 발전 방안 후속조치로 유통공사의 APC클릭, 농협중앙회 APC지원단의 역할 반영</p>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p>○지원의 제한</p>	<p>-관측지원 : 마켓팅지문단 운영, 유통업체 거래알선, 도매시장 파렛트 단위 출하촉진, 상품설명회, 소비자 유통정보제공 등</p> <p>-지도점검 및 조사활동 등 : 현장지도 및 현황조사, 협의회 개최, 선진사례 견학 등</p> <p>-기타 : 사업홍보 및 광고 등</p> <p>○취급수수료는 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하고, 예산 반영 계획 및 집행실적(지도사업비)을 농림부에 보고(익년도 1월중)</p> <p>○유망품목시장개척지원자금</p>	<p>-사업 표준모델 개발·보급(우수사례집 발간 등), 정기 연찬회등 개최</p> <p>-지도점검 및 조사활동 등 : 현장지도 및 현황조사, 선진사례 견학 등</p> <p>-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또는 공동계산·상품화·브랜드화·친환경농업기술 등의 맞춤형 전문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조직의 용역, 컨설팅 결과보고 및 평가회등 지원</p> <p>-APC클리닉(유통공사) 및 APC지원단(농협), 농업경영컨설팅지원 결과등에서 마케팅 강화 또는 보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통시설 등의 시설설치비 지원</p> <p>※다만, 시설 및 컨설팅 관련 지원사업은 사전 농림부와 협의 후, 지원</p> <p>○동 대여금 수입에 의한 공익사업은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예산 반영 계획등 세부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집행실적등의 사업실적을 익년도 1월말까지 제출승인 후 시행</p> <p>○우수농산물 지원자금</p> <p>○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출하촉진자금</p>	<p>○또한 동 사업에서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시설보완지원을 여과기능이 미흡한 상태에서 지원함에 따라 농특예산에 의한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APC지원사업)과 충돌하는 사례 등의 우려가 있어 농림부와 사전 협의 후 지원여부 결정토록 함</p> <p>※지원사업에 대해 사전공유를 통하여 중복지원여부등 사전 검토 강화</p> <p>○대여금 수입에서 발생한 공익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 조기 정착시키고 사업계획서 및 집행실적에 대한 보고(제출) 체계 구체적으로 명문화</p> <p>○, 소비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산지와 경합 또는 형평성차원에서 지원제한 필요</p>

구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2.일반조직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대상자별 지원한도액	<input type="checkbox"/> 농산물산지유통센터(200평이상 산지유통시설 운영자 포함) ○사업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종합평가결과 점수를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도액 결정	<input type="checkbox"/>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 200평이상 운영자 ○사업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종합평가결과 점수를 6개 등급등으로 구분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한도액 결정	○'05년부터 APC 분야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 신규 지원됨에 따라 EF등급에게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건을 명시함				
	등급	등급구분		지원한도액	등급	등급구분	지원한도액
	A	평점 90점이상		30억원	A	평점 90점이상	30억원
	B	평점 80점이상 90점미만		20억원	B	평점 80점이상 90점미만	20억원
	C	평점 70점이상 80점미만		15억원	C	평점 70점이상 80점미만	15억원
	D	평점 60점이상 70점미만		9억원	D	평점 60점이상 70점미만	10억원
	E	평점 50점이상 60점미만		3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200평이상 산지유통시설 운영자등 평가결과 평점 60점미만 사업자 E ~ F	3억원	
	F	평점 40점이상 50점미만 또는 신규자, 200평이상 산지유통시설 운영사업장		1.5억원			
	-평가 또는 신규자금 사업자의 경우 2004년도에는 지원한도액을 조정('03년도 기준 50% 수준)하고, 2005년부터는 지원 중단	-평가결과 E, F 등급 사업자의 경우 2005년부터는 지원 중단 단, '05년도 또는 향후 2년이 내에 농림부 시행하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의 외부 전문업체에 의한 자체 경영컨설팅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자조금의 용도	○정부의 보조금은 다음 용도에 사용된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	○조성된 자조금(보조금 포함)은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 ※농안법 시행령 제8조2항의 용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사용용도를 정하지 않고 법령에 의해 정해진 용도내에서 포괄적으로 인정
○자조금사업계획의 수립	○자조금 조성의사는 1 회계연도(1. 1. ~ 12. 31.) 단위로 결정	○당해연도 자조금 조성은 정부의 회계연도 기준을 원칙으로 정함	○자조금 조성 기간을 명료하게 문구 수정 ※정부회계연도로 통일
○자조금사업계획서 신청	○사업계획서 신청 연중 가능 -최근연도 출하실적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하반기(2월말 또는 7월말) 각각 신청 -자조금관리규정, 전국적인 생산규모(생산량 또는 생산액) 증명서류, 신규 자조금조성단체 경우 1년간의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자체 실적) 제출	○보조금 지원 원칙 강화, 사업계획서 준비 강화, 도덕적 해이 방지, 자체 수급조절 등 사업 제고 등을 유도하기 위해 신청단계의 체계확립 필요
○자조금단체 인정기준 검토	<신 설>	○자조금단체 심사기준에 실질적인 사무국 기능 의무화, 업무전담 담당자 배치, 회원자격의 개방성확대, 자발적 거출구조 등 사업구조 기준 강화 ※보조금지원받은 연도로부터 3년이내	○특정 생산자단체의 상위단체를 통한 위탁 또는 대행에 따른 의타적 기능을 배제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 수행을 통한 자족능력 강화
○자조금조성단체 승인	○보조사업자를 확정(사업계획 승인)하고, 그 내용을 유통정책과에 통지	○신청서류 심사완료 후 검토의견서를 상·하반기 유통정책과 제출 -사업부서의 서류심사 결과와 현장방문심사를 거쳐 정례 산지유통정책협의회를 개최시(상·하반기 각 1회) 심의·확정	○자율권확대와 재정적 기반구축을 강화, 지원 대상품목에 대한 일관성 유지, 전문가의 의견반영을위한 정책협의회등 선정 기능 보완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p>○보조금 교부 및 지급</p> <p>○행정사항</p>	<p><신 설></p> <p>○자조금구성단체는 2005. 1. 31.까지 사업주관기관에 2004년도 자조금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p>	<p>○교부조건을 명시 - 별도계정 운영, 수입과 지출 구분 계리, 사용잔액(이자 포함) 반납</p> <p>○다만, 품목 특성상 계절적요인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부서는 기한내 가정산 보고 후, 익년 3월말이 전까지 사업완료후 정산 보고</p> <p>※ 자조금구성단체는 자체 적립금에 대해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익년도 조성액과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p>	<p>○민간보조금 지원에 대한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자금운용의 투명성 제고</p> <p>○과실등 품목의 특성상 계절적요인등을 감안하여 반영함</p>
<p>2. 축산자조금활동조성</p> <p>1. 신청자격절차구비 서류 등</p> <p>2. 선정기준·우선순위·절차 등</p>	<p>-</p> <p>(신 설)</p> <p>(신 설)</p>	<p>-</p> <p>○지원대상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에 의한 농협중앙회</p> <p>○거출금의 한도 및 지원 조건, 자조활동자금의 재원 및 용도</p> <p>○자조활동자금의 운용 - 자조활동자금의 운용에 대해 자조활동자금관리 위원회 설치 운영, 사업 계획 및 정산 공시 등</p>	<p>○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원대상, 거출금의 한도 및 지원조건과 재원 및 용도를 구체화함(추가)</p> <p>○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조활동자금의 운용을 구체화함(추가)</p>

구 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3. 기타(사업비 지원, 사후관리 등)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사업계획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홍보사업, 축산업자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사업 등 ◦사업시행 및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사업의 세부내용과 정산시 관련 증빙서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자조금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사업시행 및 정산 등 사후관리 강화 (추가)
<p>20.채소수급안정 사업(공공)</p> <p>①계약재배(노지채소)</p> <p>1. 사업대상자</p> <p>◦계약주체</p> <p>2. 사업조합에 대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대상품목의 수출업체, 당해지역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수집상 등 법인체로서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산지농협(영농조합법인 등 산지법인) ◦평가결과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손실대비 운영자금 확대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대상품목의 수출업체, --- 산지수집상 연합판매조직,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등 법인체로서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연합판매조직,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등 법인체 ◦평가결과 우수 사업체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 사업체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차감 등 페널티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대상자를 다양화하여 경쟁을 유도 ◦평가결과 인센티브와 아울러 페널티도 부과 ◦운영자금 사용범위를 손실대비 뿐만 아니라 판매사업 촉진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경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제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p>○인센티브 지원내용</p> <p>3.농협중앙회 자금운용수익 사용용도</p>	<p>○평가결과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의 10~20% 해당액을 손실대비 운용자금으로 추가지원</p> <p>①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행정비</p> <p>② 사업조합의 손실보전</p> <p>③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사업</p>	<p><삭 제></p> <p>① 교육홍보, 조사연구, 판매사업 촉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비용</p> <p>②~③ “현행과 동일”</p>	<p>○평가요령 및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계획으로 시행</p> <p>○중앙회 적립금 사용용도를 구체화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p>
<p>21.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p> <p>○ 신청자격·절차·구비서류</p> <p>28.과원폐업 지원사업</p> <p>○사업내용</p>	<p>연간수출실적이 10만\$이상인 수출업체</p> <p>국내산 김치, 채소, 인삼, 과일, 화훼 및 축산물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중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품목</p> <p><신설></p>	<p>연간수출실적이 15만\$이상인 수출업체</p> <p>국내산 김치, 채소, 인삼, 과일, 화훼 및 축산물</p> <p>(3)지원대상</p> <p>○ 시설포도의 시설의 형태는 다음 ①의 요건 또는 ②의 요건 전부를 충족하여야함</p> <p>① 2중골조, 2중비닐피복, 가온시설 설치 또는 설치가능</p> <p>② 1중골조, 1중피복, 가온시설 설치 또는 설치가능, 천정에 보온차단막 설치, 노지포도 보다 1개월이상 조기 출하한 증거자료</p>	<p>수출전문업체 육성</p> <p>신규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해 10만불이하 제한해제</p> <p>○시설포도의 적용의 혼선 방지</p>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 폐원 : 시설포도 10,315 천원/10a, 키위 4,148, 복숭아 3,447 - 양도 : 시설포도 3,438 천원/10a, 키위 1,382, 복숭아 1,149 ○ 지원대상면적산출 방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품목고시일 이후 과수목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4) 지원단가 및 조건 ○ 지원단가 - 폐원 : 시설포도 10,444 천원/10a, 키 위 4,159, 복숭 아 3,316 - 양도 : 시설포도 3,481 천원/10a, 키위 1,386, 복숭아 1,105 ○ 재원 및 조건 : FTA기 금, 보조100%, 농가단위 로 일시 전액 지원 (6) 지원대상면적 산출방법 ○ 임야, 하천부지 등은 측 량 등에 의하여 지원면 적을 정확히 산출하고, 평지일 경우는 시·군 (읍·면)에서 확인으로 도 가능함 - 지원면적은 m²(10a = 1,000m²)로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03년 자료로 보완 ○ 지원면적 산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p>○폐업신청서 첨부자료</p>	<p>○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동의서 징구</p>	<p>예1) 2,500평의 키위 표준평 $\div 300\text{평}(10a) \times 20\text{주}$ $\Rightarrow 2,500\text{평에 키위 } 106\text{주}$ 가 재식된 경우 $2,500\text{평} \times 106\text{주}/16$ $6.67\text{주} = 1,590\text{평}$</p> <p>예2) 2,500평에 키위 106주와 감나무 50주, 대추나무 30주가 혼식된 정상적인 과원일 경우 $\Rightarrow \text{예1)의 면적 } 1,590\text{평} \times 106\text{주}/186(\text{키위주수} + \text{감주수} + \text{대추주수}) = 906\text{평}$</p> <p>○문중소유, 공동소유, 근저당(가압류)설정, 미등기 등 과원토지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과원(토지)소유자의 동의서(과수목 소유자 및 폐원 후 폐업 품목을 다시 재배하지 않는다는 조건 명시) 첨부. 단, 사망 등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장, 마을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연명으로 과수목 소유자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폐원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p>	<p>○민원해소</p>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p>○ 신청서확인</p> <p>○ 사업우선순위</p>	<p><보완></p> <p><신설></p> <p><신설></p>	<p>○ 한번 신청한자에 대하여 폐원 예정연도에 다시신청서를 받지 않더라도 폐원시에는 반드시 라. 동장, 읍면장, 관계대장 등을 통하여 과수목 소유권의 변경여부를 현장확인 실시</p> <p>○ 신청서 등을 조사·확인하여 생산력(경쟁)이 떨어지는 과원 우선폐원을 원칙으로 사업 우선 순위를 시·군·자치구별로 결정</p> <p>- 우선순위 결정시 평가 기준 : 과수목수량, 과원경사도, 경영자연령, 품종, 포장조건 등 우선순위 평가항목과 배점 등은 (별표2)를 참고하여 지자체의 장이 자율 결정</p> <p>○ 품목별,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p> <p>- 연차별지원계획(별표 1)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품목별, 연차별 자체지원계획 수립(별도 농림부 보고)</p> <p>※ 매도사업은 지원계획 범위내에서 사업 추진 가능</p>	<p>○ 사업추진의 적정성 제고</p> <p>○ 문서지시사항을 사업지침에 반영</p> <p>○ 연차별지원에 따른 사업체계변경</p>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사업계획수립및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연차별 자체지원 계획에 따라 시장·군 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 사업 우선순위(폐원 예정 년도 포함) 명부를 작성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 우선 순위 확정 - 사업 예정년도 예고 ○ 사업 우선순위가 확정되면 신청자가 사업 예정년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8)의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에 의한 폐업지원금지대상자 결정서를 받기 전에 시설 및 과수목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함 - 농림부 당해 년도 예산(안)통지 범위내에서 당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시·군·자치구간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시·도간에는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농가의견반영

구 분	현 행(2003)	변경안(2004)	변경사유
29.사료사업지원 ①조사료생산 기반확충 1.지원항목	◦사료작물재배용 비료 대 지원(보조40%, 자담60%)	◦지원제외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가축분뇨 퇴액을 사용토록 지도	◦조사료 생산에 있어 화학비료사용을 지양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으로 친환경축산 추진
②사료사업지원 1.신청자격·절차·구비서류	◦지원대상 -일반업체, 농축협·영농조합법인, 양축농가	◦지원대상 -일반업체, 농축협·영농조합법인, 양축농가 -배합사료제조업등록 업체, 사료제조업등록업체	◦사료공장 HACCP제도 도입 및 광우병예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배합사료 및 사료제조업등록업체를 지원대상에 추가
2.선정기준·우선순위·절차	①자부담 비율이 높은자 ② 사업장 부지를 확보한자 ③사료원료 확보계획 및 구·판매계획이 수립된자	①사료공장 HACCP 및 광우병 예방을 위해 사업계획이 수립된자 ②사업장 부지를 확보한자 ③사료원료 확보계획 및 구·판매계획이 수립된자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사료로 인한 질병 발생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우선순위 추가

구 분	현 행(2003)	변경안(2004)	변경사유
<p>30.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p> <p>1.사업대상</p>	<p>가. 사업개요</p> <p>(2)사업대상자</p> <p>(가) 단독시설</p> <p>◦ 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위치한 축산농가</p> <p>(신 설)</p> <p><중 략></p> <p>(다) 정착촌구조개선</p> <p>◦ 나환자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축산농가 및 한성협동회, 지방자치단체</p> <p><중 략></p> <p>(마) 축분비료유통센터</p> <p>◦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대한양돈협회 시·군지부</p>	<p>가. 사업개요</p> <p>(2)사업대상자</p> <p>(가) 단독시설</p> <p>◦ 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위치한 축산농가</p> <p>◦ 오분법상 신고 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액비저장조 및 퇴비사)</p> <p>(다) 정착촌구조개선</p> <p>◦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축산농가 및 한빛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p> <p><중 략></p> <p>(마) 축분비료유통센터</p> <p>◦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대한양돈협회 시·군지부, 농협작목반</p>	<p>◦ 오분법상 신고허가 규모 미만의 농가가 축산분뇨를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전에 고액분리와 저장을 통한 처리수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지원 필요</p> <p>◦ 명칭변경</p> <p>- 보건복지부허가 제131-22호('03.9.22)</p> <p>※ 동 지침 개정시 한성협동회의 명칭을 모두 한빛복지협회로 변경</p> <p>※ 나환자는 한센으로 용어순화</p> <p>◦ 액비 수요자인 농협작목반 스스로 양질의 축산분뇨를 수거하여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p> <p>- 수요자 위주의 민간유통기능 강화</p>

구 분	현 행(2003)	변경안(2004)	변경사유
2.사업내용	<p>(3)사업내용</p> <p>(가) 단독시설</p> <p>◦퇴비·액비화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젓소운동장의 축산폐수배수로.</p> <p>◦부대 기계·장비 : 소형·이동식 톱밥제조기.....축산폐수탈색장치</p> <p>(나) 공동시설</p> <p>◦축분 퇴비·액비화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공동액비화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p>	<p>(3)사업내용</p> <p>(가) 단독시설</p> <p>◦퇴비·액비화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젓소운동장의 축산폐수배수로, 액비화전처리시설</p> <p>◦부대 기계·장비 : 소형·이동식 톱밥제조기.....축산폐수탈색장치, 가축 음용수 정수장비</p> <p>(나) 공동시설</p> <p>◦축분 퇴비·액비화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공동액비화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액비화전처리시설</p>	<p>◦축산분뇨를 액비화함에 있어 미량광물질과 유기물 등으로 인하여 토양오염 및 악취 등이 유발될 수 있어</p> <p>◦축산과 경종농업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액비를 생산위한 전처리시설 지원근거 마련</p> <p>◦항생제 및 약품 등의 사용량을 줄여 가축 체내 축산분뇨의 발효촉진 및 축산분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 필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의 건의를 반영)</p>

구 분	현 행(2003)	변경안(2004)	변경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중 략></p> <p>◦일반폐사축등 유기성 폐기물처리시설 : 양돈·양계단지에 설치가능</p> <p>-악취과리발생 방지 등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설치하되 소각로 시설은 제외</p> <p>(바) 지원규모 및 조건</p> <p>1) 축종별 축사 m²당 위당 사업비 적용 기준</p> <p>◦단독시설, 공동시설, 정착촌.....축사 m²당 위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적용</p> <p>⑦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가 감 산출하여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일반폐사축등 유기성 폐기물처리시설 : 양돈·양계단지, <u>중돈·중계장 및 나정 착촌</u>에 설치가능</p> <p>-<u>악취·기축방역 및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설치</u></p> <p>(바) 지원규모 및 조건</p> <p>1) 축종별 축사 m²당 위당 사업비 적용기준</p> <p>◦단독시설, 공동시설, 정착촌.....축사 m²당 위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적용</p> <p>⑦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가 감 산출하여 적용</p> <p>⑧<u>액비저장조에 투입할 축산분뇨의 전처리시설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m²당 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초과시 축사 m² 당 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u></p>	<p>◦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30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득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과 시행규칙 별표8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를 경우 소각시설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p> <p>◦축산분뇨 액비의 품질 강화를 위해 전처리시설 지원이 필요하며, 농가별 축사m²당 사업비 한도를 적용할 경우 농가별 한도로 인해 동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액비저장조에 투입할 축산분뇨의 전처리시설은 1회에 한해 추가지원 (축산분뇨관리·이용대책추진기획단 대책안 반영)</p>

구 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p>(신 설)</p> <p>2)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p> <p>⑥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의 공동시설과 유기성폐사축 등 유기성폐기물처리시설 지원은 공동시설의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p> <p>3) 부대 기계·장비의 개소당 한도액</p>	<p>⑨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 대상자가 기존 집단 사육지역의 축사를 이전하여 친환경 축사를 신축할 경우 지원한도는 신규사업대상자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음</p> <p>2)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p> <p>⑥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 유역 수계의 수변구역 지정 관련 지역의 공동시설과 유기성폐사축 등 유기성폐기물처리시설 지원은 공동시설의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p> <p>◦축산분뇨 퇴비처리 장비 : 10백만원이내(단, 스키드로다 및 고액분리기는 20백만원 이내)</p>	<p>◦'05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축사를 이전할 경우 밀집지역의 환경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신규설치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규사업대상자 자격으로 지원 (축산분뇨관리·이용 대책추진기획단 대책안 반영)</p> <p>◦수변구역지정 등 수질 오염방지를 위해 해당 자치단체장 또는 환경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을 때 농림부장관은 동 지침의 사업비 한도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p> <p>◦액비의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액비의 악취저감 및 미량광물질 분리를 통한 전처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p> <p>◦분리능력을 강화한 원심분리방식 등의 고성능 고액분리기가 시판(20백만원 이상) 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소당 지원한도 상향조정</p>

구 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3.지원조건	<p>4) 지원조건</p> <p>◦지원비율</p> <p>-단독·공동시설(톱밥제조시설) : 보조30%, 용자70</p> <p>-정착촌구조개선 : 보조70%, 용자30%</p> <p>나. 추진체계</p> <p>(11) 기타사항</p> <p>◦시도는 가급적 오분법에 의거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자원화(퇴비·액비)시설의 설치 권장.....</p> <p>(신 설)</p> <p><중 략></p> <p>-액비화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고시 제1999-110호('99.7.8)에 의거 액비를 살포할 농경지등을 확보(자가 또는 임차농지 포함)한 농가에 한하여 지원</p>	<p>4) 지원조건</p> <p>◦지원비율</p> <p>-단독·공동시설(톱밥제조시설) : 보조30%, 지방비 20%, 용자 50%</p> <p>-정착촌구조개선 : 보조70%, 지방비30%</p> <p>나. 추진체계</p> <p>(11) 기타사항</p> <p>◦시도는 가급적 오분법에 의거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자원화(퇴비·액비)시설의 설치 권장.....</p> <p>◦액비화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액비화전처리시설 및 고액분리기 우선지원</p> <p><중 략></p> <p>-액비화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고시 제1999-110호('99.7.8)에 의거 액비를 살포할 농경지등을 확보(자가 또는 임차농지 포함)한 농가에 한하여 지원</p>	<p>◦그동안 용자실적이 저조하고, 지역사업 성격도 있으므로 지자체가 일부 부담(기획예산처와 협의)</p> <p>◦실제 운용상 용자의 대부분이 지방비로 대체되고 있어 현실화(기획예산처와 협의)</p> <p>◦가축분뇨 액비의 품질강화와 악취방지등을 위한 전처리시설 우선지원</p>

구 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신 설)	-액비저장조 지원대상자에게 악취예방 및 토양환경보전을 위해 환경개선제(발효촉진제 등) 사용 및 시비처방서 발급 각서 징구	◦악취방지법의 제정·시행에 따른 액비저장조의 악취관리 강화 및 액비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액비살포시 토양보존과 작물의 피해 방지
	(신 설)	-슬러리 분뇨는 사전 전(前)처리후 액비저장조에 투입하여 액비의 품질안전성 확보와 악취저감 유도	◦상동
31.가축계열화 2. 신청자격	(추 가)	브랜드 육성사업의 경영자금 지원업체는 제외	이중지원 방지
	(추 가)	영농조합법인, 유통업체 *생산시설 없는 유통업체는 2년이상 자체계열화 실적있어야 함	사업대상 확대
4. 기 타	사업장 건설대상 토지가 확보된 자	(삭 제)	사업진입 기회확대
- 사업계획심사	농협중앙회장이 사전에 심사	농림부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시 직접 심사	사업계획의 정책적합성 평가
- 보 고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반기별 점검	간소화
	자금상환중인 업체만 운영실태 보고	모든 계열화업체에 대해 운영실태 보고 (별표 4서식 변경)	보고서식 명확화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②경주마육성 2. 신청자격·절차·구비서류 2.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의 신청자격 -구성원의 2/3이상이 해당 축종 사육경력 3년 이상 -과잉마입식지원 지원대상 ·양축농가 ·영농조합법인 ·승마장경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빈마 지원 도입단가 -12,000천원/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영농조합법인은 경주마 사육 운영 실적이 1년 이상</u> - ----- ----- ·<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30,000천원/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생산자협회 등은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영농조합에 대해서만 개별농가와 형평성을 감안 최소한의 제한 설정 ◦과잉마 입식지원은 과잉 생산된 말의 처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없는 지원 대상 제한을 없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산마의 질적개량 촉진을 위해 농가도입 현실적 수준으로 종빈마 기준 단가를 상향 조정
32.한우산업지원 ①송아지생산안정사업 1. 지원계획 2. 계약신청 및 사업참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 : 553천두('04 실적) ◦총사업비 : 15,460백만원(보조 12,4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기간 : '04.12.1 ~ '04.5.31 ◦사업참여기간 : '04.1.1 ~ '04.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 : 420천두 ◦총사업비 : 16,709백만원(보조 15,7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기간 : '04.12.1 ~ '05.5.31 ◦사업참여기간 : '05.1.1 ~ '0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05년 예산액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년도 변경

구 분	현 행(2004)	변 경(2005)	변경사유
3. 사업관리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축협 : 계약암소 두 당 최고 10천원 농협중앙회 계약암소 두당 최고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축협 : 계약암소 두당 최고 8천원 농협중앙회 : 계약암소 두당 최고 4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수수료 감축 '05년 예산액 반영
4. 사후관리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지사는 농가계약이 끝난 후 2개월내에 계약 암소의 적정여부 등 지역 축협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관리 강화
②송아지생산 기지조성사업			
1. 지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 : 24개소 사업비 : 총 7,8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 : 12개소 사업비 : 3,9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05년 예산액 반영
2. 2006년도 사업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년까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사육두수 증가로 사업 종료
③품질고급화 장려금			
1. 지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 : 17천두 사업비 : 4,09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 : 60.5천두 사업비 : 8,47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량 증가
2. 지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하하는 거세우 중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 통 출하하여 A1⁺, B1⁺, A1, B1 등급판정을 받은 생산자 (단, 수입하여 사육한 소 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하하는 거세우 중 생산자단체를 통해 생산자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출하하여 1⁺⁺A, 1⁺⁺B, 1⁺A, 1⁺B, 1A, 1B 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 (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 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 인과 상법상 법인, 농협중앙회, 수입하여 사육한 소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급기준 개정에 따라 고급육 기준 변경하고계 통출하에 따른 지급대상 범위축소를 방지 제외대상을 구체화

구 분	현 행(2004)	변 경(2005)	변경사유
3. 출하방법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통출하	<삭 제>	◦출하방법을 별도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출하자 편의도모
4. 지급금액	한우 : A1 ⁺ , B1 ⁺ 200천원 : A1, B1 100 육우 : A1 ⁺ ~ B1 100	한우 : 1 ⁺⁺ A, 1 ⁺⁺ B 200천원 : 1A, 1B 100 육우 : 1 ⁺⁺ A ~ 1B 100	◦한우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단가 인하('05년 예산액 반영)
5. 사업시행	◦사군 협조단체 지정현황 축산물등급판정소에 통보 ◦출하축의 거세여부와 생산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협조단체 지정현황 및 사업참여 농축협 명단 통보 ◦출하축의 생산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사업참여 농축협은 사·군에 사업참여 계획서 제출 ◦생산자 확인증명서 발급 관리대장 작성 ◦농축협은 조합 비회원에게 대해서도 생산자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협조단체로 지정된 생산자 단체는 참여농가에 대해서만 발급 ◦유통업체가 출하하는 경우 등급판정사는 생산자확인 증명서와 등급판정 신청서의 생산자 일치유무 확인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생산자 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모든 생산자단체의 명단 필요 ◦거세확인 유무는 등급판정시 확인 ◦농축협도 사업 참여 의사 표명 -임의적인 생산자 확인증명서 발급방지 -생산자단체의 생산자확인증명서 발급범위 구체화 -유통업체를 통해 출하 시 생산확인 강화
5. 서식	(신 설) (신 설) (신 설)	<서식 2> <서식 4> <서식 9>	-생산자확인증명서 발급대장 -지역농협이 지역축협에 신청하는 고급화장려금 자금 신청서 -농축협 사업참여 의향서

구 분	현 행(2004)	변 경 안(2005)	변 경 사 유
<p>33. 가축개량사업 가. 한우개량 <사업개요> (가)사업내용</p> <p>(다)사업시행 1)사업추진계획 가)한우개량 농가육성</p>	<p>◦ 지원대상 - 12개월령이상된 가임 혈통고등등록우를 2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로서 관리조합이 한우개량농가로 지정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받은 자</p> <p>① 관리조합은 한우개량농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서식 3>에 의한 신청을 받아 한우개량농가육성에 관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군별 한우산업발전협의회(구, 한우사업추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후 가축개량사업소에 사업참여 신청('04.1월말까지) 단,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산업 발전협의회에서 기존 관리조합과 협의를 거쳐 시행</p>	<p>◦ 지원대상 - 12개월령이상된 가임 혈통고등등록우를 3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로서 관리조합이 한우개량농가로 지정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받은 자</p> <p>① 관리조합은 한우개량농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서식 1>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한우개량농가육성에 관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군별 한우산업발전협의회(구, 한우사업추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후 '05.1.20까지 가축개량사업소에 사업참여 신청 단,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에서 기존 관리조합과 협의를 거쳐 시행</p> <p>◦가축개량사업소는 관리조합의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연간 사업계획 물량과 사업비 한도 범위내에서 관리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계획을 농림부와 협의를 거친 후 관리조합에 '05.2.10까지 통보 -가축개량사업소는 관리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시에는 전년도 사업실적(관리두수, 인공수정두수, 송아지생산두수, 검정참여두수, 지도점검 및 관리실태일제조사 결과 등) 및 한우사육 농가수·두수 비율 등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한도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p>	<p>◦규모화를 통한 개량농가(모집단) 정예화 유도 ※ ('04) 2두이상 → ('05) 3두이상</p> <p>◦한우개량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절차 및 사업계획물량 및 사업비 배정 계획수립 절차 보완</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추진체계> (다)사업시행 가) 한우개량농가육성 ⑪개량농가관리</p> <p>나) 한우능력검정및장액생산공급 ⑨ 한우현장후대검정시험실시</p>	<p>◦시·군은 연 1회이상 관리조합의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계획대 추진실적 및 관리현황을 지도 점검하고, 개량농가 실태를 조사 평가하여 당해연도 및 익년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에 반영(가축개량사업소는 조사요령을 작성 시달)</p> <p>◦검정기관 : 가축개량사업소 ◦검정두수 : ----- ◦검정농가 선정 : ----- ◦후보종모우 자손(♂) 생산 확인 : ----- ◦조사항목 : ----- ◦검정방법 : ----- ◦현장후대검정 참여 사례비 지급 -지원대상 : ----- -지급방법 : ----- -지급액 : ----- ※가축개량사업소는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현장후대검정 참여 사례비 지급에 관한 세부절차를 수립하여 관련 조합 등에 시달</p>	<p>◦시·군은 연 1회이상 관리조합의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계획대 추진실적 및 관리현황을 지도 점검하고, 개량농가 실태를 조사 평가하여 당해연도 및 익년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에 반영(가축개량사업소는 조사요령을 작성 시달)</p> <p>-시·군은 관리조합에 대하여 관리대상 등록우 및 생산 송아지두수와 연계하여 조합관리비 및 농가 조사사례비 지급내역을 반기별로 확인점검 실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조합관리비 및 조사사례비 지급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p> <p>◦현장후대검정시험실시 계획변경</p>
<p>2)기타사항('06년 지원대상 예고)</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06년 지원대상 예고 : 12개월령 이상 된 가임 혈통·고등등록우를 5두이상 사육하는 농가</p>	<p>◦지원대상 사전 예고 ※ ('05) 3두이상 → ('06) 5두이상</p>

구 분	현 행 (2003)	변경안 (2004)	변경사유
<p>나. 젓소개량 (3)사업추진요령 <사업개요> (가)사업내용 2)사업별 지원 대상 및 재원</p> <p>⑤사업비 지원 방법</p>	<p>◦젓소산유능력검정 : 검정 참여농가에 검정비용의 일부 보조지원</p> <p>◦지원방법 : 검정소가 검정 결과를 전산입력한후 검정 자료로 처리된 두수를 기준 으로 1비유기 두당 18,600원을 월별(매월 1,550원) 분할 지급 -검정에 참여한 등록우에 대해 지원하되,----- ----- -----</p>	<p>◦젓소산유능력검정 : 검정참 여농가에 검정비용의 일부 보 조지원</p> <p>◦지원방법 : 검정소가 검정결 과를 전산입력한후 검정자료 로 처리된 두수를 기준으로 1 비유기 두당 18,600원을 월별(매 월 1,550원) 분할 지급 -검정에 참여한 등록우에 대 해 지원하되,----- ----- -----</p> <p><u>·다만, 가축개량사업소 또는 검 정조합으로부터 2005년도 젓 소산유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 계획(농협중앙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우 사육자 또 는 사업내역의 변경 승인을 득했 거나 가축전염성 질병 또는 일 정횟수 이상 산차후 도태로 사업중단 승인을 득한경우를 제외한 다른 사유로 비유기중 2 회이상 검정 중지우에 대하여는 그 비유기중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 등 시정조치</u></p>	<p>◦산유검정 보조금 집행 및 지원 절차 보완</p>
<p>라. 닭개량 (3)사업추진요령 <사업개요> (가)사업내용 2)지원내용 및 보조재원</p>	<p>◦검정소 검정시설 및 장비와 검정사료비 등 지원</p>	<p>◦검정소 검정시설·장비와 검 정사료비 및 질병검사비 지원</p>	<p>◦ 질병검사 강화</p>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34. 축산물유통 개선사업 ① 도 축·가 공 시설 지원 ◦사업대상자 [축 산 물 가 공 업체] ◦사업대상자 [유 제 품 개 발·생 산 시 설] ◦지원조건 [시 유 전 문 가 공 시 설]	◦HACCP 도축장 ◦돼지·닭고기 가공업체 ◦연리5%(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5%(3년거치 7년 균분상환)	◦HACCP 도축장 ◦사슴 등 기타가축을 도축하고자 하는 도축장 ◦축산물 가공업체 ◦연리3%(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3%(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사슴 등 기타가축 도축시설 확충 필요 ◦가공 축산물 부가가치 제고 등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 ◦융자금리 인하로 사업활성화 도모 ◦융자금리 인하로 사업활성화 도모
② 축산물도축 가공 시설 운영자금 [도축장] ◦사업명 ◦지원금리 ◦지원단가	◦LPC, 도매시장·공판장, 도축장(3개 사업) ◦연리4~5.5% (1년거치 일시상환)	◦도축장 운영자금(1개 사업) ◦0%, 3% (1년거치 일시상환)	◦도축장 위생수준 제고 등을 위해 유사사업 통합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차등지원 (상위권 33%는 0% 금리, 중위권 33%는 3% 금리지원) ◦연간 도축장 경영비용 감안
	◦LPC : 30~50억원이내 ◦도매시장·공판장 : 4일분 상장거래 금액이내 ◦도축장 : 개소당 8억원이내	◦LPC : 30~50억원이내 ◦일반 도축장(도매시장·공판장 포함) : 도축실적에 따라 4~12억원이내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p>[축산물가공업체]</p> <p>·사업대상자</p> <p>[유업체경영안정자금]</p> <p>③축산물판매시설현대화 [닭고기체인점설치]</p> <p>·사업대상자</p>	<p>·돼지고기가공업체</p> <p>(신규)</p>	<p>·축산물가공업체</p> <p>·지원대상 : 낙농진흥회 잉여물량을 이관하는 유 업체</p> <p>·지원용도 : 잉여원유 구입 에 필요한 운영자금</p> <p>·지원조건 : 연리3%, 2년 거치 3년일시상환</p>	<p>·지원대상 확대로 축 산물가공업체 경영안 정도모</p> <p>·원유 집유체계 개편 필요성 대두(낙농가·유 업체 직결체제 도입)</p>
<p>⑤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 원사업</p> <p>1.선정기준·우 선순위·절차</p>	<p>·농축협조합 지원한도 -자기자본의 300%이내</p> <p>(신설)</p>	<p>- 자기자본의 700%이내</p> <p>·출하선급금 및 사료결제대 금 등 농가에 직접 활용하 는 경우 우선지원 - 가점부여</p>	<p>·브랜드사업지원확대</p> <p>·농가실익증대 유도</p>
<p>2.기타</p>	<p>·가축경영비 -조건신설</p> <p>(신설)</p>	<p>·가축경영비 -사료가 통일되어 있거나 연 내 사료통일을 계획하고 있는 경영체에 지원</p> <p>·사업준비단계에 있는 경 영체 -가축경영비, 브랜드개발 비 등을 지원</p>	<p>·브랜드사업의 기초 구축</p> <p>·자금의 효율적 운영 유도</p>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체와 농가와의 출하선급금 약정기간 - 3년이내 자율결정 ◦매취자금사업인정기준 - 누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계열화사업(가축경영비), 축산물가공시설운영(원료육구매자금) 지원경영체는 해당자금 지원제외 -1년이내 자율결정 ◦매취자금사업인정기준 - 누계액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사업자금의 중복 지원방지 ◦한우입식자금 전환운용 방지 ◦자금회전을 감안
⑦축산물브랜드 컨설팅사업 1.목적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재무, 마케팅 등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체의 시장지향성 강화경쟁력 제고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화·전문화된 브랜드경영체를 중점 육성지원 우수축산물을 유도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 도모
2.사업주관기관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관기관 : 시·도 	
3.사업내용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 브랜드사업(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선정 경영체 -브랜드경진대회 수상경영체 및 우수브랜드인증 경영체에 우선 지원 ◦사업비:1,000백만원(기금500, 지방비200, 자부담300) ◦사업량 : 10개소 	
4.사업추진절차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대상경영체 선정 -사업신청→시·도 우선순위결정 보고→ 농림부는 심의위원회 의결→ 대상자 선정 통보 ◦브랜드컨설팅업체 지정 -컨설팅업체지정신청→ 농림부심의위원회 의결→ 컨설팅업체 지정 통보 	

구 분	현 행(2004)	변 경(2005)	변경사유
<p>35.축산물안전성 검사및경영안정 ①가축질병근절 대책</p> <p>1.사업량 및 단 가변경</p> <p>2.사업변경</p>	<p>·오제스키병 예방-740천건 ·광견병 예방-1,400천건 ·뉴캐슬병 예방(부화장)- 600,000천건 ·뉴캐슬병 예방(농가)- 600,000천건 ·마이코플라즈마-3,500천건 ·부루세라(MRT)-94천건 ·부루세라(RB)-80천건 ·추백리(평판)-139천건</p> <p>·긴급방역 기동차량 9대 ·반입가축 검사계류장 1개소 ·광우병 검사시설-9기</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오제스키병 예방-314천건 ·광견병 예방-1,420천건 ·뉴캐슬병 예방(부화장)- 650,000 천건 ·뉴캐슬병 예방(농가)- 650,000천건 ·마이코플라즈마-3,525천건 ·부루세라(MRT)-100천건 ·부루세라(RB)-350천건 ·추백리(평판)-85.6천건 추백리(ELISA)-17.4천건</p> <p>※ 약품비 단가는 '04년기준 3%수준 인상하여 추정한 가격임.</p> <p>< 사업중단 > < 사업중단 ></p> <p>·광우병 검사시설-5기</p> <p>◦ 소부루세라 채혈비 -사업량 : 260천두 -지원단가 : 3,000원(국비 1,800원, 지 방비 1,200원)</p> <p>◦ 광우병 진단키트 구입 : 30 천두 -광우병 발생시 전두수검 사를 위하여 일정분 비축 (검역원)</p> <p>◦ 현장예찰용 PDA : 50대</p>	<p>각 사도 의견 검토 반영</p> <p>예산 미반영</p> <p>광우병 예방 및 소부루세 라 등 검진 강화</p>

구 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②축산물검사			
1.축산물검사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액 : 3,135백만원 -검사장비:2,000백만원 -재료비:838 -원유검사보조원:137 -장비유지보수비:1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액 : 3,189백만원 -검사장비:2,000백만원 -재료비:863 -원유검사보조원:164 -장비유지보수비: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 54백만원 ※ 원유검사보조원 단가 '03.9시중 노 임단가(보통 인부) 적용 (‘04) 24,000원/일 → (‘05) 28,855원
2.검사장비 구입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입 : 47종 9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입 : 42종 7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니트로푸란제 검사를 위한 장비 구입(충남, 전남,경남)으로 전체 적인 검사장비 구입물 량은 작년보다 감소
3.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 : 2,022백만원 -보조원수:100명 -월 2,106,434원/인 -지원기준 : 기금 80%, 지방비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축검사 강화 차원으 로 전국의 포유류도축 장에 검사보조원 각 1명 수준 배치
4. SRM 제거시설 및 장비 지원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 : 14억원 -대상 : 도축장 2개소 -지원기준 : 기금 70%, 지 방비 20%, 자부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우병 예방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축장 2개 소를 선정, 사업추진
④가축공제			
1.신청자각절차 구비서류 등	-	-	-
2.선정기준우선순 위.절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중앙회장이 전문기 관 등에 의뢰하여 공제요 율 설정 납입공제료: 송아지는 축 발기금 50%, 가입자부담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중앙회장이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공제요율을 설정하여 농림부에 보고 하고 농림부장관은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납입공제료 : 축발기금 50%, 가입자부담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축공제요율 산정의 적정성을 농림부 에서 검토승인토록 변경 송아지도 다른 축종과 동일하게 지원비율 조정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36. 학교우유급식사업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지원대상자 -지원조건 -지원단가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라. 사업비 집행방법 마. 사업비 정산	◦초등학생 210천명 ◦국비 100% ◦235원/200ml ◦시·도 ◦농협중앙회(축발기금 사무국)에서 유업체에 보조금 지급 ◦농협중앙회(축발기금 사무국)에서 정산 보고	◦279천명(초등학생 210, 중학생 69) ◦국비 75%, 지방비 25% ◦245원/200ml('05.1.1일부터 270원으로 인상)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농협중앙회에서 시·도에 보조금을 교부후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서 유업체에 보조금 지급 ◦시·도에서 정산 보고(국비·지방비 구분)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 종합대책」에 의하여 사업비 및 사업량 확대 ·보조금식 집행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시·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방비(시·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원할히 확보하고 시·도 책임하에 사업 추진 ·농협중앙회에서 시·도로 보조금 교부 후 시·도에서 유업체로 집행토록 추진체계 변경

구 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37. 축산업등록 제지원사업			
1. 신청자격·절 차구비서류 등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등록 추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등록을 위해 전산보조인력을 고용한 시·군에 전산보조인력 정액보조지원(축발기금 50%, 지방비 50%) - 축산업등록추진 생산자단체에 농가교육홍보비 정액보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등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 및 생산자단체 지원(추가)
2. 선정기준·우 선순위·절차 등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등록 추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전산보조인력 인건비 및 생산자단체에 대해 축산업등록 관련 교육홍보비 지원 	"
3. 기타(사업비 지원, 사후관리 등)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등록 추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장관이 시·도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소요자금 신청받아 정액보조 지원 - 시·도지사는 보조금이 사업목적 등과 다르게 부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 등 	"

구 분	현 행 (2004)	변경안 (2005)	변경사유
<p>38. 친환경농업육성 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1. 사업분류 2. 신청자격·절차·구비서류 3. 선정기준·우선순위·절차</p> <p>4. 기타로 분류하여 각각의 해당사항을 기재</p> <p>② 천적활용원예작물해충방제사업</p>	<p>36. 친환경농업육성 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②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p> <p>사업대상지구(계획서) 평가기준 - 친환경농산물인증 참여정도 (10점)</p> <p>신설</p>	<p>38. 친환경농업육성 삭제</p> <p>변경없음</p> <p>◦(신설) 각 시도에서 표준사업비를 산출하여 동일한 시설과 장비에는 표준사업비 단가를 적용하도록 기준 마련</p> <p>◦(신설) 자재생산시설, 생산유통시설 등 각 사업메뉴별로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총사업비의 1/2 이내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정되었던 사업비 집행방식을 사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우선순위 설정</p> <p>사업대상지구(계획서) 평가기준 - 참여농가의 친환경농산물인증(저농약 ~ 유기)면적 (40점)</p>	<p>◦시범마을사업은 '04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사업명칭 변경</p> <p>◦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표준사업비를 적용기준과 투자우선순위 마련</p> <p>◦사업평가 기준 보완</p>

구 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p>39.농업종합 자금지원</p> <p>2. 시책 및 추진방향 ○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지원</p> <p>3. 근거법령</p> <p>4. 2005년도 지원계획</p> <p>5.사업시행요령 가.사업내용 1)지원대상자</p>	<p>○ 시설·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농기계구입 자금(2,000만원 이상), 후계농업인육성, 객토 자금을 일괄 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지원</p> <p>- 다만, 농기계생산지원 자금 및 농촌가공산업 육성자금의 경우, 당 연도 예산중에서 각각 100억 및 30억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p> <p>(신설)</p> <p>○ 2004 사업비 (계) 778,900백만원 -국고용자 115,800 -대출기관용자 663,100</p> <p>○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중략)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신규포함) 또는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객토희망농가, 선진작 목반(공동이용시설에 한함),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기타 농산물가공 공장사업자 및 농기계 생산업자</p>	<p>○ 시설·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10백만원 이상)을 일괄 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지원</p> <p>- 다만, 농기계생산지원 자금 및 농촌가공산업 육성자금의 경우, 당 연도 예산중에서 각각 200억 및 30억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p> <p>○ 종자산업법 제165조</p> <p>○ 2005 사업비 (계) 851,100백만원 -국고용자 170,220 -대출기관용자 680,880</p> <p>○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중략)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신규포함), 객토희망농가,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기타 농산물가공공장 사업자 및 농기계생산업자,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한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p>	<p>○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자사업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종합자금으로 지원한다는 기본 취지에 따라 농기계자금을 일괄 지원대상에 포함</p> <p>○ 다만, 농업인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후방연관 산업의 경우 일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만 대출</p> <p>○ 법적근거 명시</p> <p>○ '05년 예산 반영</p> <p>○ '05년 종합자금으로 추가편입된 사업</p>

구 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p>5. 사업시행 요령 가.사업내용 1)지원대상자 (계속)</p>	<p>※'04년도 후계농업인으 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04년도 한)</p> <p>- '04년도 후계농업인도 대출기관의 대출심사 를 거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p> <p>- 지원규모는 시장·군 수가 요청한 범위내에 서, 상환조건은 기존 후계농업인 사업(신규) 의 5년거치 10년상환 으로 지원하되, 그외 사항은 종합자금의 규 정에 따라 지원</p> <p>※농기계생산지원자금의 배정기준(업체규모별, 농기계종류별)은 농기 계협동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RPC·도정공장 제 외), 농업정책자금(지 방자치단체사업 포함) 을 지원받은 유통가공 저장시설 보유사업자, 경주마사육 축산농가 는 개보수 및 운영자 금, 농기계자금에 한하 여 지원</p>	<p>※'05년도 후계농업인으 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p> <p>-'05년도 후계농업인은 대출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p> <p>-지원규모 등은 시장· 군수가 요청한 범위내 에서 종합자금 규정에 따라 지원</p> <p>※농기계생산지원자금의 배정기준(업체규모별, 농기계종류별)은 농림 부 사업담당부서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 른다.</p> <p>- 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RPC·도정공장 제 외), 농업정책자금(지 방자치단체사업 포함) 을 지원받은 유통저장 시설보유사업자, 경주 마사육 축산농가는 개보수 및 운영 자금, 농기계자금에 한하여 지원</p>	<p>○'04년 후계농업인에 대한 특례 폐 지</p> <p>○사업담당부서에서 자금 배정 기준에 의거 자금 집행</p> <p>○문구 명확화</p>

구 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5.사업시행요령 가.사업내용 1)지원대상자 (계속)	- 농산물가공산업은 농 가공동의 생산자 단체, 주류제조면허 추천업 체, 명인 또는 신지식 인 지정업체, 일반업체 지원	- 농촌가공산업은 농업 인, 생산자단체(농업 법인, 협동조합), 농림 부장관이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추천업체, 농 림부가 승인한 전통 식품명인 또는 신지식 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 법인, 농촌특산단지 육 성사업자로 선정된 경 영체에 지원	○ 농촌가공산업 지 원대상 명확화
* 지원제외	- 회계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법인·유통가공 업자(관광농원 포함)·금 융기관 총부채(금차대 출신청액 포함)가 3억 원이상인 개인 - 종합자금 대출잔액(금 차지원액 포함)이 5천 만원이상으로 회계교 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영체 다만, 회계장부 를 기록하고 있는 농 가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제 출하지 않은 법인·유통 가공저장업자·관광 농원사업자·금융기관 총부채(금차지원액 포함)가 5억원이상인 개인 - 종합자금 대출잔액 (금차지원액 포함)이 5천만원 이상으로 경 영장부(영농일지, 현금 출납장, 재무제표 등)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영체(단, 신규제외)	○ 농업인의 재무 제 표 제출대상 완화 ○ 회계 교육기관 부 재로 회계교육 이 수 의무화 폐지 대 신 사전 경영장부 제출 의무화
2)지원조건 ○ 지원자금의 종류	- 시설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농촌가공산업육성, 시 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 시설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농촌가공산업육성, 시 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 업	○ 자금종류별 지원 분야를 구분·명 확화

구 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2)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종류(계속)	- 개보수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농촌가공산업육성, 객도자금	- 개보수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 분야, 농촌가공산업 육성, 객도자금,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자금종류별 지원분야를 구분·명확화
○지원조건	- 운영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농기계생산지원(생산원자재구입자금 지원 등), 농촌가공산업육성(포장개선 및 홍보지원사업) * 3년 거치 10년균분상환(원예특작,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농촌가공공장 신규시설사업)	- 운영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농촌가공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 3년 거치 10년균분상환(원예특작,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농촌가공 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지원조건을 종합자금지원체제로 일원화
○자금용도	- 시설자금 : 생산·재배시설, 저장·유통·가공시설 및 증축자금, 관광농원·농촌민박시설자금, 토지매입자금, 사업비 20백만원 이상의 에너지절감시설, 온실기능향상시설, 첨단농업기자재의 국산화에 필요한 시설지원 등	- 시설자금 : 생산·재배시설, 저장·유통·가공시설 및 증축자금, 관광농원·농촌민박시설, 토지매입, 사업비 20백만원 이상의 에너지절감시설, 온실기능향상시설, 첨단농업기자재의 국산화에 필요한 시설,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시설지원 등	○'05년 종합자금으로 추가편입된 사업반영
- 시설자금	* 토지매입자금의 용도 제한 · 관광농원, 농촌민박사업 및 자가배합사료제조를 위한 경우 지원 제외	* 토지매입자금의 용도 제한 · 관광농원사업, 농촌민박사업,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토지매입자금 제한사항 명확화

구 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자금용도 - 운영자금	* 토지임차자금은 사업 계획에 따라 중·장기, 단기자금으로 지원가능 (신 설)	* 토지임차자금은 임대 차기간의 장·단에 불구 하고 운영자금으로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 래시 소요자금 범위내 에서 재사용 가능(인삼 식재자금은 제외)	○지원기간 현실화 로 사후관리 강화 ○운영자금 재사용 근거 명시
- 농기계자금	- 농기계자금 : 대당 공급가격 20백만원 이상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기계자금 : 대당 공급가격 10백만원 이상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구입에 필요한 자금	○'05년 종합자금 으로 추가편입된 사업반영
○지원한도	○지원한도 :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백만원 이상 (신설)	○지원한도 :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백만원이상 - 시설·개보수자금은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지원 가능	○자부담 신설로 농업인의 책임경영 유도
다.자금지원결정 1)사업신청	(신설)	* 관광농원·농촌가공사업(추가시설 설치 포함)의 시설자금 신청자는 행정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업계획승인서를 취급사무소에 제출	○행정기관의 사업 계획승인사항 명시

구 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3)심사방법 <신용평점 평가시 우대 혹은 가점 부여 고려사항 >	(신설)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및 공동마케팅 조직에 참여한 회원농가 - 원예전문생산(수출)단지 중 최우수·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 - 농업인안전공제 또는 농기계종합공제 가입 농가 - 우량품종경진대회 수상경력 농가 - 우량종자개발사업자 (업체별 전문작물 및 채소, 화훼류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 취급대상 사업자) <삭제>	○안정적 판매처 확보 농가 우대 ○국산 농산물의 수출확대기여 경영체 우대 ○공제가입농가 우대 ○경쟁력을 갖춘 우량종자개발사업자 우대
바.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	○농업종합자금 1억이상 지원경영체가 매년 1회 농업경영 회계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		○대출취급기관의 매년 경영실태조사로 전환
사.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종합자금 1억원이상 (금회 지원금 포함) 지원경영체는 매년 1회 농업경영 회계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1억원 이상 지원경영체는 농협중앙회에서 집중관리	○종합자금 1억원이상 (금회 지원금 포함) 지원경영체는 매년 1회 농업경영 회계기록 (영농일지, 현금출납장, 재무제표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추가지원 중단 ○농협중앙회에서 승인, 지원한 경영체는 본부에서 집중관리	○회계기록을 징구하여 경영실태조사 자료로 활용 ○승인대출은 본부에서 집중 사후관리

구 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사.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6.세부사업내용 <축산분야> 가.지원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취급기관은 농업 종합자금 5천만원이상 지원농가에 대해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한육우·낙농·양돈·양계·기타 축산법 제2조의 가축, 기타 행정기관 권장 축종(후계농업인 사업에 한함), 유기축산업 등의 기반조성, 사육시설 및 장비 등. 다만, 「개」의 경우는 「진도개」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취급기관은 농업 종합자금 1억원이상 지원농가에 대해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농가는 간이조사 실시 ○한육우·낙농·양돈·양계·기타 축산법 제2조의 가축, 유기축산업 등의 기반조성, 사육시설 및 장비 등. 다만, 「개」의 경우는 「진도개」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실태조사의실효성 확보 ○종합자금 사업대상으로 일원화
<농기계 분야> 가.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에 공급가격 20백만원 이상인 농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에 공급가격 10백만원 이상인 농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백만원이상 농기계5구입자금 신규 편입

구 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p>6.세부사업내 용 <농기계 분야> 가.지원대상 (계속)</p> <p>나.유의사항</p>	<p>- 공급가격 20백만원 이상인 농기계와 그 부속작업기, 선택품 등을 함께 구입할 때에는 일괄지원하되 기종별 용자 지원한도액, 상환 조건은 「농기계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 준용</p> <p>○ 20백만원 미만인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는 “농기계구입자금지원” 사업에서 지원</p> <p>○ 20백만원이상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 준용</p>	<p>- 공급가격 10백만원 이상인 농기계와 그 부속작업기, 선택품 등을 함께 구입할 때에는 일괄지원하되 기종별 용자 지원한도액, 상환 조건은 「농기계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 준용</p> <p>○ 10백만원 미만인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는 “농기계구입자금지원” 사업에서 지원</p> <p>○ 10백만원이상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 준용</p>	<p>○ 10백만원이상 농기계5구입자금 신규 편입</p> <p style="text-align: center;">"</p>
<p><농촌가공분야> 가.지원대상</p>	<p>(신설)</p>	<p>○ 농산물가공산업 : 국내산 농산물로서 원료조달이 용이하고, 경쟁력이 있는 품목, 대규모 판매처 등 판로확보가 용이한 품목, 주세법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품목</p> <p>○ 농촌특산단지육성사업 : 민속공예품, 농산자재, 섬유직물, 석재분야 -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한 품목으로 지역 대표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품목 선정</p>	<p>○ 농촌가공산업 분야 지원대상 명확화</p>

구 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6.세부사업내용 <농촌가공분야> 가.지원대상 나.유의사항	(신설)	○ 지원대상자 : 사업 경영체별(개인, 법인)로 자금지원 ○ 공업화에 의해 다른 일반공장 등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고 원료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농촌인력 활용도가 낮은 일반공산품, 식료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예시) : 비닐제품, 종이상자, PP포대, 어망, 차광막, 면장갑, 타월, 건축용 석재, 타일 등	○ 농촌가공산업 분야 지원대상 명확화 ○ 지원제외대상 명확화
6.세부사업내용 <고품질우량종자개발분야> 가.지원대상사업 나.유의 사항	(신설)	○ 육·채종시설,장비 : 종자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첨단 유전공학장비(고속원심분리기, 전기영동기 등), 종자품질관리장비(종자소독, 종자정선 및 가공기자재 등) ○ 신품종 육종:고품질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인건비,시험비 등) ○ 최근 1년간 종자분쟁으로 인하여 농업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업대상자는 지원 제외	○ '05년 종합자금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44. 후계농업경영인육성 ①창업농지원 ◦사업명 ◦자격요건 ◦1인당 지원규모 ◦분야별 지원대상 사업 ◦대상자 확정	◦후계농업인육성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u>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u>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35세미만인 자중 ...생략...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u>20~100백만원까지 차등지원</u>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에 대해서는...생략...지원금액 하향조정 (20백만원까지) 가능 ◦후계농업경영인이 원할 경우 농업경영컨설팅 자부담금중 60%(사업비의 30%)이내인 자 ◦시장·군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2001년 이전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 <신설>	◦후계농업경영인육성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u>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u>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35세미만인 자중 ...생략...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u>20~120백만원까지 차등지원</u> <삭제>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 단, 정부·지자체의 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시장·군수는 <u>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확정하여야함</u>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전년도 신청자를 사업대상자 및 취소에 따른 후순위자라도 우선 선발·확보하되, 사업운용 대상자가 부족시 당해연도 신청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대상으로 선발 할 수 있음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2003.12)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한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 수정 ◦현실적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규모 확대 ◦1인당 지원규모규정으로 대처가능 ◦경영컨설팅지원강화 반영 ◦산업기능요원 지원강화 ◦사업대상 폭을 확대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도모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p>◦용자실시</p>	<p>◦용자취급기관의 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과 『농특회계용자업무지침』에 의함</p> <p>◦사업자금의 용자는 후계농업경영인의 편의에 따라 1인의 연대보증에 의한 신용대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대출, (후취)담보대출로 분할 용자할 수 있음.</p> <p>◦시장·군수는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가 작성한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한 후 자금소요 성격으로 보아 사업추진전 일시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농지구입 등)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별지 제4호서식)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사업추진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p>	<p>◦용자취급기관의 용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특회계용자업무지침』과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함</p> <p><삭제></p> <p>◦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 중 후계농업경영인공통교육 이수자가 사업추진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별지 제4호서식)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사업추진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p>	<p>◦대출 관련 규정 추가 명기</p> <p>◦대출 관련 규정 추가 명기로 대치 가능</p> <p>◦조기 사업완료 유도 및 원활한 농신보 활용을 위함</p>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p>◦교육훈련</p> <p><교육기간></p> <p><교육기관></p> <p><교육대상자></p> <p><교육운영></p>	<p>◦시장·군수 등은 후계 농업인으로 선정된 자가 공통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p> <p>◦공통·1·2주, 현장실습 2주</p> <p>◦공통·현장실습 : 농림부장관이 지정</p> <p>◦농과·비농과계 졸업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삭제, 신설></p>	<p>◦시·도지사는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공통교육과 영농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p> <p>◦공통 : 1주 또는 30시간 이상 ◦경영기술 : 2주 또는 60시간 이상</p> <p>◦공통 : 농림부장관이 지정 ◦경영기술 : 시도지사가 지정</p> <p>◦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p> <p>◦경영기술교육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자체 실습시설을 활용하거나, 선도농장·농과계학교·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p> <p>·경영기술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적절히 안배하되, 실습교육 비율이 30%이상 60% 이하가 되도록 추진</p> <p>◦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계농업인은 경영기술 교육을 면제할 수 있음</p> <p>·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천안연암대학,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의 최근 3년 이내 졸업자 중 사업계획서상의 작목 전공자</p>	<p>◦원활한 교육훈련 운영을 위해 현장의견 반영해 교육체계 개편</p>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지원자금회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후 6년 이내에 자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후 6년 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	◦선의의 자금상환자 피해방지를 위함
◦후계농업인의 교체	◦시장·군수는 사업시행년도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신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년도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 이 경우, 최근 1년 이내 당초 사업계획보다 자금을 적게 지원받은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자금의 불용방지 및 후계농 사후지원 강화
◦신청절차	◦2004년 1월 20일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2005년 2월말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현실적 사업추진 상황 반영
◦특이사항	<신설>	◦시장·군수는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종전의 신규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 심사·추천 및 확인서 발급 등 인력육성사업에 적극 추진해야함	◦농업종합자금과 연계한 인력육성 추진

구 분	현 행(2003)	변경안(2004)	변경사유
45. 농업인자녀지원 ①영유아양육비지원 1. 사업분류 2. 신청자격·절차·구비서류 3. 지원기준·우선순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소유 1.5ha 미만 ◦보육실적통지서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부사본, 보육료수납영수증 사본 ◦지원신청일 : 12.10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세 : 127,500원 - 2세 : 105,500원 - 3~4세 : 65,500원 - 5세 : 13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소유 2.0ha 미만 ◦첨부서류중 출석부사본 삭제 ◦지원신청일 : 12.1 ◦지원금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세 : 149,600원 - 2세 : 123,400원 - 3~4세 : 76,600원 - 5세 : 153,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사업별로 작성 ◦예산편성기준 적용 ◦구비서류간소화 ◦업무량증가에 따른 행정지원 ◦예산편성기준 적용
45.①경영이양직접지불(공공) 4.연도별 지원 계획 5.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사업내용 (1)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4. 연도별 지원계획 ※2004년 이후 사업량 및 지급단가는 2004년기준 적용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연령 ◦신청연도 12월31일 현재 63세이상 69세이하인자(2004년도의 경우 1935년1월1일~1941년12월31일 출생자) *70~72세는 200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나) 영농경력 ◦선정신청일 이전 3년 이상 농업진흥지역안의 답을 소유하고 있을 것	4. 연도별 지원계획 ※2005년 ----- ----- 2005년----- 5. 2005년도 ----- (가) 연령 ----- 63세이상 72세이하인자(2005년도의 경우 1933년1월1일~1942년 12월31일 출생자) <현행과 같음> (나) 영농경력 <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년도 조정 ◦사업년도 조정 ◦사업시행연도변경에 따른 연령조정 ◦보조금지급대상답에서규정되므로 항목조정

구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다) 지급요건 <신설>	(다) 지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3.12.31 이전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한 자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경영이양을 하는 경우의 처리기준 -지급단가 : 필지별 매매 또는 임대차 당해계약연도의 임대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1회 지급 -대상자선정 : 공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부칙제2항에 따라 종전규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부칙제2항 개정(2004.1.29) 내용 반영 2004년 이전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기준 명시
(2)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답	(2)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답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답 <신설> <신설>	(2)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답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이양에 의한 경영이양자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공사 또는 쌀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재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답. 이 경우 영농경력은 최초 임대이양시를 기준으로 한다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 요건을 갖춘자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간척농지를 분양 받아 3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당해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후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 하는 경우 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명확한자구정리 ◦쌀전업농의 경영 규모확대촉진 및 유동화 등을 위해 임대만료 농지를 다시 임대하거나 매도할 때 보조금지급 ◦간척농지를 경영이양하는 농업인의 민원해소 및 쌀전업농의 경영규모확대촉진을 위해 대상농지 확대

구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3)경영이양보조금지급농지양수대상자	(3)경영이양보조금 지급농지 양수 대상자 ○농 경영규모 2ha이상인 55세 이하 농업인. 다만, 후계농업인이 있는 농업인은 후계농업인을 <u>쌀전업농으로 선정한 경우와 1회지원으로 경영규모가 2ha이상 확대되는 60세이하 농업인은 지원</u>	(3)경영이양보조금 지급농지 양수 대상자 ○----- ----- 다만, 경영규모가 1.5ha이상으로서 1회지원으로 <u>경영규모가 2.0ha이상으로 확대 되는 농업인은 60세까지 지원</u>	○ <u>쌀전업농 육성종합대책 추진계획과 일치</u>																
(4)경영이양보조금지급기준	○ 지급액 산정 *필지별 지급액 <u>합계의 1,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u>	○ 지급액 산정 *필지별 지급액의 <u>10원 미만</u> -----	○ <u>분할지급에 따른 필지별 관리필요</u>																
(5)경영이양보조금지급방법	(5) 경영이양보조금지급방법 * <u>70~72세는 보조금 1회지급</u>	(5) 경영이양보조금지급방법 *----- <u>농지매도 및 임대시 보조금을 1회지급</u>	○ <u>자구를 명확하게 정리</u>																
나.2004년도 사업비내용	나. 2004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ha,백만원)	나. 2005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ha,백만원)	○2005년 예산반영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량</th> <th>사업비합계</th> <th>보조금</th> <th>사업관리비</th> </tr> </thead> <tbody> <tr> <td>4,650</td> <td>14,100</td> <td>13,628</td> <td>472</td> </tr> </tbody> </table>	사업량	사업비합계	보조금	사업관리비	4,650	14,100	13,628	472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량</th> <th>사업비합계</th> <th>보조금</th> <th>사업관리비</th> </tr> </thead> <tbody> <tr> <td>8,278</td> <td>28,603</td> <td>27,654</td> <td>949</td> </tr> </tbody> </table>	사업량	사업비합계	보조금	사업관리비	8,278	28,603	27,654	949	
사업량	사업비합계	보조금	사업관리비																
4,650	14,100	13,628	472																
사업량	사업비합계	보조금	사업관리비																
8,278	28,603	27,654	949																
<사업추진체계> 나.사업담당부서	(2) 시·도 ○ <u>시·도 : 경기 농산유통과, 강원 농어업정책과, 충북 농산과, 충남 농정유통과, 전북·전남·경남 농업정책과, 경북·제주 농정과, 부산 농업행정과,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농정과</u>	(2) 시·도 ○ <u>시·도 : 농산과 등</u>	○ <u>시·도 업무담당부서 정리</u>																

구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5)농지관리위원의견 수렴 및 확인 (나)조사 방법	(5)농지관리위원회 의견수렴 및 확인 (나)조사방법 ◦현지조사후 조사내용에 대해 해당 답의 소재지 라동에 거주하는 <u>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u> 확인을 받아야 함 -해당 라동에 <u>농지관리위원</u> 이 없는 경우에는 <u>연접한 라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 농지가 2개 이상의 라동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라동의 농지관리위원이 확인</u>	(5)농지관리위원회 또는 이장 의견수렴 및 확인 (나)조사방법 ◦ -- <u>농지관리위원회 또는 이장으로부터</u> ----- - ----- <u>농지관리위원회 또는이장이</u> ----- ----- <u>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 농지관리원 또는 이장이</u> <u>확인</u>	◦현지조사 확인 대상자 확대에 의한 원활한 업무추진도모
마.지급약정 체결 및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2) 경영이양보조금지급 ◦지급기간 ※ 70~72세는 <u>보조금을 1회 지급</u>	2) 경영이양보조금지급 ◦지급기간 ※ ----- <u>농지매도 및 임대시 보조금을 1회지급</u>	◦자구를 명확하게 정리
<행정사항> 나.사후관리 (1)경영이양보조금 수혜자관리	(1)경영이양보조금 수혜자관리 ◦ 사후관리기간 <신설>	(1)경영이양보조금 수혜자관리 ◦ 사후관리기간 ※ <u>70~72세는 매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일로 부터 5년간</u>	◦70~72세는 보조금을 1회 지급하므로 63~69세 임대차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적용
6.2005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6. <u>2005년도</u>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6. <u>2006년도</u> -----	◦사업년도 조정
나.신청자격	◦ 연령 -신청연도 12월31일 현재 <u>63세이상 69세이하인자(2004년도의 경우 1935년1월1일~1941년 12월31일 출생자)</u> * 70~72세는 200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연령 - ----- <u>63세이상 72세이하인자(2005년도의 경우 1933년1월1일~1942년 12월31일 출생자)</u> <현행과 같음>	◦사업시행연도변경에 따른 연령조정

구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신청일 이전 3년이상 농업진흥지역안의 답을 소유하고 있을 것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지급대상답에서 규정되어 있음.
나.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세한 내용은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년도 조정
② 친환경 직불사업 1.인증서 확인 절차 생략 2. 보조금 신청서 양식 개선 3. 저농약 4.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접수 → <u>인증기관 확인</u> <u>요청</u> → <u>인증기관 확인내용</u> <u>통보</u> → 농림부 보고 → 인증기관 통보(이행여부 확인 요청) 및 농업인 통보 보조금 신청 양식(별지 1호서식)을 논, 밭 각각 1인당 2장의 신청서를 작성 저농약 제외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 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에서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확인요청. 확인내용 통보하는 2단계의 절차를 폐지 -신청접수 → 농림부 보고 → 인증기관(이행여부 확인 요청) 및 농업인 통보 보조금 신청서 양식(별지1호서식) 1장에 논, 밭 모두 작성토록 양식 개선 저농약 신규 인증자 인정 좌동 ○(추가) 임야에서 자연상태로 재배되고, 경작하는데 노동력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임산물 생산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단, 임야에서 논이나 밭의 형태로 또는 상당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재배 임산물은 지급대상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기 때문에 동 절차는 실효성이 없고 행정낭비 초래 업무간소화로 신청농업인의 편리성 제고 저농약 직불금 예산확보 신청자격 명확화

구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5. 논·밭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경우는 논 부문으로, 전(田) 또는 임야(林野)인 경우에는 밭 부문으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추가) 상기 이외 지목에서의 친환경농업 직불대상 농지의 논, 밭 구분은 -농농업직불금을 받는 농지에 친환경농업을 경작하는 경우는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논 부문으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밭 구분 명확화
6 지급 기간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업 인증농가가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중도에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선정 연도(2003년)를 포함하여 친환경농업 인증필지를 기준으로 3년간 계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농업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기타지목은 실제 논·밭의 형상을 하고 재배작목이 논·밭인 경우에는 논·밭 부문으로 신청하고, 이외 농지는 밭 부문으로 신청(시·군에서 판단) 좌동 -일부수정: 2003년 삭제 (추가)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최초 선정 연도로부터 3년간 지급 (년1회 기준으로 3회 지급) -단, 최초 선정연도가 '02년도인 인증농가에 한하여 2005년까지 4년간 지급(년1회 기준으로 4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기간을 3년간으로 할 경우 해석의 논란이 있으므로 3회를 추가하여 설명
7. 직불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밭 논 -기본단가 : 진흥비진흥 구분없이 532천원(저농약 포함) -인센티브 : 유기전환유기 270천원/ha, 무농약150 (추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밭 : 좌동 (보완)논 : 논직불 기본단가(진흥비진흥 구분없이 548천원) + 친환경농업에 따른 인센티브 (유기·전환유기 270천원, 무농약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밭 직불금 기본단가인상에 따른 보완

구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8. 양식추가 (주소지 변경)	◦ -	◦(추가)지급대상자가 중도에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변경된 주소 소재지 읍면에 변경사항을 통보(별지 제6호 서식)	◦양식추가
9. 예산 소요액 요구	◦ -	◦(추가)농림부로 10.30까지 사업비 배정 요청(별지 제7호서식)	◦행정절차 보완
10. 정산 보고	◦ -	◦(추가)농림부로 사업비 정산보고 - 익년도 3.10일까지	◦행정절차 보완
9. 업무추진 일정 조정	◦신청기간 : 3.1 ~ 3.31 ◦이행여부 확인 요청 : 5.30까지 ◦생산조건 이행여부 통보 : 10.30까지	◦신청기간: 3.1 ~ 4.5 ◦이행여부 확인 요청: 5.20까지 ◦생산조건 이행여부 통보 : 10.20까지	◦추진절차 2단계축소로 인하여 업무추진일정 조정
⑤친환경축 산직불제			
1.신청자 격·절 차·구비 서류 등	◦신청자격 -축산업등록을 전제로 한 농가 또는 축산업등록을 마치고 신청하는 농가 ◦신청시기 - 4월말, 5월말을 연중수시	◦신청자격 -축산업등록을 마치고 신청하는 농가 ◦신청시기 - 연중수시	◦친환경축산직불제의 원 활한 추진을 위해 사 업신청시기를 연중 수시로 함
2.기타(사업 비 지원, 사후관리 등)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돼지·닭 : 두당소득은 이 행기간(7·8개월)을 반영 하여 70~80% 지급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소 : 추가비용은 사료작 물 1회 50%, 2회 100% 반영하여 지급 -돼지·닭 : 두당소득은 이행기간/12개월을 반영 하여 지급	◦사업신청을 연중수시 로 함에 따라 사업비 지급 및 정산을 명확 히 함

구 분	현 행 (2004)	변 경 (2005)	변경사유
⑥ 쌀생산조정제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 절차	○ 업무흐름 및 시기 - 이행상황점검 : 7월 ~ 10월 15일, - 종합점검 및 지급대상확정 : 10~11월, - 지급 : 12월	○ 업무흐름 및 시기 - 이행상황점검 : 7월 ~ 8월, - 종합점검 및 지급대상 확정 : 9~10월, - 지급 : 10~12월	※이행상황점검 및 지급 시기 등을 조정
49.농업인 건강보험 료경감지 원 5. 2005년도 사업시행 요령	다. 사업시행 (1)농어업인 파악 <추가발생신고> ②경감시점 읍·면장의 신고시점	이·통장의 신고시점	◦경감시점을 앞당겨 지원
50.농어촌 관광휴양 자원개발 ① 농촌 관광 휴양사업 4. 연도별 지원계획 5. 2005년도 사업시행 요령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는 예 산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예산(국고용자)확보 지원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2) 사업대상자 ◦농촌민박사업 : 기존의 주택을 개·보수 또는 증 ·개축하여 민박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 (3) 지원규모 및 조건 (4)사업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주말농원사업은 예산지 원없이 민간자율적으로 시행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2) 사업대상자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 촌정비법 제2조제8의2 제라호 규정에 해당하 는 사업자 중 기존의 주택을 개·보수 또는 증개축하여 민박을 영 위하고자 하는 자 (3) 지원규모 및 조건 (삭제) (4) 사업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삭제)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 업은 예산지원없이 민 간자본유치를 통해 사 업추진 ◦현재, 개정 추진 중 인 농어촌정비법개정 법률안 반영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 업은 예산지원없이 민 간자본유치를 통해 사 업추진

구 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p>(5)세부사업내용 (다)농어촌민박사업 ◦시설기준 (<u>신설</u>)</p> <p><추진체계> 다.추진절차 (<u>신설</u>)</p> <p>라.사업시행 (1)농촌관광휴양지개발 사업계획승인 (<u>신설</u>)</p> <p><추진체계> 마.사업비지원 (2)예산의지원 ◦<u>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예산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에 한하여 예산(국비·읍자)을 확보하여 지원</u></p>	<p>(5)세부사업내용 (다)농어촌민박사업 ◦시설기준 - <u>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35조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을 충족할 것</u></p> <p><추진체계> 다.추진절차 *<u>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날부터 개정법률안에 의거 사업을 추진해야 함</u></p> <p>라.사업시행 (1)농촌관광휴양지개발 사업계획승인 (나)개별사항 ◦<u>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신청서 검토시 환경부서와 협의</u> ◦<u>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토지적성평가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u> -<u>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준하여 개발</u></p> <p><추진체계> 마.사업비지원 (2)예산의지원 ◦(<u>삭제</u>)</p>	<p>◦현재, 개정 추진 중인 농어촌정비법개정법률안 반영</p> <p>◦상동</p> <p>◦가용토지 공급 원활화방안 경제장관 간담회 안건 의결 내용 반영 ('04.11.22)</p> <p>◦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예산지원없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사업추진</p>

구 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p>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p>	<p><행정사항> 라.보고 -도지사는 예산지원 신청이 있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에 대하여 사업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별지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2호 서식 등)를 시장·군수로부터 받아 3.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p> <p>◦도지사는 매년 12월말현재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연도말 검정결과를 취합하여 “농촌개발사업실형검정 및 정산요령”에 따라 다음해 1.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10호 서식)</p> <p>다.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본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사업지원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거쳐 시·군에 제출</p> <p>라.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지원대상자 선정</p> <p>마.기타사항 ◦기관별 보고일정</p>	<p><행정사항> 라.보고 -(삭제)</p> <p>◦(삭제)</p> <p>6. 2005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다.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삭제)</p> <p>(삭제)</p> <p>마.기타사항 ◦기관별 보고일정 (삭제)</p>	<p>◦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예산지원없이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사업추진</p> <p>◦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예산지원없이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사업추진</p> <p>◦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예산지원없이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사업추진</p> <p>◦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예산지원없이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사업추진</p>

구 분	현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51. 한계농지 정비사업 5. 2005년도 사 업시행요 령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고시> 라.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및 고시 (신설) (1) 시장군수의 필요성에 위한 지 정 및 고시 (2)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 구 지정 및 고시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고시> 라.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및 고시 (1) 공통사항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 서 검토시 환경부서 협의 ◦한계농지정비지구는 토 지적성평가시 계획관리 지역으로 분류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계획관리지역 에 준하여 개발 (2) 시장군수의 필요성에 위한 지정 및 고시 (3)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정 비지구 지정 및 고시	◦가용토지공급원활화방 안 경제장관 간담회 안건 의결 내용 반영 ('04.11.12) ◦신설에 따른 번호 이동
54. 임업기계 지원센터 설치	54. 산림경영장비지원 ① 산림경영장비지원 ②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	54.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 ① 삭 제 ② 단위사업명으로 함	'05용자예산 미 확보
57. 임산소 득증대 ① 단기임산 물생산기 반조성 ◦밤, 표고 등 기반조성 - 우선순위 ◦표고 톱밥 배지센터 - 신청자격 - 우선순위 - 보조비율	(추 가) (신 설)	- 친환경임산물 인증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표고톱밥재배자 또는 법인 경영체 - 주산단지내에서 표고톱밥 재배자 - 국고:지방비:용자:자부담 20 : 20 : 20 : 40%	◦친환경 임산물 생산자 육성 ◦신규사업 반영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밤나무토양개량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밤생산장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친환경밤생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 우선순위 - 보조비율 ◦대추호도생산기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지원한도액 ◦임산물 생산단지기반 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사용 - 밤생산장비(퇴비발효기)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농가 16백만원, 법인 경영체 80백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 사용 - 밤생산장비(퇴비발효기, 굴삭기 등) 지원 - 밤나무재배자 또는 법인 경영체 - 친환경임산물 인증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국고:지방비:융자:자부담 20 : 20 : - : 60%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과실(산머루) 재배단지 기반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자 요구 반영 ◦수요자 요구 반영 ◦신규사업 반영 ◦대추호도 생산 기반 지원 활성화
<p>② 조경수·분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경수 관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 우선순위 - 보조비율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조경수협회원 - 자가포지를 이용하여 묘목 생산을 많이 하는 자 - 국고:지방비:융자:자부담 70 : - : -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사업 반영
<p>③ 산림복합경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복합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임산물 인증 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임산물 생산자 육성
<p>④ 산림소득종합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경수·분재생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사업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재운영자금 지원 - 수액자원생산자금 ·산지구입자금 ·기자재구입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자 요구 반영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p>58. 목재이용가공지원</p> <p>◦목가공시설 지원 - 지원대상자 확대</p>	<p>59. 목재이용·가공 및 국산재 활용지원</p> <p>① 목재이용가공지원 ② 국산재활용지원</p> <p>(추 가)</p>	<p>58. 목재이용·가공지원</p> <p>-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 조치법의 공장설립 특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으로 목재이용관련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하려는 자</p>	<p>◦국산재 활용지원사업 이 목재이용가공지원 으로 통합</p> <p>◦수요자 요구 반영</p>
<p>59. 산림조합 육성</p> <p>◦ 사업내용</p>	<p>(추 가)</p>	<p>- 조합경영진단</p>	<p>◦산림조합 경영개선 대책 마련</p>
<p>60. 임산물유통개선지원</p> <p>①임산물유통구조개선</p> <p>◦종묘전시·판매장</p> <p>- 신청자격 - 보조비율</p> <p>◦임산물가공지원</p> <p>- 사업내용 - 신청자격</p> <p>- 우선순위</p> <p>- 보조비율</p> <p>◦임산물표준출하</p> <p>- 사업내용</p> <p>- 지원대상자</p>	<p>(신 설)</p> <p>(신 설)</p> <p>- 임산물표준출하</p> <p>(추 가)</p>	<p>- 한국양묘협회</p> <p>- 국고:지방비:용자:자부담 70 : - : - : 30%</p> <p>- 감박피기, 냉동담차 지원</p> <p>- 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 경영체</p> <p>- 친환경임산물 생산자 또는 친환경임산물 생산 법인 경영체</p> <p>- 국고:지방비:용자:자부담 20 : 20 : 20 : 40%</p> <p>- 임산물포장자재비 지원</p> <p>- 임산물공동선별비 지원</p> <p>◦임산물공동선별비 지원 :산지생산·유통전문조직</p>	<p>◦신규사업 반영</p> <p>◦신규사업 반영</p> <p>◦수요자 요구 반영</p> <p>◦수요자 요구 반영</p>

구 분	현 행(2004)	변경안(2005)	변경사유
④임산물저장·건조시설 ◦임산물저장·건조시설 - 사업내용 ◦밤선별장및저온저장시설 - 신청자격 - 보조비율 62. 임업전문인력 양성 및 임업기술지도 ◦ 사유림협업경영 - 선정절차	(신 설) (신 설) 63. 임업전문인력 양성 및 임업기술지도 ① 임업전문인력육성 ② 임업기술지도 - 산림조합장의 신청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은 협업체운영비, 기자재 장비 계획서를 조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	- 수액정제·저온저장시설 지원 - 법인경영체, 농협 - 국고:지방비:용자:자부담 50 : 20 : - : 30% 63. 임업전문인력 양성 및 임업기술지도 ① 임업전문인력육성 ② 임업기술지도 ③ 사유림협업경영 - 산림조합중앙회는 우수 협업체 선발을 위한 평가 계획서를 사전에 산림청과 협의한 후 하반기에 점검 및 평가 실시 후 선정	◦수요자 요구 반영 ◦신규사업 반영 ◦유사단위사업을 통합 ◦우수협업체를 집중 육성하여 실질적인 지원
64. 해외산림투자지원	66. 해외조림사업	65. 해외산림투자지원	◦해외육림사업도 포함
65.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 ◦ 세부사업 ◦ 사업내용 - 숲가꾸기	67. 산림자원 조성 ①조림·육림·묘목생산 ②보호수 정비 ③산지목재비축 지원 (신 설)	66. 조림·숲가꾸기·묘목 생산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 공공산림정비(사업비의 100%) ·국고 70%, 지방비 30%	◦단위사업명으로 함 ◦'05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 ◦'05용자예산 미확보 ◦저소득계층 및 청년 실업자 고용

VI. 기타 주요사항

1.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

본 농림사업자금 대출 안내의 내용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법령, 동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요령, 지침 등과 금융기관의 정책자금관련 규정, 요령, 지침 등의 변경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대출제도 概觀

- (1) 대출절차 : 본문 참조
- (2) 신용대출
 - 대출한도
 - 무입보신용대출 : 1,500만원
 - 보증부신용대출 : 3,000만원(무입보신용대출 1,500만원 포함)
 - 농업인후계자자금 3,000만원, 농기계구입자금 300만원
 - 연대보증인 입보는 대출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름
- (3) 담보대출
 - 주요 담보종류 및 대출 가능금액(농협중앙회 기준)

담보물의 종류	대출가능금액
○ 부동산	○ 감정평가액의 60%이내에서 선순위권리
- 아파트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
- 연립단독주택	○ 감정평가액의 60%이내에서 "
- 기계기구(공장저당권에 한함)	○ 감정평가액의 30%이내에서 "
- 기타부동산(나대지)	○ 감정평가액의 55%이내에서 "
○ 예·적금, 신탁의 수익금	○ 예입액의 90%이내
○ 공제증권	○ 해지환급금의 90%이내
○ 신용보증서	○ 보증금액의 100%이내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보증금액의 100%이내
- 신용보증기금	○ 보증기금의 100%이내
- 기술신용보증기금	○ 보증기금의 100%이내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보증기금의 100%이내
- 기타 중앙본부가 인정한 신용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 보증기금의 100%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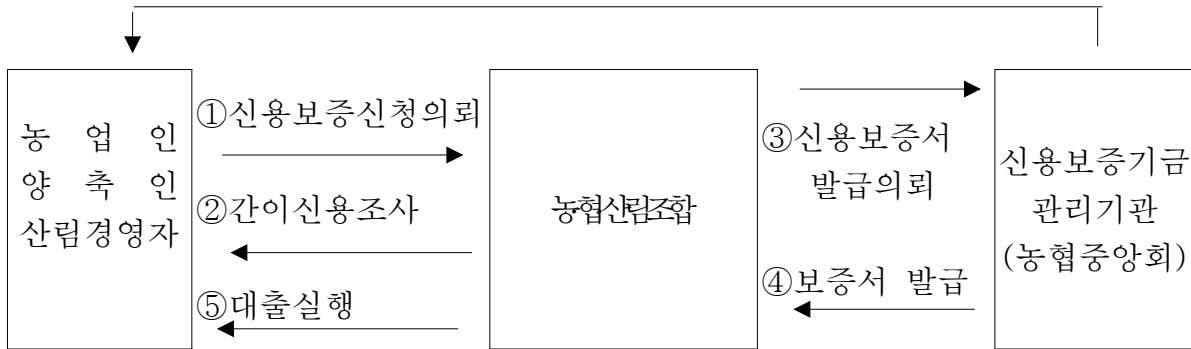
(주) 선순위권리해당액 : 선순위설정금액, 우선채권(주택외의 부동산인 경우 임차보증금,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은 주택의 임대정도(미임대, 일부임대, 전부임대)와 방수에 의하여 달라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 보증부대출 취급절차

정식 신용조사 및 심사



○ 보증한도(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 개인 : 신용보증누계액 10억원
- 법인 : 신용보증누계액 15억원

○ 보증금액별 신용조사 종류

5,000만원 이하	2억원 이하	2억원 이상
간이신용조사	약식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

(5) 후취담보대출 적용기준

담보등급	대 상 담 보 물 종 류	대 출 비 율
갑 류	○ 대지, 농지, 초지 및 임야 등 부지류 ○ 주택, 숙박시설, 식당시설 및 판매시설 등 건물류	○ 투자금액의 71 ~ 80%
을 류	○ 농림수축산물의 가공공장류 ○ 창고, 저온저장고, 선별처리장 및 집하장등창고류	○ 투자금액의 51 ~ 70%
병 류	○ 유리온실, 철골Pet온실 등 온실류 ○ 선박, 어선 등 어로시설류 ○ 우사, 돈사 및 계사 등 축사류 ○ 퇴비제조장, 오폐수처리시설 등 종말처리시설류 ○ 기계·기구 및 장치 등 기계류	○ 투자금액의 41 ~ 50%

(주) 이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담보물은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가장 유사한 부류의 후취담보물의 대출비율을 적용한다.

나. 대출취급시 주요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	농업인		개인사업자		법인		비고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교부서류	○ 여신거래기본약관	○	○	○	○	○	○	교부서식
본인확인서류	○ 대출상담 및 신청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또는 규약 ○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영수증 ○ 종합소득금액 사실증명원	○	○	○	○	○	○	
신용 및 대출심사서류	○ 사업계획서 ○ 월별공정계획표 ○ 최근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 ○ 소유재산 등기부등본 ○ 연대보증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	△	△	△	○	○	
담보감정(설정)서류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적도 ○ 개별지가확인원 ○ 기계·기구목록(공장저당시) ○ 화재공제(보험)증권		○		○		○	

(주) 1. 위 구비서류외에 대상업체, 담보물 등에 따라 추가로 받을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필수 징구서류, △ : 필요시 징구서류)

2. 대출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반드시 대출취급사무소에 직접 나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함

다. 대출에 따른 소요비용

(1) 담보물 감정평가 수수료

- 대출취급사무소 자체 평가시 농업인 등 및 농업인 등의 단체는 면제. 단, 원격지 담보물의 경우 여비 등 실비는 채무자 부담임
- 한국감정원 등 외부기관 평가시는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저당권 설정비용

- 등록세 : 설정액의 2/1,0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 주택채권 매입 : 설정액의 10/1,000(단, 설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와 농업인등이 농림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때에는 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
- 법무사 보수
 - 기본보수(건당) : 60,000원
 -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과 세 표 준 액	보 수 액
10백만원초과 50백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50백만원초과 1억원 이하	4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9 /10,0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85,000원 + 1억원 초과액의 8 /1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45,000원 + 3억원 초과액의 7 /1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85,000원 + 5억원 초과액의 6 /10,000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685,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5 /10,00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185,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4 /10,000
200억원 초과	8,385,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1 /10,000

주) 지역 및 기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여비 등 실비 : 실제 소요된 비용
- 일당
 - (1) 2시간이상 4시간이내 : 50,000원
 - (2) 4시간 초과 : 100,000원
-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료 등 : 등본 및 초본 초과하는 1통마다 2,000원 가산

(3)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대 출 금 액	인 지 대
2천만원 이하	면제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0,000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원
5천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70,000원
1 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농업인 등이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대출 받을 때에는 5천만원까지 면제.
다만, 동일인의 대출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신용보증료(농림어업분야)

○ 보증대상자,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인 : 연율 0.3 % - 0.6 %

- 법인 : 연율 0.5 % - 1.0 %

※ 신용도에 따라 보증율이 가감(가감보증료율 : ± 0.2 %)

라. 기 타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기타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종 농림수산자금대출취급지침 및 동 요령과 농협 여신관련 제 규정에 의함